

인문사회연구회
업종연구총서 2000-11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김 재 인 (한국여성개발원)
장 혜 경 (")

통일연구원

머 리 말

남북한 교류·협력에 여성의 참여는 통일지평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여성들간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즉 상호교류협력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확대, 여성정책관련 의제 발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확대, 여성비정부기구를 비롯한 일반여성들의 참여의지 및 지식향상 등 다양한 과제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근 ‘2000년 성노예 국제법정’에 북한여성 10여명이 참석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5차 토론회 준비에서 여성비정부기구의 통일관련 연구와 사업의 활발한 진행은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진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여성비정부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교류협력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조선민주여성동맹, 대외적으로는 조선여성협회,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기구라는 점에서 교류협력을 논하는 과정이나 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여성들간의 상호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비정부기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남북여성교류협력 대책반이 마련되거나, 정부기구 내에 남북여성교류협력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는 구체적으로 생각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본 연구는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하게 접근함으로써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중요성과 그 방안들을 진일보시겠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민족이면서 분단된 두 개 국가가 상호간의 의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온 독일사례와, 중국 연변인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가능성과 구

체적인 방안수립에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진행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이 있었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발간이 남북여성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도움이 되고 이를 계기로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인 합의기반의 구축과 자유, 인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통일국가의 건설을 위한 준비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00년 12월

김 재 인 · 장 혜 경

한국여성개발원

요 약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0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산하 9개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여성들간의 직접적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기본전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 및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과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간 협력증진 방안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가.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배경

-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기본방향
- 남북한 여성정책 추진방향 및 여성정책
- 남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현황

나.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태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추진 현황 및 사업내용
- 현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문제점

다.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여성교류·협력 독일의 사례

- 통일전후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협력 현황
- 독일 사례의 시사점

라.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추진방향 및 기본전제
- 실행주체 및 주체별과 단계별 접근: 정부의 역할,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그리고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간 협력증진방안과 국제여성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3. 연구방법

가. 국내·외 관련자료 분석

나. 전문가 의견조사 (2000.5.11~6.30, 통일관련전문가 18인)

다. 국내 워크숍 및 심층면접조사

- 남한의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와 워크숍 및 심층면접조사 (2000. 4. 25; 2000. 5. 3).
- 귀순여성 및 국내거주 연변여성과의 워크숍 및 심층면접조사 (2000.7.31, 2000. 8. 8).

라. 국제 워크숍 및 심층면접조사

- 한독 워크숍 (2000. 5.12~5.20, 독일 베를린) 참가
- 한중 워크숍 (2000. 10.24~10.30, 중국 연변 및 장춘) 참가

마. 국내 학술회의 (2000.12.26, 인문사회연구회 외교센터)

4.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기본전제

가. 추진방향

- 성 인지적 관점으로 통일정책이 추진되어 여성들도 통일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게 해야 한다.
-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한 여성계의 인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즉 북한여성 및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 북한여성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교류를 통해 단기간에 공동의식을 구축하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 남북한 여성들간의 접촉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국제구호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북한여성 및 어린이의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우리 여성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남북여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이 보여준 기존의 태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측이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포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 북한여성들의 정서적, 심리적 동인이 될 수 있는 정보 및 매체 교류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기본전제

-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상호이해와 현실에 맞는 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 상호 존중 하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교류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 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과 맥락을 같이 하되, 여성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 주체의 다양화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직접적 교류이전에 간접적 교류협력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여성 및 지역단체간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을 펼쳐야 한다.
- 국제기구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세계적인 젠더이슈로 북한여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관련제도의 보완하여 북한사회문화를 접촉할 기회를 개방하도록 한다.
- 교류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별조직 및 단체의 과당경쟁을 예방해야 한다.

5.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가. 실행주체 및 주제별 접근

1) 정부의 역할

가) 성인지적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 수립

- (1) 정부차원에서 정상회담 후속 프로그램에 여성의 참여를 최소한 30%까지 보장하도록 한다.
- (2) 통일부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 (3) 남북한 공동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을 포함시켜야 한다.
- (4) 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한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및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키도록 한다.
- (5)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외에 민간 여성위원이 포함되거나 민간여성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 (6) 통일과정에서의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설치와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공동위원회내에 구성해야 한다.
- (7) 통일과정 및 통일 후 각종 여성관련 문제들에 대비해 여성전문행정인력, 민간단체 여성인력, 민간여성전문가 및 여성자원활동자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실행하도록 한다.

나)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 (1) 행정적 절차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단순화시키도록 한다.
- (2) 정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방식의 대북 지원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3) 정부는 여성단체 및 여성연구소에 북한여성 및 통일관련활동과 연구, 그리고 학술분야의 교류가 비교적 성사가능성이 높음으로 각 분야 여성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 (4) 정부는 대북 지원 여성비정부기구들간이 창구일원화를 통해 사업선정과 구체적인 교류아이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관계 폭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 (5) 정부는 여성비정부기구들의 통일운동, 이질화 극복운동의 큰 울타리가 되어야 하며 교류의 민간화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 (6) 정부는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여성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다) 남북한 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 (1) 여성자신들의 삶의 현장 중심으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프로그램 내용과 유형을 설정하여 신뢰를 쌓아가도록 한다.
- (2) 남북한간의 경제적 차이와 빈부의 격차를 감안한 통일사업을 전개한다.
- (3) 평화의 관점을 담은 통일교육을 공교육으로 확대하며 여성비정부기구들의 통일관련 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 (4) 남북여성들간의 이질성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남북여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를 직접 만나 숙식을 함께 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한다.

2)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가) 남북한 여성교류 협력 사업내용 구상

- (1)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즉 ①일제의 전후 보상문제, ②요리대회, ③미용대회, ④여성의 건강문제, ⑤농촌총각문제, ⑥가정생활, ⑦결혼풍습 등을 비교해보는 사업을 구상한다.
- (2) 남북여성교류를 활성화하는 여성간 인적 교류를 사업으로는 ①이산가족 노인여성들의 이산가족 재회, ②공동의 학술문화행사, 공동연구 및 남북한 여성의식조사, ③여성관련 연구자 및 여학생의 상호 방문, ④지방자치단체간 여성단체 중심의 자매결연 등을 들 수 있다.
- (3) 남북여성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영역에서의 교류가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여성들에게 소자본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육성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여성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계획을 제시한다면 북한고위직 여성들과 교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 (4)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분야의 상호교류와 평화, 민속문화제, 전통문화, 아동보육, 건강 등의 다양한 이슈를 가진 학술회의개최 및 참여로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교류 분야가 확대될 수 있다.
- (5)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단된 상황에서도 남북한 상호 방문은 계속되어야 한다.
- (6)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여성교류협력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나)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방법론 구축

- (1) 여성비정부기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2) 북한여성 및 아동 지원운동을 병행하면서 남북여성교류를 모색하도록 한다.

- (3) 남북한 여성간에 상호 공통성이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여성비정부기구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토록 한다.
- (5)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들의 연대틀이나 정보교류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하여 공동의 협력으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정보 채널의 역할도 해야 한다.
- (6) 북한의 전문가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여성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현재 북한을 이끄는 여성들과의 접촉을 강구해야 한다.
- (9) 교류상황에서의 재정지원은 자국의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뿐만 아니라 북한여성들의 참여를 위해서도 주어져야 한다.

다) 실천과제

- (1) 여성비정부기구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를 향상시켜 비정부기구활동분야의 저변을 확장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 (2) 남북여성교류는 모든 여성들의 통일의식을 향상시켜 다수의 여성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 (3) 여성비정부기구들은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북한의 여성단체 및 지역단체와 교류·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한다.
 - (4) 남북한 여성들이 논쟁할 수 있는 주제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 (5) 여성들은 남북여성교류의 기회가 생기는 주제는 무엇이든지 제3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6) 여성교류를 실천해갈 인력자원을 육성토록 한다.
 - (7)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는 성숙한 태도와 전문적인 능력을 기른다.
- 3)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간의 협력관계 증진과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가)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간의 협력관계 증진

- (1) 대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성비정부기구는 “정부가 개입” 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먼저 북한의 정치,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2) 북한과의 협력·교류할 수 있는 주제와 분야, 교류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정부를 통하여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
- (3) 정부는 여성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북 정보 제공, 남북교류 시 대북 창구 역할을 하며 북한주민 접촉승인, 방북승인, 사회문화협력사업자 및 사업승인,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나)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 (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 (2) 전세계적으로 젠더이슈가 되고있는 여성의 빈곤문제나 여성가주구의 문제를 통해 이를 다루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여성 및 어린이지원사업과 연대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 (3) 연변의 부련회를 중심으로 조선족여성들과의 교류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UN 비정부기구의 소액신용(Microcredit)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5) 한국여성비정부네트워크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최근에 비정부기구 활동을 시작한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국가처럼 구조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이슈화 한 것처럼 북한의 상황도 이슈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6) 북한 내 활동하고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 (예: UNICEF)를 파악하여 이

들이 북한정부의 당 간부와 각종 사회단체들과 연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남한여성비정부기구와의 교류채널을 확대시키도록 한다.

나. 단계별 접근

위에서 제시되었던 실행주체 및 주제별 접근방법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접근에서는 주제에 따른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을 단기와 중장기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분류하였다.

1) 정부의 역할

가) 성 인지적 정책수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구분	성 인지적 정책수립
단 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정책 수립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최소한 30%까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민간차원의 정부차원에서 정상회담 후속프로그램에의 여성참여 보장 ▪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에의 여성참여 ▪ 민간여성 중심의 자문위원회 구성 3) 통일부에 여성문제 전담부서 설치 4) 남북한 공동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중장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한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2) 통일과정에서의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설치와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공동위원회 내에 구성 3) 통일전문인력 및 자원활동자 양성

나)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구분	여성비정부기구의 지원정책
단 기	1) 정부의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와 과정의 단순화 시도 2)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방식의 대북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3) 여성비정부기구들간의 네트워크구축 지원 4) 통일관련 학술교류 지원
중장기	1) 통일관련연구 및 지속적인 학술교류의 지원 2) 여성비정부기구간 역할조정 및 여성교류의 민간화의 활성화 3)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여성 교류 지원

다) 남북한 여성교육협력을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

구분	여성교육협력을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
단 기	1) 여성자신들의 삶의 현장 중심으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프로그램의 내용과 유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교류, 상호 신뢰 구축토록 지원 ▪ 정부지원 및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류 (여성음악회, 영화감상 함께 하기, 토속음식 만들기, 미술·웃 등의 전시회) - 학술토론 (평화와 여성, 여성운동 등) - 전문가 파견(의사, 약사, 교사 등) - 지자체를 통한 남북한 자매결연 등에서 인권문제, 여성의식문제 등으로 확대 - 상호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파트너 확보, 접촉활동 시행 - 여성계, 다양한 단체가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되, 영역에 따라서는 각 단체가 각기 고유의 특성을 갖고 교류토록 지원 2) 남북한 여성간 통일교육의 공교육화와 활성화 3) 숙박교류 프로그램 운영

구분	여성교육협력을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
중장기	1) 남북한간의 경제적 차이와 빈부의 격차를 감안한 통일 사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후 남북여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활방안 모색, 실천적 모델 개발, 실현. 즉 평등하고 열린 공동체를 생산 및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창조하는 통일사업을 전개 2) 남북한 여성교류를 위한 공동의 장과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함.

2)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가) 여성교류·협력 사업의 내용구상

구분	여성교류·협력사업 내용 구상
단 기	1) 남북한 여성의 공감대 형성 가능 주제 개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전후 보상문제, 요리대회, 미용대회, 여성의 건강문제, 농촌총각문제, 가정생활, 결혼풍습 등 2)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교류영역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여성간 인적 교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노인여성들의 이산가족 재회 - 지방자치단체간 여성단체 중심의 자매결연 등
중장기	1)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구상 및 의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예민하게 제기된 통일방안, 자주의 문제 등에 대한 남북여성의 의견교환 - 남북의 사회문화 통합의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 대한 여성·생태주의적 관점의 제시 - 남북한 여성·가정 교육의 비교, 여성의 직업과 사회활동 현실 등 여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의제

구분	여성교류·협력사업 내용 구상
중장기	<p>2)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설정으로 교류가 지속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의 학술문화행사 (평화, 민속문화제, 전통문화, 아동보육, 건강 등의 다양한 이슈를 가진 학술회의 개최 및 참여 등)와 공동연구 및 남북한 여성의식조사 - 여성관련 연구자 및 여학생의 상호 방문 - 경제영역: 북한여성들에게 소자본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육성 -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분야의 상호교류로 교류분야 확대 <p>3) 지속적으로 남북한 상호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서독 TV 및 라디오 시청이 가능하여 동독인들이 서독을 이해하는데 도움됨. 서독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된 점이 통일과정의 큰 수확이었음. -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호방문 및 접촉이 중요함. 즉 이산가족들의 지속적인 상호방문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이며,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사업 개발 필요. <p>4)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여성교류협력센터 설치</p>

나)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방법론 구축

구분	여성교류·협력사업의 방법론 구축
단기	<p>1) 여성비정부기구의 역량 강화</p> <p>2) 북한여성 및 아동 지원운동을 병행하면서 남북여성교류 모색</p> <p>3) 남북한 여성간에 상호 공통성이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인 교류·협력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들이 대북한 어린이나 여성지원운동을 전개하여 경제적인 지원은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 탈지분유 전달, 옷감 30만 야드, 북한어린이돕기 교회여성연대(24개 단체)를 조직 20억 모금 시작 <p>4) 북한의 전문가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여성접촉과 현재 북한을 이끄는 여성지도자들과(부록참조)의 접촉 시도</p>

구분	여성교류·협력사업의 방법론 구축
중장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비정부기구의 역량 강화 2) 남북한 여성간에 상호 공통성이 있는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여성간 학술분야의 상호교류협력 ▪ 제3국 (북경, 연변 등)에서 상호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자랑할만한 영역 (한의학, 발해사, 단군사 등) - 상호간의 공통적인 영역 (전통민속, 무용, 음악, 미술 등) - 북한의 도움이 될 영역 (현대의학, 농업기술, 전자기술 등) - 비정치적 분야와 함께 정치적 분야에서도 <남북공동선언>에서 제기된 개념 (자주,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들을 주제로 하여 토론하고 토의하는 국제세미나 개최방법 3) 여성비정부기구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방법의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에게 익숙한 부분인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남한여성들이 북한 및 북한여성을 이해토록 해야 함. - 남녀평등관련문제 (평등의식 고양, 여성복지 등) 접근 - 동서독과 같이 개인적인 교류나 단체방문을 계속적으로 추진함. 4) 여성단체들의 연대틀이나 정보교류네트워크의 구성 5) 재정지원의 확대, 즉 자국의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 뿐만 아니라 북한여성들의 참여를 위해서도 주어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이 하나의 사업으로 선정되면 재정지원이 총괄적으로 주어져야 함. 예로는 서독과 동독여성들의 교류상황에서 자료 구입비 및 세미나 참석비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음.

다)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실천과제

구분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실천과제
단 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비정부기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활동분야의 확대 2) 모든 여성들의 통일의식을 향상시켜 다수의 여성들의 교류 동참 3) 단체의 특성에 맞게 북한의 여성단체 및 지역단체와 교류·협력할 수 있는 사업의 구상
중장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북한 여성들의 통일이해 및 실천자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여성들이 논쟁할 수 있는 주제 회피교육 필요 개념, 여성지위, 문제 해결방식 등에서 남북 여성의 인식차이가 토론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제 회피 2) 다양한 주제의 선정 및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여성교류의 기회 확대 및 지속적 만남 필요 - 정신대대책협의회가 주관할 “2000년성노예국제법정”(2000·12·7~11)에 현재 북한여성 10여명 참석 예정. 이를 계기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5차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 요청. 3) 여성교류를 실천해갈 인력자원의 육성 4)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의 성숙한 태도와 전문적인 능력 배양

3)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간의 협력관계 증진

구분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협력관계 증진 과제
단 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과의 협력·교류할 수 있는 주제와 분야, 교류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정부를 통하여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 2) 정부는 여성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북 정보 제공, 남북교류 시 대북 창구 역할을 하며 북한주민 접촉승인, 방북승인, 사회문화협력사업자 및 사업승인,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성비정부기구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먼저 북한의 정치,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4)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구분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단 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세계적으로 젠더이슈가 되고있는 여성의 빈곤문제나 여성가주구의 문제를 통해 이를 다루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여성 및 어린이지원사업과 연대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2) 연변의 부련회를 중심으로 조선족여성들과의 교류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UN 비정부기구의 소액신용(Microcredit)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 북한 내 활동하고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 (예: UNICEF)를 파악하여 이들이 북한정부의 당 간부와 각종 사회단체들과 연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남한여성비정부기구와의 교류채널을 확대시키도록 한다. 3) 한국여성비정부네트워크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최근에 비정부기구활동을 시작한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국가처럼 구조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이슈화한 것처럼 북한의 상황도 이슈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2
2. 연구내용	3
3. 연구절차 및 방법	3
가. 연구절차	3
나. 연구방법	5
II. 이론적 논의	12
1. 교환이론 및 통합이론과 남북여성교류	12
2. 성인지적 관점과 남북여성교류	17
III.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배경	22
1. 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2
2. 남북한 여성정책의 추진과정과 여성정책현황	27
3. 남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현황	37
IV. 국내·외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협력 실태	54
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실태	54
가.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현황	55
나.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내용	59
다.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문제점	64
2. 외국의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교류·협력 사례 : 독일	66
가. 독일의 동서독 교류협력 정책과 통일전후 여성교류·협력 현황	66
나. 독일 여성교류협력의 시사점	73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76

V.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88
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추진 방향 및 기본전제	88
2.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94
가. 실행주체 및 주제별 접근	94
나. 단계별 접근	114
VI. 결 론	121
참 고 문 헌	124
부록 1. 조선로동당 외곽단체	132
2. 성사되지 못한 남북여성교류 제의현황	133
3. 선행연구의 남북여성교류협력 방안	135
4. 단독 워크숍 결과 :	
동서독 화해·협력에서 여성 NGO의 역할	149
5. 한·중 워크숍:	
남북한 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162
6. 남한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 귀순여성 및	
국내거주 연변여성 워크숍 결과	167
7. 현대 북한을 이끄는 각계 여성지도자	170
8. 남북여성교류협력 관련 자문 전문가 명단	177
9.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78
10. 전문가 설문지: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215
11. 남북교류협력 제 양식	225

표 차 례

<표 I-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6
<표 I-2> 전문가 의견조사 항목	6
<표 II-1> 2000년 분야별 남북왕래 현황	26
<표 II-2> 유형별 여성단체 현황	39
<표 II-3> 부처별 허가현황	40
<표 II-4> 기능별 여성단체 현황	41
<표 II-5>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42
<표 II-6> 시·도 허가된 사단법인 현황	43
<표 III-1> 성사된 남북여성교류 현황	57
<표 III-1 계속> 성사된 남북여성교류 현황	58
<표 III-2> 지금까지 진행된 통일사업 (중복선택)	60
<표 III-3>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통일사업 (중복선택)	62
<표 IV-1> 여성비정부기구의 개념	76
<표 IV-2> 여성비정부기구와 정부의 관계	77
<표 IV-3> 여성비정부기구의 기능	78
<표 IV-4>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우선 영역	79
<표 IV-5> 남북한의 여성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81
<표 V-1> 정부의 성인지적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수립	95
<표 V-1 계속> 정부의 성인지적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수립	96
<표 V-1 계속> 정부의 성인지적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수립	97
<표 V-2>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수립	98
<표 V-2 계속>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수립	99
<표 V-2 계속>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수립	100
<표 V-3>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	100
<표 V-3 계속>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	101
<표 V-4>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교류협력사업내용의 구상	103

<표 V-4 계속>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교류협력사업내용의 구상	104
<표 V-5>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105
<표 V-5 계속>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106
<표 V-5 계속>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107
<표 V-6>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실천과제	108
<표 V-6 계속>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실천과제	109
<표 V-6 계속>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실천과제	109
<표 V-7>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관계	111
<표 V-7 계속>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관계	112
<표 V-7 계속>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관계	113

그 립 차 례

<그림 I-1> 연구절차	4
<그림 II-1> 여성정책 관련 기구간 연계도	28
<그림 II-2> 여성특별위원회 조직	30
<그림 II-3>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조직기구	4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비정부기구¹⁾를 통한 한국의 통일운동은 사회 및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987년을 전후하여 진보적 사회단체들과 기독교단체들에 의해 시작된 여성들의 통일운동은 군축 및 방위비 삭감, 북한동포돕기, 남북여성교류, 북한이탈 여성주민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평화운동으로 전개되어오고 있다.

여성단체의 통일사업을 위한 조사결과(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1999)를 보면, 여성단체가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북한 여성교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남북한 여성 바로 알기 사업’이었다. 여성단체들은 이들 사업을 통해 남북한 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였다. 또한 통일이후 남북 여성들이 화합하기 어려운 우선적인 원인으로 ‘여성들의 경험 및 여성정책의 차이’와 ‘체제의 차이’를 들어 통일사업 여성활동가들을 위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통일의식·정책·방법에 대한 교육과 남북한 여성의 현실을 바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이 의미하는 것은 남북한 여성들이 상호 교류 및 협력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더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은 남북대결에서 신뢰와 협력을 이룩하기 위한 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룩하며, 나아가서는 통일국가체제를 구축하는 단계적 접근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각분야에 걸쳐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교류는 일반사회문화교류와는 달리 여성들만의 공통관심

1) 비정부기구에 대한 개념정의는 II장 3절 참조

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상회담이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문화분야 교류의 활성화과정에서 여성은 통일관련 주요정책과 통일을 위한 참여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으로 여성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교류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²⁾ 상충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여성을 통일의 주체로 인식하여 여성들 특유의 장점을³⁾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비정부기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북한의 폐쇄성과 남북한 여성대표배정의 이질성과 상호방문기회의 제한으로 여성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목적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여성들간의 직접적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기본전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 및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과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간 협력증진 방안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일과정에서의 여성들의 이념혼란과 사회부적응 현상에 대한 예방책의 마련, 통일여성정책에서의 여성부문의 역할과 기능의 정립, 부문별 여성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의 제시, 사회발전 호

2) 1998년부터 2002년 국가의 여성정책 청사진인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통일과 관련된 여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민족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은 통일의 뼈대를 수 없는 주체이며 남북이 평화적 통일과 민족통합에 기여하고 통일이후 여성의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3) 여성성은 화해와 평화의 가치에 더 적합하여 여성은 평화주의적인 이상과 결합된 통일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즉 여성적 관점인 생명회복과 화해의 정신은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하고 평화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특유의 품어 안기와 관계 지향적인 성격이 분단 상처를 회복시키는 데 유리하며 여성들의 수용적, 허용적인 성품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폭이 넓어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통일운동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

름에 여성들의 통합 및 주류화도모로 여성사회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통일여성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배경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고, 남북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및 여성정책과 남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태를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현황과 현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독일의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여성교류·협력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교류 협력에의 시사점을 얻는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통해 동서독 교류·협력 정책과 통일전후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넷째,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본 장에서는 이를 위한 추진방향과 기본전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 그리고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간의 협력 증진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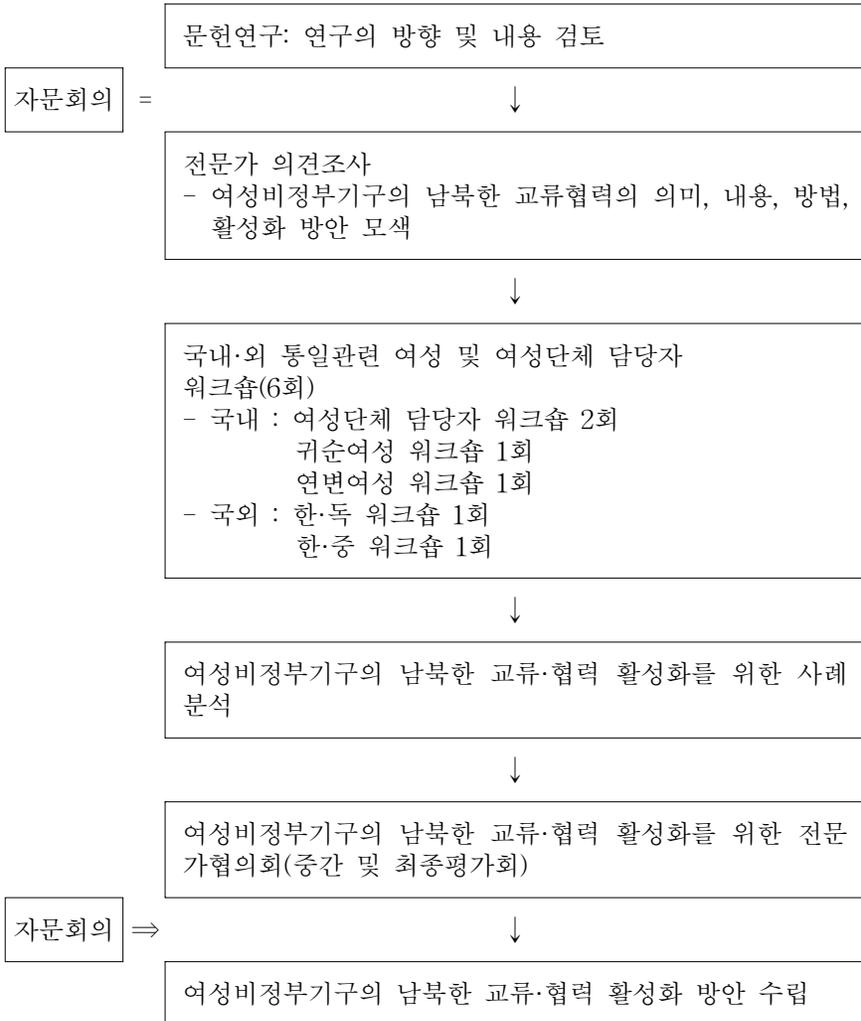
3. 연구절차 및 방법

가.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을 모색하기

4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위해 동시 또는 순차적인 연구절차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1>)



<그림 I-1> 연구절차

나. 연구방법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관련자료 분석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사항으로 다양한 국내·외 연구물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 및 여성정책과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협력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2) 남북여성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여성비정부기구의 구체적인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현황과 교류·협력의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고자 여성비정부기구, 정부, 학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여성비정부기구와 정부의 통일업무 관련 정책결정자 및 담당자와 관련 학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0년 5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조사하였다. 조사응답자는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 7명(53.8%), 정부 담당자 4명(57.1%), 관련 학자 7명(70.0%)으로 총 18명(60.0%)이었다 (<표 I-1>).

조사내용은 여성비정부기구가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요구되는 사항들인 여성비정부기구의 개념정의, 여성비정부기구와 정부와의 연계성,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현황 및 문제, 그리고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및 실천방안과 관련기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조사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2>와 같다.

<표 I-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구 분	조사대상자수(명)	응답자수(명)
여성단체	13	7
정부	7	4
학계	10	7
계	30 (100.0%)	18 (60.0%)

<표 I-2> 전문가 의견조사 항목

내용	구체적 항목
여성비정부기구 의 개념정의	◦ 개념
여성비정부기구 와 정부와의 연계성	◦ 여성비정부기구와 정부의 관계정립 ◦ 남북한 교류·협력시의 창구 일원화를 위한 정부, 여성비정부기구의 기능 ◦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우선 영역
남북한 여성교류 협력의 현황 및 문제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이 한정적인 이유와 해결방안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남북한 여성교류 협력을 위한 과 제 및 실천방안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촉진요인, 구체적인 실천방향과 과제, 교류·협력방안 모색
남북한 여성교류 협력을 위한 관 련 기관의 역할	◦ 정부의 역할 ◦ 민간기구의 역할
남북한 여성교류 협력을위한 담론	◦ 남북한의 여성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3) 국내 워크숍 및 심층면접

(가) 남한의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와 워크숍 및 심층면접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의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다루어진 구체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남북교류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소개, 사업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 남북교류가 성사되었던 경우 이의 과정에서 남북의 인식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개념이나 영역은?
- 비정부기구를 통해 남북여성의 교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영역은?
- 남북교류에 있어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교류협력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관된 통일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범위의 정부간섭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남북교류를 위해 정부와 비정부기구들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은?
- 불성사된 경우,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거절한 경우 공식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단계에서 불성사되었는가?
- 성사된 경우, 북한측 대표와의 접촉시 교류협력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유의할 사항은? 그리고 북한측과 부담 없이 공동으로 나눌 수 있었던 관심테마는?

(나) 귀순여성 및 국내거주 연변여성과의 워크숍 및 심층면접조사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귀순여성 및 국내거주 연변여성들과의 워크숍과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영역과 접근방법 등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은 북한여성의 의식 및 생활실태, 북한의 여성활동 및 단체현황, 북한 여성들과의 교류협력 가능성정도 및 가능영역, 남북한 여성간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정부의 입장과 이를 위한 남한에의 요구사항,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었다.

(4) 국제 워크숍 및 심층면접

(가) 한독 워크숍

독일의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여성교류·협력 사례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에의 시사점을 얻고자하였다. 독일에서 통일을 전후하여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한독 워크숍 (2000, 5.12~5.20; 독일 베를린)에 참가하였다.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독과 동독의 민간교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성을 중심으로 한 교류는 어떠했는가? 물꼬를 튼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민간에게 자율성을 얼마나 주었는가? 특히 여성교류의 촉진매개체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지원했는가?
- 서독정부는 여성평화전문가들이 통일정책이나 교류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가? 또한 평화세력 형성을 위해 전문직 여성평화운동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나 이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가?
- 평화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여성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이를 보편화시키고 지속성 유지를 도모한 경험이 있는가?
- 여성교류를 위한 재정지원이나 연구지원은 있었는가? 국제적 여성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여론조성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서독과 동독 여성평화협의회(가칭)가 구성되었는가? 여성의 공동 이슈, 민족과 여성, 국가와 여성 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민족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여성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 한중위크숍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촉진 방안모색을 주제로 사회주의 동포학자들과 논의하고자 한중위크숍 (2000.10.24~30; 중국 연변 및 장춘)에 참가하였다.

- 북한의 여성활동 및 단체현황
- 북한여성들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의 가능성, 가능영역,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단체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법
- 남북한 여성간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정부의 입장, 북한여성의 입장, 그리고 남한으로부터 기대하는 것 (남한정부, 남한여성단체, 남한여성)
- 남북여성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국제기구, 주변국, 그리고 연변의 역할 및 지원체계

(5) 사례수집

여성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례를 수집하여 남북한 여성들의 교류·협력내용과 이와 관련된 상황 (임하는 태도 혹은 자세, 북한여성들의 가치의식 및 생활상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었다.

(6) 평가회의

본 연구의 수행결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인문사회연구회와 통일연구원의 주제로 중간평가(2000년 7월)와 최종평가(2000년

10월) 2회의 평가회의가 있었다. 평가회의에서 전문가 2인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7) 자문회의

본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문 및 지원을 받기 위하여 통일부 관계자, 통일연구 전문가, 여성단체 실무자, 그리고 여성학 연구자 등 학계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여성의 남북한 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여성비정부기구와의 관계 및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및 활동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연구진이 설정한 방향과 여성비정부기구들의 관점 및 요구사항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방향이 서로 접목되는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8) 국내학술회의

협동연구 국내학술회의가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방안”을 주제로 2000년 12월 26일 인문사회연구회 외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동 학술회에서 본 연구를 발표하여 토론이 있었으며 관련내용을 본 연구에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현황 파악이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한계점을 가진다. 즉 북한의 여성비정부기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직접적인 의견청취나 이를 지원해야 할 북한정부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한의 북한문제관련전문가와 귀순여성 및 연변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이차적인 의견을 통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남한의 여성비정부기구와 대비될 수 있는 북한 여성비정부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여성들이 속해있는 관련기구를 살펴 서 이

들이 향후 남북여성교류의 상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구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북한의 조직체계나 정치현실이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자료의 접근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여성조직과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연구 당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개별 인사의 언급이 검증될 수가 없었음). 그러나 기존문헌과 최근의 관련자료로 최대한 그 변화추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한측 여성비정부기구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비정부기구들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이들 기구들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미약하여 역량파악을 위한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II. 이론적 논의

1. 교환이론 및 통합이론과 남북여성교류

가. 교환이론과 남북여성교류

조지 호만스의 교환이론은⁴⁾ 집단행위가 무수한 상호의존적인 요소들에 의해 비롯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집단은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체계이라는 것이다. 집단행동에는 활동, 상호작용, 정조(행위자 신체의 내적 상태)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사회체계가 구성된다. 사회학적 명제들을 심리학적 명제에 포함시키고 있는 호만스는 사회행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들이 취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어떤 특정한 행위가 보다 자주 보상받을 수록, 그가 그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만일 과거에 어떤 특정한 자극 또는 자극 집합들의 발행에 의해 어떤 개인의 행위가 보상되어졌다면, 현재의 자극이 과거의 자극에 보다 유사할수록 그 개인이 그 행위 혹은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보다 증가한다. 셋째, 그의 행위의 결과가 그에게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그가 그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은 점점 증가한다. 넷째, 어떤 개인이 어떤 특정한 보상을 최근에 자주 받았을수록, 그 보상의 어떤 후속단위도 그에게는 보다 가치 있는 것이 못된다. 다섯째, 어떤 개인이 그의 행위에 의해서 기대했던 보상, 특히 기대했던 것보다 큰 보상을 받게 되거나, 혹은 기대했던 처벌을 받지 않을 때, 만족할 것이다. 그 개인은 점점 더 동조적인 행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 행동의 결과가 그에게는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본 명제들로부터, 호만스는 개인간의 영향력, 권력, 권위, 명

4) <http://community.kongju.ac.kr/~sunny/Socil1109.htm>에서 추출 요약, 정리한 것임.

예, 경쟁, 그리고 동조 등과 같은 현상에 관한 경험적인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내었다. 이를 더 복잡성을 띤 사회적 행동의 설명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피터 블라우는⁵⁾ 교환관계에 있어 특히 권력구조의 출현에 관심을 가진다. 기본적인 교환관계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개인들은 역으로 어떤 형태로든 그 타자에게 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자원들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므로 어떤 개인이 타자로부터 어떤 것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상으로 원하는 것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다음의 네 가지 노선 중 하나를 따를 수 있다. 첫째, 힘의 사용, 둘째, 다른 원천을 찾음, 셋째, 만족 없이 그대로 지나거나, 넷째, 타자의 종속자가 되어 그 사람의 희망에 대해 장래에 복종할 것을 제안한다. 네 번째의 경우에서 권력관계가 발전하며 이런 방식으로 교환과정들에 의해 권력배분이 발생한다. 일단 한 집단 내에서 권력이 분화되면 이는 가치와 규범들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블라우는 인간행동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며, 집단들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기초가 되는 교환과정에 관심을 두고 실제로 블라우는 개인적 교환에서부터 사회구조의 사회변동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사이의 개인적 교환거래 발생 → 지위와 권력의 분화 초래 → 정당화와 조직화 → 대립과 변동 등 4단계의 절차를 구성했다. 블라우의 사회적 교환개념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며,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적인 반응, 다시 말해 기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 끝나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다.

교환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남북한 여성들의 사회작용의 단절은 남한과 북한 사회간의 교환과정의 단절에서 온다. 사회간의 단절상태에서는 개인간의 교환과정의 상실, 상호 이해의 약화로 인한 지적 자원의 질적 가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상호 이해가 부족한 남북한 여성들이 원만한 교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도

5) <http://community.kongju.ac.kr/~sunny/Socil1109.htm> 崔載賢 역(1987), 『현대사회학이론』(서울: 형설출판사) 중에서 추출 요약, 정리한 것임.

대로 순응해야 하며, 상호작용에서의 기대치를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단절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여성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감소 → 여성과 사회간의 상호 위축 → 상호 이탈이라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교환이론은 ‘호혜성의 원칙(rule of reciprocity)’에 주목하여 교환관계에 있는 한쪽이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는 비용이나 손해는 줄이고 보상과 이득은 최대화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손승영·정경희, 1999). 그러나 남북한 여성교류는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념의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정부를 통해 상호교류를 위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의 여성비정부기구에 대치될만한 민간여성비정부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정부조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상호간의 교류가 연결되기 어려운 한계를 갖게 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원하며, 그 이익은 상호교환에서 얻는 보상이 비용을 능가함을 인지하는 것에서 성립된다.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는 능력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교환자원에 달려 있으며, 그 자원이 동등할 때 만족스러운 상호의존성이 생긴다. 만약 행위자중의 어느 한 쪽이 실질적으로 교환자원이 없거나 적으면 상호교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체제라는 요인이 개입되면, 성별, 민족성, 계층과 같은 개인적 배경과 결합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자원, 특히 정보, 기술, 감성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간의 차이라는 요인이 교환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성들은 상호간에 대한 뒤떨어진 정보, 낙후된 기술, 그리고 정책결정에의 참여 저조 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정은 여성을 대하는 정책결정자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자신이 다른 여성을 대할 때도 적용되고 있다.

여성 중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

환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이 이론은 남북한 여성문제 이해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손승영·정경희, 1999).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 자원의 감소, 저급한 기술 등이 사회관계에서 여성들의 교환세력을 축소시킨다는 초기의 교환이론과 달리 후기 교환이론은 남북한 여성중 한 체제의 여성들이 자신의 공헌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부문에서의 분배의 정의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정무, 1995).

여성의 교환자원은 여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속적인 교환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여성의 교환자원이 부족하거나 가치 저하될 경우에는 상호간 의존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교환관계에서 교환조건의 열세를 초래하여 여성이 집단이나 개인으로서 사회적 교환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즉 체제극복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교환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환이론은 여성들이 자신의 교환자원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기 위해 불균등한 교환관계를 균등화하도록 노력할 때 가능해진다.

나. 통합이론과 남북여성교류⁶⁾

통합은 ‘분리된 하나이상의 개체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전체를 구성하는 과정 또는 상태’이다.⁷⁾ 정치학에서는 두 국가간의 정치적 통합에, 사회학자들은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하위체계들간의 통합, 사회통합에 관심을 갖는다.

교류를 통한 남북한 통합의 문제는 남북한이 정치체제상 별개의 국

6) 안소니 기든스, 윤병철·박병래(역)(1990), 「사회이론의 주요쟁점」(서울: 문예출판사)/ 한국청소년개발원(2000), “비정부기구를 통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7) Nye, J. S. Jr.(1968),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Concept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21, pp. 855(재인용).

가이면서도 하나의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정치체제상의 통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될 사회통합의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유럽국가들의 통합연구에서 시작된 통합이론은 통합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측면 중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이론적 관점이 존재한다.

근대화와 정치적 통합을 규정한 와이너(Myron Weiner)는 분리되어 있는 집단들을 결합시키고 국민적 정체의를 확립하는 과정, 그리고 국가의 중앙적 권위를 확립하는 것, 정부와 피지배자, 엘리트와 대중간의 간격과 갈등 가능성을 줄이고 연계를 이룩하는 과정을 통합이라고 보았다. 또한 통합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합의, 통합적 행동(integrative behavior)을 유발하는 것 등으로 이해한다⁸⁾.

사회학에서의 통합은 봉건사회의 해체와 시민사회의 출현으로 사회적 역할과 기능,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이한 사회적 집단·계층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사회체계로 통합되어 가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통일의 촉진을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통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내적 통합, 즉 진정한 통일의 목표이다.⁹⁾ 남북한 사회통합이란 ‘분단상태가 종식된 후 남북한 지역의 양쪽 체제가 상호 의존적인 일관성을 갖게 되고 남북한 지역 주민들이 동류의식을 형성하여 합일된 상태’를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남북한 여성들간, 그리고 여성집단간의 상호 대면관계를 통해 신뢰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 여성 및 여성단체 상호간의 수준에서 조직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관행을 서로 교환하며, 상호 관계가 균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성찰적인

8) Weiner, M., Problems of Integration and Modernization Breakdown, in J. N. Finkle and R. W. Gable(eds.),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New York: John Wiley & Sons)(재인용).

9) 이인정,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과 전통문화의 역할,” 이운죽 외, 앞의 책, p. 183.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행위자간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만남의 항상성을 유지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남북한 상호간의 체제통합과 사회통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성인지적 관점과 남북여성교류¹⁰⁾

가. 여성발전전략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에 ‘여성개발부문’이 포함되었으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7)에서도 ‘여성부문’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회의 이후 1995년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성발전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정무장관(제2)실에서는 1997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유엔여성 10년(1975~1985) 설정, 1979년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의 제정, 1980년 코펜하겐 국제회의와 1985년의 나이로비대회 등 세계적 추세가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 동안 유엔의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기구 설치 권장과 함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 결정과정에 여성정책적 관심을 관철시키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해왔다.

1995년 북경에서 있었던 세계 제4차 여성회의의 행동강령(the Global Platform for Action)은 각국의 정부와 여성활동가들에게 “성 시각을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속에서 주류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책분석을 통해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성 영향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10) 김재인·유희정·양애경(1999),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서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음.

있어야 한다. 1996년 2월의 공약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성 주류화에 대해 EU의 공약(commitment)에 효력을 주기 위한 첫 단계로 주류화에 대한 공약(Communication on Mainstreaming)을 채택한 바 있다. 1997년 2월에 여성과 남성을 위한 평등기회에 대한 서비스집단간에 의해 동의된 다음의 전략문서(Stragey Paper)에서 공약에서는 성 영향력 평가가 중심문제로 언급되었다.

유엔은 여성발전 전략으로서 ‘발전의 여성통합’에서 ‘국가발전의 중요한 항목으로서의 성(gender)’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성을 주류화 시키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주의적 관점(Women in Development : WID)

여성주의적 관점의 여성발전전략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채택된 전략이었다. 그것은 ‘유엔여성 10년’기간으로부터 시작되며 여성을 위한 특정사업에 초점을 둔다. 발전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을 중심에 두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활동 및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을 발달의 과정 속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항상 발달과정에 참여하여 왔으나 정책결정자들이나 여성들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은 소외집단이고, 여성이 발전과정에서 도구화되고 소외되었으므로 보상되어야 하며, 따라서 여성을 특수집단으로 상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성주의적 접근의 정책사례는 여성 대상의 활동 및 사업(프로젝트)로 나타나며 가족계획, 여성할당제, 편부모 세대 지원, 모자가정 지원, 요보호 여성 보호, 여성 보건관리, 출산휴가, 영양, 식수, 여성통계, 여성교육, 여성노동, 여성소득 창출 사업 등의 사업이 있다. 그리고 여성전담 국가기구들이 설립되어 사업을 시행한다.

2) 성인지적 관점(Gender and Development : GAD)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성인지적 접근은 문제의 핵심에 있는 행위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발전에 참여하는 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접근된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가 여성을 발전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성인지적 접근에서는 젠더(Gender)와 발달(Development)이란 두 용어가 병행되고 있다. 즉 여성이 발전에 참여해왔으면서도 이를 정책결정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낸 것이다. 따라서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증진, 여성과 남성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접근하게 되었다.

1995년 우리 나라 국민들의 평균교육연수와 학력분포를 성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선 평균 교육연수에서 전체적으로는 10.25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상자들의 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을 때 여자는 9.37년이고 남자는 11.18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자와 남자의 평균 교육연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여성들에 비하여 남성들의 경우 직장을 얻기가 더 용이하고 나아가 동일한 학력을 가졌을 경우에서도 남성들의 보수가 여성들보다 높으므로 부모들은 가정의 수입이 제한적이어서 아들과 딸 모두에게 공부를 시킬 수 없는 경우 딸보다는 아들들을 공부시키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류화 전략(Mainstreaming)

주류화란 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별도의 이슈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이슈를 정책의 주류에 통합시켜 다루어 나간다는 관점이다. 주류화는 두 가지의 분리된 그러나 상호 연관된 과정이 포함되며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Women : MW)’와 ‘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 MG)'이다. 즉, 주류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접근 가능하다.

첫째, '여성을 주류화(Mainstreaming Women)' 할 수 있겠으며 이는 정치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성(역할)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보다더 기술적인 용어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나. 성인지적 관점의 남북여성교류

여성이 기존에 수행하여왔던 역할에만 초점을 둔다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즉 사회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평등사회의 실현은 남녀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능력을 개발, 활용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 즉 법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주어지고, 여성문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문제에 대해 여성자신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향상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성 차별적 사고와 편견에서의 탈피와 제 사회적, 심리적인 모순의 제거가 여성정책의 우선적인 해결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해서도 성 인지적 관점의 정책이 주어져야 한다. 첫째,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때 여성들이 대표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일정비율이 여성에게 할당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교류협력 분야로서 '여성' 영역을 설치하여 관련 여성들이 적극적

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셋째, 통일관련 정부부처에도 여성담당관실이 설치되어 통일관련 여성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남북한 여성간의 상호 이해와 현실에 맞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여성이해교육이 주어져야 하는 등 여성의 삶에 기초를 둔 교류협력 방안이 모색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생활문화 교류를 통해 통일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배경

본 장에서는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남북한교류·협력의 배경으로 남한 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의 기본방향과 남북한 여성정책의 추진과정 및 여성정책, 그리고 남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의 기본방향¹¹⁾

가. 통일정책 기조

분단이후~1960년대 : 분단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강구해오고 있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 당시 국제법적, 도덕적 우월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유엔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1960년 4·19로 인해 수립된 정부도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초대정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61년 이후 정부는 ‘반공태세의 재정비·강화’와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에 주력하기 위해 ‘선 건설, 후 통일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70년대 :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의 접촉, 미·소·일·중 4국간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국제적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970년 ‘평화통일구상선언’이 발표되고, 1971년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남북적십자사회담 개최를 제의, 26년만에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한간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으나 북한

11) 통일부(2000), 「통일백서」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

이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대화환경의 개선, 군사문제의 우선 해결 등을 요구함으로써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1981년~1992년 : 1981년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 1982년 20개항 북한에 제의, 1984년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수락, 1984년 11월 남북경제회담을 필두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개최,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성사시켰다, 이 시기는 ‘대결과 대화가 교차되는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맞물려져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에 기인하였다. 1989년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 1990년 9월 남북고위급 회담 (서울) 개최, 1992년 2월(평양)에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제6차 회담) 발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표 (제7차 회담) 하였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시켰다.

1993년~1996년 :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핵무기 개발 의혹이후 미·북간의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제네바 기본합의서’ 채택(1994년 10월), 1995년 국내산 쌀 15만톤을 직접 지원,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망 등이 원인이 되어 남북한간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1997년 이후~현재 : 1997년 이후의 정책기조를 보면, 미·일·중·러 등 주변 4국은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 추진해가면서 1997년 시작된 현 정부는 남북한 관계를 불신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①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흡수통일 배제 ③남북간 화해협력 적극 추진을 3원칙으로 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햇볕론에 기초한 대북정책의 방향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을 활성화, 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노력, 대북 지원의 탄력적 추진, 경수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크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정경환, 1999). 다시 말하면, 이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보, 국민적 합의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극적 화해·협력정책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인정하기 위해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인정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의 적극 허용이 강조되고 있다 (제성호, 1999).

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증대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남북인적교류증대, 남북교역 및 교통통신망 연결, 남북협력사업 확대,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남북교류협력활성화 조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등을 제시,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88년 「7·7 선언」이후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정경분리정책’을 견지하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남북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문화예술포·체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화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1998년 4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의 구체화, 1999년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으로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금강산관광개발사업, 서해공단조성사업 등 대규모 경협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문화교류도 문화예술·체육분야의 공동행사(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등)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증대를 위한 관련 법 제도의 정비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8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등 5개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류협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 등 북한 방문절차에 관한 특례』(1998.11.16)로 관광객의 북한 방문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지금까지의 교류상황을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인적 교류분야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9월말까지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914건(173,451명), 승인 894건(172,864명), 성사 853건(160,288명)이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25건(1,239명), 승인 24건(1,229명), 성사 22건(1,207명)이다.

1989년 이후 2000년 9월 현재까지를 보면, 신청 2,821건(364,333명), 승인 2,711건(361,213명), 성사 2,539건(330,181명)이다. 교류분야도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과학환경, 경수로, 대북지원을 비롯하여 금강산관광 등 다양하다.

2000년 9월 현재의 분야별 남북왕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2000년 분야별 남북왕래 현황

(2000.1.1~2000.9.30 단위: 건)

구분	관광	경제	사회 문화	경수로 사업	대북 지원	이산 가족	기타	계
방북인원	273	83	288	138	51	4	15	853

자료: 통일부(2000), <http://www.unikorea.go.kr>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현황을 보면, 남북고위급회담(1990~1992)을 위한 북한대표단 서울방문, 남북통일축구대회(1990) 및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평가전(1991) 서울경기 참석, 산업시찰을 위한 정무원 부총리 일행의 남한방문(1992) 등을 시작으로, 2000년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 2000).

경제 분야를 보면, 1992년 10월 남포경공업단지 투자실무조사단의 방북 이후 1994년 11월 「남북경협활성화조치」이후 재개되었으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시장경제원리와 기업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0년에 들어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102명(5.24~5.27),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102명(5.27~6.1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25명(7.29~7.31), 8·15 이산가족교환방문 25명(8.15~8.18),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132명(8.18~8.24), 김용순 특사 방문 8명(9.11~9.14),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15명(9.24~9.2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13명(9.24~9.26),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22명(9.27~9.30)이 있었다.

앞으로 면회소 설치 등 교류협력이 이어질 전망으로 보인다.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평양공연, 「민족통일음악회」평양공연이 개최되어 우리 대중음악인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또한 민주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이 「남북노동자축구대회」평양경기를, 현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제1차 통일농구경기대회」평양경기를 개최하여 우리측 관련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문화예술과 체육, 언론·출판분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월간 말 등) 에서도 방북프로그램이 제작 방영되었다 (통일부, 2000).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남북한 선수들이 동시 입장하는 장관을 보여주었으며, 경의선 개통을 위해 남북한 정부가 철도를 개설하기 위해 작업중에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상황이 앞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계에서도 북한여성들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변지역을 통해서도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남북한 여성정책의 추진과정과 여성정책현황

가. 남한 여성정책의 추진과정과 여성정책현황

1) 남한 여성정책 추진과정¹²⁾

남한에서의 여성정책은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과 1970년대의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참여가 증진되고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1980년대에 들어와 활발해진 여성운동으로 여성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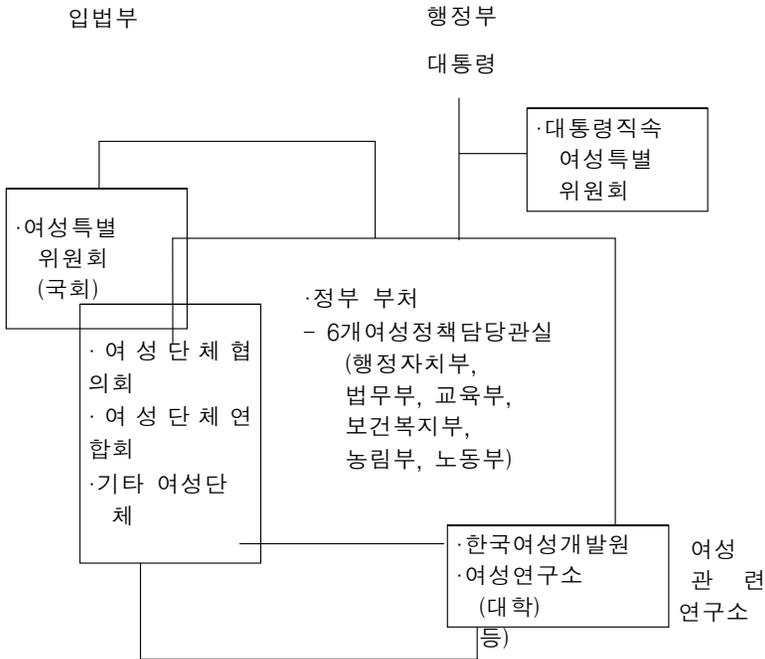
일반화된 여성정책이 마련된 것은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에 ‘여성개발부문’이 포함되었으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7)에서도 ‘여성부문’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회의 이후 1995년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성발전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정부장관(제2)실에서는 1997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을 제시하고 있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으로서 ‘20

12) 김재인·유희정·양애경(1999),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 개발』(서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의 일부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음.

대 정책과제'를 수립, 실행에 옮기고 있다.

2) 남한의 여성정책관련 기구

여성정책관련 기구의 생성과정을 연대순으로 보면, 1983년의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88년의 정무장관(제2)실, 가정복지국, 1994년의 여성특별위원회(국회), 1997년 정무장관(제2)실은 폐지되고,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6개 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노동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 운영되어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 실행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여성정책 관련 기구간 연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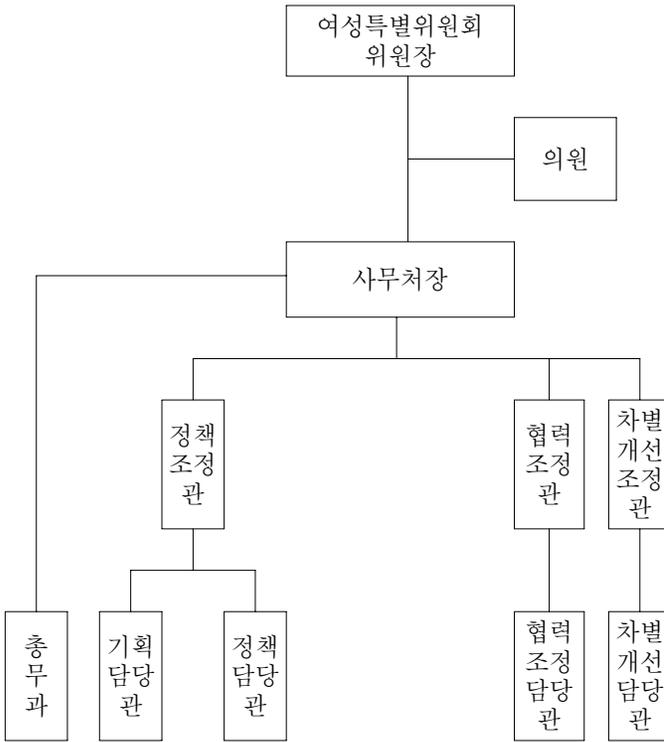
<그림 II-1> 여성정책 관련 기구간 연계도

입법부인 국회 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어 여성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여성정책을 심의하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행정부에는 대통령 직속 여성정책특별위원회가 있어 여성정책의 개발,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민간으로부터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의 여성관련 정책 개발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6개 부처에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있어 여성정책의 실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심의 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자아실현과 지위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과제를 심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단체 등은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특히 여성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남북화해협력과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일문제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보면, 통일고문회의 6명(29명중 20%), 정책자문회의 4명(48명중 8.3%), 통일교육심의위원회 3명(25명중 12%)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여성의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통일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여성통일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통일준비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³⁾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의 통일관련 업무는 주로 협력조정관실에서 맡고 있으며, 그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3)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서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



<그림 II-2> 여성특별위원회 조직

3) 여성정책 현황 및 과제

(가) 여성발전 10대 과제 (1995년)

1995년 한국의 여성정책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가 마련되었고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이루어졌다.¹⁴⁾

14)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과제』

단기과제는 여성을 가사활동에서 풀어주기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을 위한 것으로는 ①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 ②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③학교급식의 전면적 확대이다. 그리고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장치 마련으로서 ④여성의 공직참여비율 제고목표 설정과 ⑤공기업 신규채용 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있다.

중기과제는 ⑥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 확립과 여성취업능력의 개발 및

여성관련 정보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⑦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개선과 ⑧여성 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성차별 관행 및 인식개선을 위한 법 체제 정비 등 여건조성, ⑨「여성발전기본법(가칭)」제정 추진, ⑩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등을 설정하였다.

(나) 여성정책기본계획 : 20대 정책과제 (1998년)

기본계획의 목표는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 중점 추진과제의 특성으로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것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과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여성고용의 촉진,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여성전문인력의 적극적 양성, 여성의 평생 교육 지원), 다양한 여성·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 (여성의 건강증진 및 성비 불균형 해소,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여성 농어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고령화 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시민운동 지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그리고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통일에의 기여) 등이 있다.

통일관련 여성정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 통일정책에의 여성참여 확보 및 여성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관련 통일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여성전문인력을 발굴, 양성하고 통일전후에 발생할 여성문제 및 대책방안을 통해 남북한 여성들의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1999).

현 정부의 여성정책의 과제는 모든 국가정책에서의 여성문제의 주류화, 기존 국가기구의 기능 강화 및 여성정책 담당 행정조직의 주류화, 모든 국가정책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정치 및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차별의 극복정책 (잠정적 우대조치의 구체적 개발과 여성의 경력 발전 지원정책, 직장가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여성단체활동의 지원으로 여성의 영향력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강조하고 있다.

나. 북한 여성정책의 추진과정과 여성정책 현황

북한 여성정책의 추진과정을 다섯 가지로¹⁵⁾ 요약하면 프롤레타리아의 목표달성을 위한 여성의 전면적 참여, 국가 경제질서에 따른 여성의 생산현장과 국가건설현장에의 동원, 여성들의 혁명화·노동계급화 강조, 문화혁명의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확립운동으로의 전개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1945년 여맹을 조직하여 여성동원 및 의식개조의 기초조직으로 삼았고 별도의 여성정책 관련 국가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1945년 이후 북한 여성정책의 강조점이나 구체적 내용의 변화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¹⁶⁾

- 15) 첫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양대 목표를 달성을 위해 여성이 참여함. 둘째, 물질적 요새의 점령을 위해 계획화된 국가 경제질서에 따라 여성은 생산현장과 국가건설현장에 동원. 북한은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시, 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여성인력도 계획적으로 배치. 또 물질적 요새점령을 위한 기술혁명을 위해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3대혁명소조활동을 통해 참여. 이러한 여성의 동원에 수반되는 육아 및 모성보호문제는 노동법령과 탁아규칙 등에서 구체화되어 처리됨. 셋째, 사상적 요새점령을 위한 사상혁명으로서 여성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강조. 여성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것은 곧 가정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 봉건적 가족유대의 타파 등을 의미한다. 넷째, 사상적 요새점령을 위한 문화혁명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립운동으로 전개. 여기서의 문화혁명은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 뿐 아니라 생활양식, 의식의 전승 등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의 준수, 낡은 도덕 및 생활관습, 즉 축첩과 호적제도 등의 폐지, 사회주의적 문화와 집단주의 정신의 발양 등이 추구됨. 교육의 사회화는 문화혁명의 주요 경로이기도 함. 다섯째, 여성들을 단일한 여성 조직으로 통합, 당의 정책과 지도를 전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침투시킴.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1945년 여맹을 조직하여 여성동원 및 의식개조의 기초조직으로 삼았음. 윤미량 (1991) 참조.

16) 윤미량(1991), 『북한의 여성정책』(서울: 한울); 황은주(1994), 『북한 성인여성의

첫째, 공산주의 여성으로의 개조 강조기(1945~1956)

또한 이 시기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기(1945~1946), 사회주의 혁명 준비기(1946~1950), 전쟁과 전후 복구기(1950~1960)를 포함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여맹은 1945년 11월 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되었다.

1946년 노동법령의 제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모성보호의 규정,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정, 공민증 교부(「공민증에 관한 결정서」) 등이 이루어졌다. 남녀평등권법령의 성과는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뿐 뿌리깊은 관습해소뿐만 아니라 탁아소 설치와 교육의 사회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남녀의 법적 평등, 여성조직의 동원 등에서 충분히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여성에 대한 기존 관습과 봉건적 인습 철폐, 여성의 자각과 의식개혁, 육아의 사회화 등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해방직후 북한에는 230여만명의 비문해자가 있었는데 그 중 65%가 여성비문해자였고, 이것은 성인녀성의 90%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사상의식을 불어넣기 위해 일제 시 배움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여맹의 사업은 모성보호, 여권신장, 봉건의식 개조 등과 같은 여성 특수사업이 북한정권의 수립과 계급투쟁, 전체 사회발전에 일조를 하였으나, 여성 대중의 자발적 의지를 모으는 작업은 없었다. 그러므로 여맹의 활동은 국가의 지도를 대중적 수준으로 전파시키는 역할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었고, 여성의 조직적 동원을 가장 크게 요구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조선녀성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국토통일원(1980) 「북한연표 1945~1961」, (서울: 국토통일원); 손봉숙(1993) 「북한의 여성, 그 삶의 현장」, (서울: 공보처); 김선옥·김원홍·김영혜·김동령(1992),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여성 관련 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참조.

하고 있었다.

1954년 8월 17일 여맹은 전쟁중의 여성의 활동과 전쟁피해복구에의 참여를 소개하는 전국 여성대회를 개최하였다. 동 대회에는 소련, 중공, 월맹 등 각국 여맹 대표와 국제여맹 대표 참가 하에 개최하여, 전시와 전후 여맹의 활동을 소개하고 또한 전후복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둘째, 여성의 공산주의 사상혁명 강조기(1957~1971)

또한 이 시기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기(1961~1971)이다. 전쟁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1957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을 경제발전에 투입하고,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위해 여맹을 통해 교양사업을 실시한다. 즉 (1)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확립, (2) 여성의 사상적 혁명화, (3)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7개년 인민경제계획(1961~1967)을 세우고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전개한다. 즉 ‘천리마운동’ ‘청산리운동’ ‘복구돌격대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여성을 동원하고 있다.

1961년까지 전 종업원에 대한 여성노동력의 비율을 교육, 보건부문에 서는 60%이상, 기타에서는 평균 30%이상까지 제고시킬 것을 결정하고, 탁아소 설치도 증대, 1956년 대비 1960년의 340배의 증가를 보인다.¹⁷⁾

1956년 협의이혼을 폐지하고 재판상 이혼만 허용했다. 이혼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키게 되어 이혼을 제한할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여성의 평등보다 조국 건설에의 헌신이 더 강조되었으나,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강화되었다.

1960년대 근로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계급투쟁과 사상교양의 병행에서 사상단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는 시기로 강조된 것이다. 여성들을 공산주의 어머니로 만들며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에 동참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는 전국 어머니대회와 어머니학교, 모성보호규정, 탁아소 증설과 유치원 지도국 신설 등으로 이어진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에

17) 『조선중앙년감 1964』(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p.328, p. 204

서 여성=가정, 또한 여성=모성이라는 전통적 여성관에 입각하여 여성을 이중으로 억압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여성은 사회인으로서 가정인으로 돌아가면서 이중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1969년 「모성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으로 3자녀 여성의 1일 노동시간을 6시간 이내, 혹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노동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주체형의 공산주의 여성 확립기(1972~현재)

이 시기는 사회주의의 공고발전기(1972~현재)이다. 여성정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사회주의 건설, 둘째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맹의 여성교양 등에서는 여성을 ‘가정’의 담당자로 규정하게 된다.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헌법과 가정의 혁명화, 사회주의 노동법(1978. 4. 18), 어린이 보육교양법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여맹과 3대혁명운동, 강반석, 김정숙 모범교양 개시 등을 펼치게 된다.

1972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을 ‘사회의 세포’라 규정하고, 1978년 사회주의 하에서의 노동이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근로자들은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거할 것과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 1976년 어린이 보육교육법은 육아의 사회화 성과를 토대로 공산주의자로서 양육되도록 아동의 초기사회화를 규제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역할은 여맹의 3대 혁명과업을 통해 강조되었다. 1976년 여맹 과업을 3대혁명(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과업의 수행이라고 보고 여성조직이 3대혁명에 앞장 설 것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부터 여맹의 맹원은 경제적 무능력자들로서 ‘가사노동’에만 종사하는 사람들로 국한되게 됨으로써 사회적 활동이 미약한 가정주부들의 조직체로 변하여 연 1~2회의 중앙위 전원회의의 토의 및 결정 사항도 가정주부 역할에 적합한, ‘어머니’와 ‘주부’로서의 3대혁명 추진으로 국한된다. 이 시기 이후 현재까지 강반석, 김정숙을 여성의 모범, 본보기로 추앙하는 체계적 운동이 전개되어 왔고 여성의 역할도 가정에서의 역할이 일차적인 것

으로 되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혁명성은 인간으로서의 혁명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과 가정을 혁명적으로 지켜내는 전통적 여성상에다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가 부가된 이중적 역할의 수행이다.

1980년대에 들어 부자세습체제는 확고해지게 되며, 여맹은 1983년 제 5차 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대상이 다른 근로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여맹의 활동은 '여성의 일', '여성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온 '가사노동'과 '어머니들이 후대 교양을 잘 할 것'만을 강조하게 되고, 여맹원을 충신과 효녀로 키우게 된다. 제 5차 대회이후 위축되었던 조직은 1996년 3월 8일 국제부녀절 8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를 통해 지위약화와는 반대로 그 위상강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3. 남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현황

가) 남한의 여성비정부기구 현황¹⁸⁾

지금까지 남한에서는 여성단체를 정의하기를 일반적으로 여성이 참여하여 조직한 구성체, 곧 여성이 조직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단체를 여성단체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중심으로 여성단체는 여성NGO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이후 여성중심적 의식과 여성운동시각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정의는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되고 있다. 즉 여성단체총람 문헌의 개념, 여성발전기본법에서의 정의, 이익집단으로서의 여성단체의 개념, 그리고 여성운동조직으로서의 여성단체의 개념인데¹⁹⁾

18) 남한여성비정부기구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현황은 윤석인 (2000), '한국여성 NGO의 민주성과 조직활동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17의 글을 참조하였다.

19) 구체적인 내용은 윤석인(2000)과 김홍숙(1998) 참조.

이러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여성NGO는 “여성이 개인이 아닌 조직활동을 통해 여성문제와 지역사회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 고자 하는 자발적인 집합체”로 규정된다 (윤석인, 2000:12).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여성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정부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남한 여성NGO의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 허가법인 체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현황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1999).

1) 중앙부처 허가법인

<표 II-2>는 보건복지부의 『여성단체현황』에 나타난 여성단체의 현황이다.²⁰⁾ 현재 활동중인 여성단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단체, 특수법인조직부, 재단법인 등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은 정식 법인이 79개, 그 회원 수는 700만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단체현황』은 정부의 허가법인이라는 조건 이외에는 특별히 여성단체의 개념을 정의 하지 않지만, 여성단체의 기능을 여성교양교육 및 지위향상, 전통생활 문화보급, 직능단체로서 회원간 기술협력증진, 종교, 여성정치참여 및 통일기반조성, 불우 여성 및 농어촌여성 복지도모, 자녀장학 및 교육, 건강증진 및 환경보존, 법률상담 및 구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 1999).

20) 여성특별위원회(2000)의 『여성단체현황』에서는 형태별로 볼 때 사단법인 112 개, 재단법인 3개, 공법단체 1개, 특수법인 3개, 대학교부설 15개, 사회단체 9 개, 그리고 기타 57개로 총 200개가 있다. 등록단체도 중앙정부에 101개로 되어 있다.

<표 II-2> 유형별 여성단체 현황

	계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단체	기타	비고
단체수	79	75	2	1	1 (특수법인 조직부)	
회원수	7,014,623	4,822,441	출연재산:9억	39,844	2,151,815	

출처: 보건복지부 (1999), 『여성단체현황』

중앙부처의 부처별 여성단체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는 23개이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중앙부인회, 한국여성연맹,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구소, 밝은 가정협의회, 대한영양사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청년여성문화),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는 2개 (한국민족통일여성협의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과학기술부에 1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외교통상부에 7개단체(한국알투루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소토티미스트 한국협회, 한일여성친선협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여학사협회, 외교통상부인회), 행정자치부에 2개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법무부에 2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산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에 6개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여성문제연구회, 한국어머니장학회, 한국전통꽃꽂예술연구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문화관광부에 20개 (대한YWCA연합회후원회,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한국꽃꽂이협회, 화공회,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수도회, 한국꽃예술작가협회, 한국자수문화협의회,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꽃문화진흥협회, 한국생활공예협회, 세계화예작가친선협회, 서라벌꽃예술협회, 한국생활꽃꽂이 협회, 한국여성국극협회, 한국여

성건축가협회, 한국수공예협회, 예지원) 농림부에 4개 (한국식생활개발 연구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생활개선중앙 회) 노동부에 4개 (은터두레회, 여성자원금고, 한국여성노동자협회회, 한국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산업자원 부에 2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원자력을이해하는 여성모임), 정보통신부에 2개 (한국여성정보원, 한국여성정보인협회), 환경부에 1개 (녹색 어머니회), 국가보훈처에 1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이다 (<표 II-3 >)

<표 II-3> 부처별 허가현황

계	보건 복지 부	통 일 부	과학 기술 부	국가 보훈 처	외교 통상 부	행정 자치 부	법 무 부	교 육 부	문화 관광 부	농 립 부	노 동 부	산업 자원 부	정보 통신 부	환 경 부
79	23	2	1	1	7	2	2	6	20	4	6	2	2	.

출처: 보건복지부 (1999), 『여성단체현황』

이러한 79개 여성단체를 11개 기능별로 나누면 23개 단체가 여성교양교육 및 지위향상 중심의 활동, 7개 단체는 전통생활보급, 14개 단체는 전문직능단체로서 회원간 기술협력 증진도모, 2개 단체는 종교이념 실천 및 봉사활동 중심, 7개 단체는 국제연성단체간 친선도모, 6개 단체는 여성정치 참여 및 통일기반조성, 5개 단체는 불우여성 및 농어촌 여성의 복지도모, 7개 단체는 여성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3개 단체는 자녀 장학 및 교육, 3대 단체는 건강증진 및 환경보존, 2개 단체는 법률상담 및 구조활동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표 II-4>).

<표 II-4> 기능별 여성단체 현황

기능별	단체수	단체명
계	79	
여성교양교육 및 지위향상	2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통생활보급	7	한국자수문화협의회, 한국전통꽃예술협의회, 한국생활공예협회, 한국여성국극협회, 한국수공예협회, 예지원, 청년여성문화원
직능단체로서 회원간기술 협력 증진	14	대한영양사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여자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종교이념실천 및 봉사활동	2	대한YWCA연합회후원회,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국제여성단체간 친선도모	7	국제소롭티미스트한국협회, 한일여성친선협회, 외교통상부인회 등
여성정치참여 및 통일기반 조성	6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불우여성 및 농어촌여성 복지도모	5	한국여성복지연합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생활개선중앙회
여성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7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인터두레회, 여성지원금고,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협회
자녀장학 및 교육	3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한국어머니장학회
건강증진 및 환경보존	3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녹색어머니회
법률상담 및 구조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산가정법률상담소

2)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현황

다음의 <표 II-5>는 시도별 여성단체 협의회의 현황을 보여준다. 각 시·도에는 1개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에는 21개(315,815명)의 임의단체가 협의회를 이루고 있다. 부산협의회는 22개(58,667명) 사단법인, 대구협의회는 33개(74,080명) 사회단체, 인천협의회도 19개(50,702명) 사회단체, 광주광역시 협의회는 29개(28,220명)사회단체, 대전광역시 10개(39,222명)임의단체, 울산광역시 20개(43,812명) 임의단체, 경기도협의회는 14개(365,237명) 사회단체, 강원도는 25개(175,925명) 임의단체, 충청북도는 18개(160,210명) 사회단체, 충청남도는 11개(226, 525명)임의단체, 전라북도는 17개(269,532명) 사단법인, 전라남도는 11개(334,434명) 사회단체, 경상북도는 21개(350,000명) 사회단체, 경상남도는 17개(445,726명) 임의단체, 제주도는 10개(44,238명) 임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5>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91)	(21)	(22)	(33)	(19)	(22)	(10)	(20)	(14)	(25)	(18)	(11)	(17)	(11)	(21)	(17)	(10)

출처: 보건복지부 (1999), 『여성단체현황』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의 현황은 다음의 <표 II-6>에 요약되어 있다. 서울특별시는 2개의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 살기좋은 우리구-금천구), 부산광역시는 3개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책연구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의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는 2개의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대구여성회)사단법인, 광주광역시는 2개의 (금화여성회, 21세기 여성발전위원회)에 사단법인, 충청북도에 2개 (충북여성민우회) 사단법인, 전라북도에 1개 (전북여성단체연합)사단법

인, 경상남도 3개 (경산남도 여성단체협의회, 마산사랑의 전화, 경남여성회) 사단법인, 제주도 1개 (제주여민회) 사단법인 단체 총 15개가 있다.

<표 II-6> 시·도 허가된 사단법인 현황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5	2	3	2	2	1	1	3	1

출처: 보건복지부 (1999), 『여성단체현황』

남한의 여성비정부기구는 여성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율적 단체들로서 대표적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12월 25개 단체가 연합하여 발족한 단체로서 현재 42개 회원단체와 14개의 협동회원(시·도여협)으로 구성되어 회원수는 310만명에 달한다. 설립목적은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하는데 있다. 여협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해왔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오유석, 2000:41). 한국여성단체연합회는 1987년 2월에 발족하여 현재 28개 회원단체와 5개의 지부가 있으며 회원 수는 24,022명이다. 여성운동단체간의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고 남녀평등, 여성복지, 민주통일사회실현 추구를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남녀불평등해소와 여성의 사회 정치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남한사회의 근본적인 계급문제나 민주주의 문제해결을 통해 여성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나) 북한의 여성 관련조직 현황²¹⁾

북한사회는 자율적인 여성들의 사회조직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21) 강정구·정대화 외(1992), 『평도체계』,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9 (사회과학출판사, 1985); 한국여성개발원(1992),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통일부(1995),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4)-남북교류·협력분야』(서울: 집문당) 참조.

있어 여성비정부기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여성들만의 조직은 조선로동당 외곽단체²²⁾인 사회단체로서 북한최대의 여성단체이며 근로대중단체의 하나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이 있다.²³⁾ 그리고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²⁴⁾를 두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군위안부 범죄 등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²⁵⁾을 두어 조사착수를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대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대표조직으로서 ‘조선여성협회’를 창립하여 대외적 사업을 맡게 하였으며, 여맹은 내부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에 여성관련 주요단체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정치·사회적 조직으로 ‘조선 노동당’과 ‘사회단체’를 두고 있다. 사회단체는 북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각계 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근로단체’와 고유한 자기의 사명과 특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적 조직’으로 나누어진다. 근로단체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고, 사회적 조직으로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학생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적십자회 등과 다른 나라와의 친선과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 위원회 등이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당이 제시하는 사회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개인들의 역할이 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단체 조직을 통한 주민통제를 체제유지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7세부터 여자는 60세까지 (남자는 65세)

22) 조선로동당 외곽단체 현황은 <부록 1> 참조.

23) 대외단체로서 ‘아시아여성들과 련대하는 조선녀성협회’가 있지만 구체적인 조직과 활동사항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24) 통일부(2000),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00』, 서울: 통일부.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 위원장 홍선옥, 부위원장 박봉규, 상무위원 김덕호·박명옥·허석철, 서기장 황호남, 부서기장 박선옥

25) 통일부(2000),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00』, 서울: 통일부.
중군위안부범죄 등일본의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 : 사무국장 홍상진

누구나 1개 이상의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 모든 사회단체는 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서 이를 통하여 당적인 행정지도의 사상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사시에는 동원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⁶⁾

북한의 여성조직을 여성관련조직과 여성전담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조직

(가) 조선직업총동맹(직맹)

1945년 11월 30일 창립되었으며, 중앙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밑에 조직부, 노동보호부, 문화부, 노인부, 재정부기구, 부녀부, 선전부, 군중문화부 등 부서가 있으며 산업별 직업동맹 중앙기구로서는 조선금속화학공업노동자직업동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해서 전기, 석탄, 경공업, 상업, 기계공업, 건설, 임업, 수산, 교통, 체신, 교육, 문화, 보건 등 공무원 직업동맹이 있다. 한편 지방기구로서는 도(직할시) 직맹 위원회와 시(구역)·군 직맹위원회가 있다.

직맹의 임무로는 ①노동자. 기술자. 공무원의 공산주의 교양 ②맹원의 계급교양 특히 당원과 사로청맹원을 제외한 맹원의 사상교양사업의 진행 ③기술. 문화. 교양사업실시 ④생산과제수행에 노동자들의 조직동원 ⑤노동보호사업의 조직집행 ⑥사회주의 경쟁운동(천리마작업반 운동 등)의 지도 등을 들 수 있다.

(나)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1946년 1월 31일 북조선농민동맹을 조직하여 1951년 2월 조선농민운

26) 백완기(1990.12), “행정기능의 내용과 특성”, 『지방자치』(현대사회연구소), p.40.

동으로 개칭한 후 농업집단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65년 3월에 농업근로자동맹을 창립하였다. 농근맹의 임무로는 ①사회주의 농업업무의 촉진 ②농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의 지도 ③사상 교양사업, 특히 사노청맹원이 아닌 비당원 농민들에 대한 교양강화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농근맹의 기구로는 중앙기구로서 중앙위원회나 지방기구로서 도. 군. 리 위원회가 있는데 농촌여성은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다) 김일성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노청)

1946년 1월 17일에 창립하여 만 14세부터 30세에 이르는 근로자, 학생, 군인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500만명의 맹원이 있다. 기구로는 행정 및 생산단위로 조직되는데 사로청중앙위원회, 시(구역). 군. 리위원회와 각 직장, 공장, 기업소, 군대, 학교 등에 조직되어 있다.

사노청의 임무로는 ①노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교대자로서의 임무 ②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③청년들을 당위 사상체계로 무장시키는 일 ④공산주의 도덕교양강화 ⑤천리마 작업반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61년 3월 2일에 창립되었는데 기구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5명, 조직부, 선전부, 교양부가 있으며 산하단체로는 작가동맹, 음악가동맹, 미술가동맹, 무용가동맹, 영화인동맹, 사진가동맹 등이 있다. 문예총은 각도에 도지부가 없는 실정이나 산하단체에는 도지부들이 있다. 문예총의 임무로는 문화예술분야의 각 사회단체를 통합 지도하기 위한 연합사회단체로 조직되었으나 각 사회단체를 중앙당 문학예술부에서 직접 지도, 통제, 감독하기 때문에 지도가 미온적이다.

이상으로 북한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요 사회단체들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북한 여성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토대로 유아 시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인민학교 시절에는 소년단에서, 그리고 성장 후에는 사노청과 여맹, 그리고 직업별, 산업별 동맹(사회단체)에서 당지도부에 의해 철저한 사상교육과 감시를 받으면서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단체들은 저마다 고유의 임무와 역할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이들 맹원에게 정치교육을 시켜 이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정치, 사상적 의식을 자극해 공명심과 사회적 도의감을 우러나오게 만들고 사회주의경쟁운동에 자발적 형식으로 나서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 여성전담조직 :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²⁷⁾

여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되었으며 1951년 1월에 ‘남북조선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통합 개칭되었다.

초기의 여맹 임무는 여성들과 여성들을 통하여 가족 세대 내에서 자본주의, 봉건주의 사상을 제거하며 여성들의 사상을 계몽하고 비문해를 퇴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여맹 조직은 당의 다른 외곽 단체와 마찬가지로 가정주부들을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인민군대 원호 등 당 정책 관철을 위해 동원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유진, 1999).

27) 통일부(2000),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00』, 서울: 통일부.

▶ 조선민주여성동맹 : (1)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 부위원장 강관선, 강점숙, 김경옥, 로찬실, 오연옥, 왕옥환, 정명희, 한계옥, 허창숙, 홍선옥

(2) 상무위원 중앙위원, 서기장, 탁아소 및 유치원사업부, 국제부, 평양시(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 선교구역, 동대원구역, 대동강구역, 사동구역, 만경대구역, 형제산구역, 용성구역, 역포구역, 중화군, 남포시(강서구역), 개성시(개풍군), 평안남도(덕천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사리원시), 강원도 위원장(철원군)이 있음.

▶ 여성전담조직으로 <아세아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 초기명칭>가 있는데 여맹처럼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 기능과 조직이 알려지고 있지 않다. 동 협회의 활동은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의 실행위원회로서, 그리고 ‘중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의 북측대표로 참가하였다.

그 후 여맹의 임무는 ①사회주의 생활양식확립 위해 투쟁 ②여성들의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여성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사업 추진 ③공산주의 교양강화 ④천리마작업반운동 ⑤후대들에 대한 교양강화 ⑥인민군원호사업 강화 등으로 확정되었다.

여맹기구는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리·군·도·중앙에 여성동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1>).²⁸⁾ 중앙부서로 조직부, 지방지도부, 선전선동부, 아동교양부, 생활문화부, 노동여성부, 통제부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기관지 『근로녀성』과 기관잡지 『조선녀성』을 발간하고 있다.

여맹의 위원장은 박정애(제1,2차대회), 김옥순(제3차대회), 김성애(제4,5차대회), 천연옥(제6차대회), 박순희(제5기 34차)²⁹⁾로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맹조직이 결국 북한정권의 여성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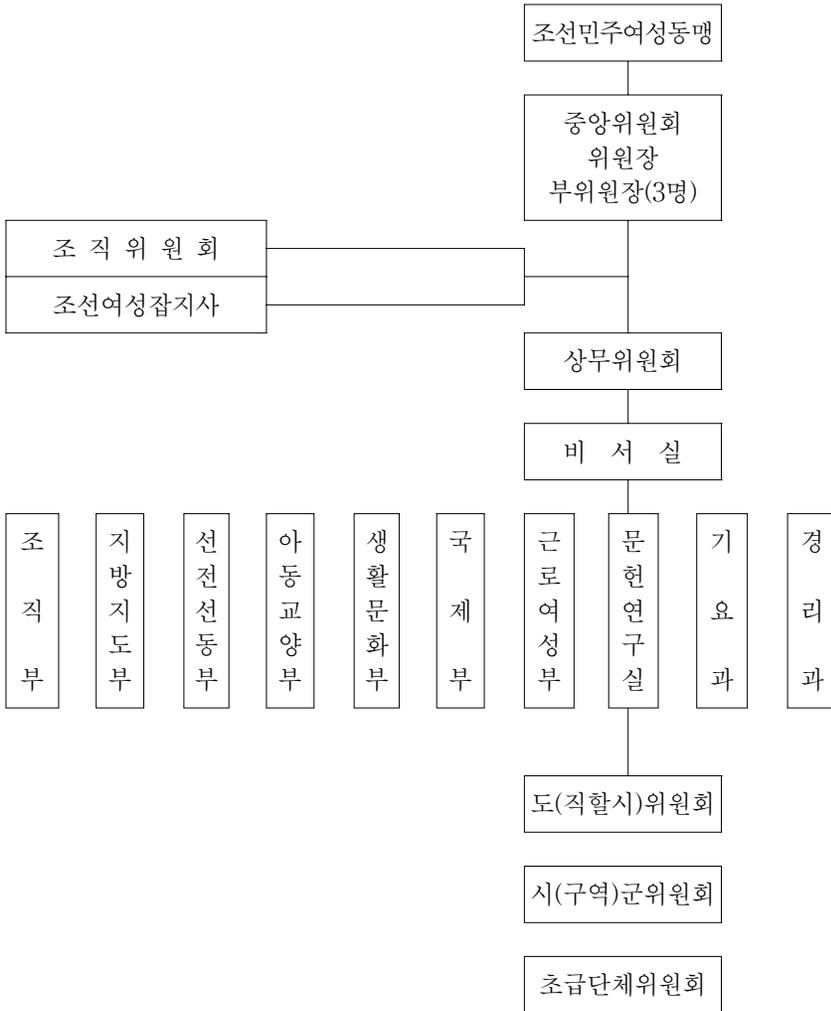
여맹 지도자들의 면면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층위과정에서의 문제이다. 대체로 여맹의 고위간부들은 김일성의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주요 당 간부들의 친인척들이다. 1970년대 이후 여맹 간부들은 대체로 고위 당·국가 간부들의 아내였다.

둘째, 여맹 간부들 중에서 북한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서열 가운데 여맹 출신이 아닌 인사들이 주요한 여성지도자로서 활약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여맹조직이 결국 북한정권의 여성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8) 손봉숙(1998), “조선민주여성동맹연구,” 이종석(편),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서울: 세종연구소).

29) 주식회사 연합뉴스(2000), “연합뉴스”



<그림 II-3>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조직기구

북한에서 유일한 ‘독점적인’ 여성조직으로 위세를 떨치던 여맹은 가입 대상이 한정 (원래 18세에서 55세에 이르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에서 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가입 연령이 30세에서 55세까지의 가두여성으로 그 자격이 제한) 되어 직맹이나 사로청, 농근맹과 같은

다른 근로단체에 이미 가입된 여성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조직이 크게 위축되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여성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여맹 구성원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영향력은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한사회 전반에서 여맹의 지위가 격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⁰⁾ 따라서 이러한 여맹의 지위변화는 여맹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4대 근로단체 가운데 하나이며 여성대중의 조직화와 동원이라는 과제를 떠맡고 있는 유일한 여성조직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여전히 여맹이 핵심적 여성조직으로서 여성대중의 동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여맹 조직구성의 특징은 북한의 모든 여성을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나 다른 외곽단체에 가입한 직업여성들을 제외한 가정주부들만 가입돼 있다는 데 있다.³¹⁾ 즉 여맹은 농촌을 제외한 전국의 가정주부들로만 조직된 조직이며 청년동맹 생활을 하던 여성들도 시집을 갈 경우 직업이 없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여맹에 가입된다. 한때 여맹의 수는 250만명에³²⁾ 이른다고 추정되었는데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조직이 축소되어 98년 10월말 현재 여맹원 수는 약 2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30) 이러한 여맹의 위상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서울: 한울, 1991), pp.188~189); 황은주,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분석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학위논문, 1994) 참조

31) 북한 여성은 누구나 18세 이상 (55세 까지)이 되면 여맹원이 될 수 있는데 1980년 중반이후부터 그 회원은 가정주부와 어머니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1983년 제 5차 여맹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에 따라 다른 사회단체 (여맹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근로단체에 참여하여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만 14~30세 이상 여성은 <사회주의노동자청년동맹>에, 만 30세 이상의 여성노동자와 사무원은 <조선직업총동맹>에, 만 30세 이상의 농업여성노동자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에 가입해야 하고 타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만 18이상~55세까지의 여성들은 <여맹>을 중심으로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에 가입한 여성들이 여맹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서 여맹은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에서 가두여성(도시나 로동지구에서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이들은 공장에서 원료를 자재를 집에 가지고 와서 가공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가내 작업반의 형태를 통해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한다) 과 전업주부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되었다. 오유석(2000) 참조

32) 내외통신사(1998) 『내외통신』, 종합판, p.388

여성동맹의 임무는 여맹 규약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여성들 속에서 당의 유일 사상교육을 강화하며 그들의 정치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여성들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김정일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 바쳐 옹호 보위하는 참다운 근위대, 결사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맹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여맹 조직들이 정치학습을 통한 교양사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여성들을 김정일에 무한히 충실한 전사로 만들고 여성들 속에서 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다. 북한은 1968년에 ‘가정 혁명화’란 구회를 제시하고 가정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로부터 사상개조를 해야 한다면서 여성들 속에서 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여성들을 생산현장에 적극 투입시키기 위하여 각종 선전 선동 수단들을 총동원한 바 있다.

그러나 73년 김정일에 의한 여맹 비판 및 기구개편 이후 여맹의 활동은 지금과 같이 충성의 쫓기모임 및 학습이나 회의, 생활총화, 인민군대 원호사업, 외화벌이, 폐품수집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맹은 김정일의 당총비서 추대를 계기로 강관선 여맹 서기장 등 여맹 관계자들과 전국 여맹 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전국 여맹 일꾼들의 충성의 결의모임을 개최한바 있다. 이날 모임의 보고 및 토론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강조되었다.

첫째, 김일성의 사회주의 위업,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김정일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데 있으므로 모든 여맹원들은 김정일을 목숨으로 받들어야 한다.

둘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전체인민이 김정일의 영도를 잘 받들어 나가야 하다.

셋째,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강해야 하며 군대가 강해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동맹원들을 군민 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계속 활짝 꽃피우며 인민·군대

원화사업에 여맹 조직들이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맹은 98년 10월 29일 여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 여맹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맹중앙위원회 제 5기 2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전원회의에서는 여맹 중앙위원장 천연옥의 보고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보고와 토론에서는 김정일이 98년 10월 1일 자강도 대흥단군을 현지도하면서 제시한 ①감자농사의 획기적 전환 ②축산업의 대대적 발전 ③농촌 전기화 실현 ④국토관리 강화 ⑤군지도 일꾼들의 역할배가 등의 과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독려했었다.³³⁾ 이렇게 볼 때 여맹의 활동은 여성특유의 문제나 성차별보다는 북한사회주의 건설사업을 위해 여성을 동원하는 당의 외곽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이로 인해 가부장적 특성을 내적 모순으로 안고 있는 수령론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여성관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조직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여성들에게 가부장제적 역할을 강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 정책에 위반하여 남편의 권위만을 주장하거나 부인을 학대하는 등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인된 여성권익이 침해될 때 강력한 비판과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유석, 2000). 사업 면에서는 독자성과 책임성을 갖는 조직이기도 한데 (조선녀성, 1989:27), 즉 여맹 일꾼들이 사업을 주동적으로 설계하고 자체의 힘으로 집행해나가기 때문에 여맹이 당적 지도를 받으면서도 독자성과 책임성을 갖고 자기 사업을 하는 조직인 것이다 (이승희, 1994). 그러므로 여맹은 앞으로 북한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가부장제 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의 등장 (백남룡, 1992)과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여성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 사회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요약하면 북한에서 유일한 ‘독점적인’ 여성조직으로 위세를 떨치던 여맹은 가입대상이 한정 (원래 18세에서 55세에 이르는 모든 여성을 대상

33) 북한 중앙방송, 98.10.31 (『내외통신』, 98.11.2 제 11411호), 정유진, p.95에서 재인용

으로 하는 조직에서 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가입 연령이 30세에서 55세까지의 가두여성으로 그 자격이 제한) 되어 직맹이나 사로청, 농근맹과 같은 다른 근로단체에 이미 가입된 여성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조직이 크게 위축되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여성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여맹 구성원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영향력은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한사회 전반에서 여맹의 지위가 격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따라서 이러한 여맹의 지위변화는 여맹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4대 근로단체 가운데 하나이며 여성대중의 조직화와 동원이라는 과제를 떠맡고 있는 유일한 여성조직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여전히 여맹이 핵심적 여성조직으로서 여성대중의 동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제5기 34차 전원회의에서 조직문제를 상정하고 여맹의 중앙위원장에 박순희를 새로 임명했다.

34) 이러한 여맹의 위상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는, 김정일과 김성애의 권력갈등의 산물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의 시각은 여맹의 위상변화를 북한 사회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나온 조직체계 재편의 결과라고 보는 입장이다. 여맹의 필요성은 오히려 감소된 반면 직장단위의 조직생활의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서울: 한울, 1991), pp.188~189); 황은주,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 분석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참조

IV. 국내·외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협력 실태

본 장에서는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실태와 외국사례로 독일의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통일관련 전문가조사 결과를 활성화방안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실태는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현황, 사업내용 그리고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실태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및 남북한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핵심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개방향을 정치 안보와 경제 및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경우, 이번의 정상회담은 정치 안보상의 남북갈등 요인을 상당부분 해소함으로써 경제와 사회 및 기타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북관계 활성화와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한 논의는³⁵⁾ 앞으로 여성 주체적인 통일사업으로 ‘남북여성교류’의 확대가 중요한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남한여성비정부기구의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내용 및 추진실태를 검토함으로써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35) 과제들로 (1)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의 확정 및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남북한 관계 진전에 따른 대 주변국 외교의 강화, (3)남북한 관계의 지속적이며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북한 지도부의 합리적 정책선택을 위한 환경 및 분위기 조성 등임. 오승렬 (2000),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통일연구원 제37차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참조

자 한다. 또한 현재 남한의 여성비정부기구들이 진행하고 계획하는 사업에서 남북교류사업의 중요성의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전반적인 교류활성화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현 여성비정부기구들의 적극적인 남북간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해볼 만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가.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현황

남북한 여성교류의³⁶⁾ 첫 시도는 1988년 11월 세계교회협의회(세계로)의 지원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협의를 위한 “남북기독교인” 모임(스위스, 글리온)에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에게 남북교회여성교류를 제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북한측의 무응답으로 성사되지 않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요청한 여성계의 다양한 교류요청의 많은 부분이 성사되지 않았다.³⁷⁾

(1) 성사된 남북여성교류 현황

지금까지 성사된 남북여성교류는 일본여성들이 중개하며 성사시켰던 91년부터 93년까지 4차례에 걸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토론회” 1회 (1993), “중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관련모임 4회 (1993~98),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 관련 여성교류” 1회 (1999)이다 (<표 III-1>).

36) 남북한 여성교류의 출발은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부교류 및 협력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성단체들도 여성과 관련된 분야에서 교류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제의를 하면서 비롯되었다.

37)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9),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 방안 연구」, 제 3장 “남북한 여성교류의 현황” 참조

네 차례에 걸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의 내용들은 ‘가부장주의와 군사주의의 극복과 평화’, ‘가부장제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 ‘민족 대 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책임’,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책임과 전후보상-중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아세아의 평화’, ‘조선통일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등으로 ‘평화, 통일, 민족 대 단결, 그리고 여성의 역할’이 중심주제였다. 토론회는 당시 남북관계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동경이나 북경 등의 제 3국에서의 만남,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판문점 왕래를 통해 남북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남북여성들 상호교류의 물고를 터트렸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남북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와 중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남북합의가 있게 되었고 이후 “중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모임은 남북여성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크다.

제한적이지만 대북관련 지원 여성교류와 토론회 및 회의를 통한 남북여성교류가 가져온 성과는 정부 일색이었던 대북 창구를 민간여성들이 처음으로 텃다는 것, 남북의 여성들이 여성관련 주제를 함께 다루었다는 점과 동시에 이를 통해 남북여성들 들간의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³⁸⁾ 그리고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관련 방북이 시작됨으로써 향후 통일과정에 남북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계기를 제공했다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8) 김윤옥(1998),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8), p.14.

<표 III-1> 성사된 남북여성교류 현황

제안자/기관	대상자/기관	목적	처리 일자
이효재 (한국여성단체 연합회장외2인)	려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외 2인	제 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동경토론회(1991.5.28~6.4)참가(려연구 부의장 등 3인 참가요청)	91.5.23
이효재 (한국여성단체 연합회장외2인)	려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제 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1991.11.25~30)참가 (북한측 여성대표5명과 참관인10명등 총 15명 초청)	91.8.17
려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외 2인)	제 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1992.9.1~6)참가 (남한측 대표 9명과 참관인 12명 및 수행원 등 총 30명 참가)	92.8
이우정 (국회의원외 10명)	려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제 4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동경토론회(1993.4.24~29)참가 (대표단은 남한측 11명, 북측 13명, 일본측 9명으로 구성)	93.4
윤정옥, 이효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 대표)	최금춘 외 10명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1993.11.6~9) 참가	93.11.2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외 16인)		제2차 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참가 (동경, 1993.10.21)	93.
윤정옥 (정대협)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대책 위원회	제3차 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초청	95.1.19

<표 III-1 계속> 성사된 남북여성교류 현황

제안자/기관	대상자/기관	목적	처리 일자
강창일 (정대협 연구위원 외 4인)	중태위	중군위안부 관련 국제세미나 참석(일본, 1995.7)	95.7.1
중태위	정대협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일본여성의 3자 회합 (북경, 1998.10.9~11) (남측 6명, 북측 8명, 일본측 7명 참가)	98.10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여성계4인	조선여성 협회	여성계 교류협의(북한, 1999.9.11~18)	99.9

(2) 성사되지 못한 남북여성교류 제의현황

남북한 여성교류를 위해 제안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한 사례들은 <부록 2>와 같다. 두 차례에 걸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의의 전국여성대회를 통한 남북한 여성단체교류제이가 성사되지 않았고, 한국부인회의의 남북여성 토속음식 경연대회 및 공예품 전시회 개최 또한 성사되지 못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북한측이 투옥된 애국여성들·민주인사·통일지사들의 식방문제를 함께 토의해 올 것을 제의한 것에 대해 정치성을 고려한 남한측의 판단으로 성사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외 여성교류를 제의한 내용들을 보면 의류전시회, 꽃꽂이교류진, 수공예품 교환진시, 교회 및 성당 여성교류 등이 목적이었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반면 남한측의 이러한 내용들과는 달리 북한측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단군능 준공식에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정대협 등의 한국측 여성대표들을 초청하려고 하였고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여성대표들이 한자리에 모

인 민족회의를 열고자 제의한 것을 볼 때 관심사가 많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여성활동의 주축이 조선민주여성동맹이라는 점에서 동 기구의 성격과 특성에 따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사여부가 주로 북한 정부의 정치적 관심여하에 달려있었고 남한정부의 성격 여하에도 좌우됨으로써 여성비정부기구들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못했다는 점이 부각된다. 한 예로 실무접촉도 끝나고 준비단계도 끝났던 제5회 “아세아 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가 성사되지 못했던 것은 김영삼 정부의 조문과동 때문이었다 (김윤옥, 2000).

나.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내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1999)에 의하면 통일관련 사업이나 운동을 전개한 41개 여성단체들은 이를 민족적 과제로 추진하면서 사업을 선정해 왔다. 이들 여성단체들이 통일 사업 및 운동의 일환으로 선정한 최초의 사업들은 남북한 여성현실 및 여성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북한 바로 알기, 평화교육, 북한 돕기, 탈북자 돕기, 남북여성교류의 순서였다. 남북한 여성현실과 여성정책에 대한 조사나 북한 바로 알기는 남북한 여성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여성단체들이 먼저 남북한 및 남북여성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통일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 여성단체들 중에서 처음으로 통일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기는 1950년부터 1998년까지 매우 그 폭이 넓다. 구체적으로 1950년대에 2개 단체, 1970년대 3개 단체 등으로 이때까지는 소수의 여성단체만이 통일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11개 단체 그리고 1990년대는 17개 단체로 확대됨으로써 각 단체들은 통일담당실무자를 선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통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각 단체에서 진행해온 사업을 보면 북한돕기가 23.6%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남북여성교류는 9.9%로 여성단체들의 통일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표 III-2>).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에 들어와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시도가 보다 활발해 짐으로써 향후 여성통일운동의 핵심부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2> 지금까지 진행된 통일사업 (중복선택)

구	분	빈도 (사례)	백분율 (%)
북한돕기		26	23.6
북한사회 바로 알기운동		17	15.5
방위비 삭감 등 군축운동		12	10.9
남북여성교류		10	9.0
평화교육		10	9.0
주한미군 철수운동		7	6.4
남북한 여성현실과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6	5.5
금강산 관광		6	5.5
평화문화 발굴 및 전파활동		5	4.5
평화심성 개발 및 훈련사업		5	4.5
기타		4	3.6
무응답		2	1.8
계		110	99.8

출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9),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 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 p.211

여성단체유형별³⁹⁾ 사업중점순위를 보면 여성운동단체는 방위비 삭감과 군축운동, 평화문화 발굴 및 전파, 북한사회 바로 알기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일반여성단체는 북한사회 바로 알기, 남북여성교류, 남북한 여성현실 및 정책조사연구·평화교육 등의 순서였다. 종교여성단체는 북한사회 바로 알기, 남북여성교류, 방위비 삭감 순으로 나타나 단체유형별 특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일반여성단체나 종교여성단체에서는 남북여성교류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으나 여성운동단체에서는 중점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통일사업에 대한 내용 또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3>).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처럼 ‘북한돕기’가 17.1%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고 다음으로 ‘남북여성교류’(13.0%)로 나타난다. 남북여성교류사업과 관련하여 <표 III-2>와 <표 III-3>를 비교해 볼 때 여성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통일 관련사업으로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비중이 높아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여성단체 유형별로 볼 때 일반여성단체가 남북여성교류와 북한사회 바로 알기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하면서 평화교육, 평화심성 및 문화 발굴과 관련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여성운동단체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이었으며 종교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여성부문은 ‘북한 돕기’가 중점사업으로 나타나 남북여성교류사업은 일반여성단체들이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39) 여성운동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기독교민회, 부산여성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사회교육원, 평화여성회, 또하나의 문화,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등
 일반여성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살기좋은구로여성회,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한국군우회, 국제승공연합,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천도교여성회, 대한간호협회 등
 종교여성단체: 대한 YWCA, 서울 YWCA, 부산 YWCA, 광주 YWCA,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 대한기독교감리교여성선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서울연합회, 구세군본영여성사업부, 세계평화여성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원불교광주전남여성회, 원불교여성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등
 일반사회여성단체여성부문: 민화협여성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새마을중앙협의회 등

그러나 이들 단체들이 평화·통일운동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에게 기대하는 프로그램 중에 ‘남북한 여성교류’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남북한 여성 바로 알기’ 인 것을 볼 때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여성문제들에 대한 인식은 물론 통일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반영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표 III-3>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통일사업 (중복선택)

구	분	빈도 (사례)	백분율 (%)
북한돕기		21	17.1
남북여성교류		16	13.0
북한사회바로 알기 운동		15	12.2
평화교육		14	11.4
방위비 삭감 등 군축운동		10	8.1
남북한 여성현실과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10	8.1
금강산 관광		8	6.5
가부장적 군사문화 극복		7	5.7
평화문화 발굴 및 전파활동		7	5.7
평화심성 개발 및 훈련사업		7	5.7
주한미군철수 운동		3	2.4
기타		3	2.4
무응답		2	1.6
계		123	99.9

출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9),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 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 p.213

여성특별위원회(2000)의 여성단체현황에서 통일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⁴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조사(1999)에 언급된 단체들 외에 3.1여성동지회, 광주여성민우회, 교육복지연구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카톨릭여성연합회, 민족통일서울시협의회, 우리민족하나운동, 통일여성안보중앙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등이 통일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적극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단체들이 통일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단체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교류사업을 모색하게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체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지만 개별단체를 중심으로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하여 각 단체들의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정도, 그리고 성과 및 한계점, 중단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앞장에서 지금까지의 남북여성교류현황에서 성사여부를 막론하고 소수의 단체들만이 참여했던 것에서 보다 많은 단체들이 내실있는 통일관련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40) <여성단체의 통일관련 주요사업>

단체명	주요사업
3.1 여성동지회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시국강연회, 강습회, 좌담회
카톨릭여성연합회	평화증진 및 국제교류사업
광주여성민우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업
교육복지연구원	통일준비 여성지도자교육, 연변-서울여성지도자 교류 간담회
민족통일 서울시협의회	대북한 민간대표기구로서 남북대회추진에 관한 사업
우리민족하나운동	중국 조선족과의 교류 협력사업
통일여성안보중앙회	적극적인 민간교류 전개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평화통일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한민족 통일여성협의회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전통문화교류에 대비한 자체역량배양, 남북여성 상호간에 한민족 공동체의식 확산

다.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사된 남북여성교류가 갖는 성과는 크다. 그러나 매우 제한된 주제만이 남북여성공통의 관심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주제임에도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개념과 관심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⁴¹⁾ 그 한계를 드러내주었다. 성사되지 않은 사례들을 보면 남북한 양 정부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북미 핵 교착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김일성 주석 사후 조문과동 등). 이는 성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교류의 성격을 가져왔고 성사되지 못한 제의의 내용들이 순수한 민간교류였지만 양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창구가 다원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양 정부의 제재와 간섭은 순수한 여성들만의 자율적 운영을 어렵게 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드러난다.

첫째, 기존 남북여성교류의 주제들이 특정 소수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또한 중요한 한계점으로 대두된다. 즉 남측은 민간 여성운동가들이었고 북측은 정부조직의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북한 사회에서 사회단체는 노동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한과 같은 의미의 민간단체와는 다르다. 또한 교류 일정이 행사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성과가 일반여성에게 파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반여성들과의 접촉이나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의 삶을 느끼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러한 기회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성사된 교류협력사업이 남북한 이외의 일본 등이 참여한 국제

41) 성사된 남북여성교류에 있어서도 남북한 여성간의 이질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국가 표기 순서의 민감성 (예: 남북한→북남한), 개념에 대한 시각의 차이 (예: 정조, 여성문제, 윤락행위, 식민지, 체제 등),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 북한측은 “민족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라고 전제하는 반면 남한측은 분단에 따른 이질감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분단상태에 따른 인식의 차이.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견해차이-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남녀평등지수와는 달리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봉건적인.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시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큰 아파트를 배정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여성을 주체적인 인간이 아닌 “꽃”으로 지칭함) 등은 대표적인 남북여성이질성을 나타낸다 (남한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 귀순여성 및 국내거주 연변여성 워크숍, 2000).

행사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첨예화할 위험성이 적었으며 상호자제가 가능하였으나 토론회 시 논쟁의 가능성이 늘 남아있었다. 개념, 여성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에서 남북 여성의 인식차이가 토론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었다. 이는 남북한 여성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서로 깊이 논의할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것과도 연결되면 이후 향후 여성비정부기구의 역량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술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동일한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단기간 내 동일한 주제에 대한 입장이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넷째, 남북민간교류 흐름 속에 여성교류에 대한 강조가 없었다는 점이다.⁴²⁾ 남북민간교류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독일통일의 경험 이후 1980년대 특히 민간교류가 강조되었고 90년대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대북한 구호사업이 활성화되어 이 과정에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89년 ‘모든 부문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특별 7·7선언을 계기로 적극적인 남북교류가 추진되어서 통일부의 1989년~1998년 분야별 교류협력 통계를 보면, 학술 133건, 종교 99건, 문학예술 67건, 관광수송 59건, 언론출판 42건, 체육 40건, 과학환경 35건에 이른다. 여기서 아마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류는 학술분야에 포함될 것이며 따라서 여성관련 교류는 별도 항목도 없이 어느 정도로 미미했는지 알 수 있다.⁴³⁾

다섯째, 5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통일관련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음에도 제한된 수의 단체들의 한정된 역할측면에서 보면 여성단체

42) 남북민간교류에 대해서는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설명되어 있다. 제3장 ‘남북교류 협력’ 제16조에는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다.

43) 이우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방안, “남북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대토론회, 온겨레평화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서울, 2000년, 73쪽.

및 활동가들이 통일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부딪히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느끼는 한계점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여성단체의 재정적, 인적 자원 빈약과 조직적인 허약성의 문제, 여성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통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통일 프로그램의 미비, 여성들간의 연대성의 약화, 그리고 가부장제적인 군사문화의 지배 등은 극복해야할 과제들이다.

여섯째, 남한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복잡하다. 같은 것으로 방북을 신청할 때 과정 및 절차의 중복성과 이로 인한 시간소비, 그리고 접촉시 신고서의 수시 작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활동이 불편하였다. 또한 통일부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교체와 사업지원의 한계로 교류협력 성사의 어려움이 있다 (남한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 귀순여성 및 국내거주 연변여성 워크숍, 2000).

2. 외국의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교류·협력 사례 : 독일⁴⁴⁾

가. 독일의 동서독 교류협력 정책과 통일전후 여성교류·협력 현황

동서독 교류협력 정책은 서독의 동방정책⁴⁵⁾을 근거로 이루어져왔다.

-
- 44)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을 경험하다가 통일을 성취한 국가는 독일, 베트남, 예멘 등 3개국을 꼽을 수 있다. 독일과 예멘은 1990년에, 베트남은 1975년에 각각 통일을 이루었다. 이들 3개국은 서로 다른 국내외적 상황에서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각각의 사례가 독특한 유형을 이룬다. 베트남은 무력통일, 예멘은 합의통일 이후 무력재통합, 독일은 사실상의 흡수통일 사례에 속한다. 3개국의 사례 중 독일의 사례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아직 통일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분단국 사이의 교류를 태폭 확대한 경험을 제시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원, 2000, 「통일문제 이해」, 제 4장 참조).
- 45) 서독의 동방정책은 「선평화·후통일정책」에 입각하여 동서독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방정책을 근거로 양독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양독간 최초의 국가조약인 “동서독 일반통행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동서독은 1973년 9월 18일 UN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으며, 1974년 양국 체육교류에 관한 의정서 서명, 1986년 동서독 문화협정 체결, 과학기술협정, 환경보호협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독일은 통합이론의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을 토대로 동서독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실시하

그러나 이러한 정책 하에서도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방문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고 동독의 정치적 이유로 선별적인 교류만 허용하였으므로 통일 이전 동서독 민간교류나 여성교류는 많은 부분이 개인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졌고 단체간 또는 전문영역별 공식교류는 무척 제한적이었다.

통일 이전 동서독간 교류협력 내용을 보면⁴⁶⁾ 경제교류, 인적교류, 이주민, 우편·통신, 그리고 기타분야별 교류로서 전문가교류, 정당간의 접촉과 교류, 방송·언론교류, 동서독 교회의 협력, 청소년 교류, 도시간 교류, 교육·과학·기술, 보건·환경, 문화교류, 체육교류, 그리고 평화문제관련 모임 등이 중심적이었다.⁴⁷⁾ 이들 중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교류협력은 방송·언론교류, 동서독 교회의 협력, 그리고 평화문제관련모임 등이다. 특별히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던 분야는 평화회의에 여성대표들의 참여와 이 틀 속에서 여성문제가 논의되었던 평화문제관련모임이었다.⁴⁸⁾

동서독간에 분야별로 집중적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베를린

여 실리를 추구하면서 상대방을 알고 서로의 신뢰를 쌓아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이질화를 막고자 하였으며, 이산가족의 재회, 경제·기술협력과 군축 그리고 문화·예술의 교류, 통신교류, TV시청 등으로 민족의 이질화 해소와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6) 김경량(1999), 행정자치부(1998), 황병덕(1998), 김영탁(1997), 김학성(1996) 참조

47) 동서독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통일원(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참조.

48) 대부분의 조약문에는 “평화를 위한 시민들의 주도권”을 전개할 수 있도록 평화문제관련회의와 때로는 “평화를 위한 행동”까지 개최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서독 자매도시간에 평화관련회의가 매년 개최되었다. 1988년과 1989년에는 특히 평화회의에 여성대표들의 참여가 괄목할 정도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회의의 틀 속에서 여성문제도 논의되었다 (김경량, 1999:45-6). 구체적인 교류사례로서 평화운동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원, 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724)

- 동독측의 강력한 요구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화운동이 연간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았음.
- 예를 들어 Neunkirche와 Luebben 간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평화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화’를 개최 키로 하였음.
 - 1989 Salzgitter와 Gota간에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어린이 미술경시대회를 개최키로 함.
 - Halle와 Karlsruhe 간에는 평화를 위한 여성의 기여와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의견교환행사가 개최됨.
- 동독측은 평화운동과 관련하여, 그들의 대회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독측 자매도시에게 평화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자는 사례도 빈번했음.

장벽이 붕괴됨으로서 동독이 변화 및 개방을 맞이하는 1989년 11월부터였는데 여성교류도 이 시기부터 여성단체, 직업단체, 연구단체,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서독과 동독의 민간여성교류는 3단계 (통일이전-통일과정-통일이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지만 통일이전단계인 준비과정은 제한적이었고 집중적인 시기는 80년대 후반인 86년에서 87년으로서⁴⁹⁾ 여성교류는 1989년 11월을 시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활동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1989년 11월 이전 여성교류는 평화 및 환경문제를 주제로 하여 주로 서독의 교회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동독을 지원하는 교류활동이 주축이었으며 그 외에 정보 및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학술적 교류, 그리고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 이후 활발한 인적교류로 인한 동서독 여성들의 방문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989년 11월 이후에는 동독의 개혁을 지원하고 통일 후의 여성문제 해결과 여성발전을 위한 동서독 여성의 조화 형성을 위한 교류, 그리고 자발적인 여성단체의 조직을 지원하는 교류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9: 248-251).⁵⁰⁾

(1) 1989년 11월 이전의 여성교류

1989년 11월 이전의 동서독간 여성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교류에 참여한 동독의 주요 여성단체는 정부차원의 「독일민주여성단체(DFD)」다. 그 당시 동베를린과 동독에 교회 내 여성단체,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 변화·대화를 위한 여성단체가 있었지만 (한독위크숍)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단체는 「독일민주여성단체 (DFD)」였다. 서독여성단체

49) 한독위크숍

50) 서독정부는 통일이전과 통일과정에 가급적으로 많은 NGO를 지원하였는데 특히 서독 NGO들이 동독의 단체 및 여성 접촉하는데 많은 후원을 했다. 통일이전 서독정부가 동독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구체적 방법은 책, 인쇄물의 형태, 여행경비 (서독여성단체가 동독으로 갈 수 있는 여행경비), 그리고 과일바구니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선물하고 오는 형태들을 통하였다. 통일 후 정부프로그램으로 구동독내 여성단체에 막강한 지원이 있었는데 그 액수는 수백만 마르크에 달하였다고 한다 (한독위크숍).

로는 「독일여성원(DF)」, 「세계어머니조직(WOMAN)」, 「사회봉사카톨릭여성(SKf)」가 대표적이었으며 교회여성단체들의 역할이 컸다. 특히 「사회봉사카톨릭여성(SKf)」은 통일 이전 40년 동안 동독을 지원해왔다. 「카톨릭독일여성연합(KDFB)」은 1961년부터 제한적이기는 하나 동베를린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교류나 단체 방문을 해왔고 동독에 소포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독일카톨릭여성단체(KFD)」는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동독의 교회단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를 해왔다. 또한 「독일개신교여성단체(DEF)」가 1963년 이후 동베를린을 매년 방문하였고, 약 6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의 「개신교여성부조(EFHID)」는 개인적 차원에서 10년에 한번씩 교류를 이루어 나갔다.

학술적인 교류면에서는 서독의 「여성과 사회연구소(IFG)」가 1986년 초부터 동독의 「비센사프텐학술원」의 「사회학 및 사회정책연구소」의 여성연구반과 자료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여성국제학술회의를 통하여 동독과 접촉을 가졌다. 또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활발한 인적교류가⁵¹⁾ 이루어졌는데, 동독여성의 경우 연금 수령자인 60세 이상의 여자들은 (남자들의 경우는 65세 이상) 서독과 서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었다.

(2) 1989년 11월 이후의 여성교류

1989년 호네커가 퇴진하고 모드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동서독간 통일논의가 보다 진전되면서 여성교류는 활성화되었다. 개인적인 인적교류와 더불어⁵²⁾ 우선 서독의 여성단체인 「독일여성원(DF)」은 동독의 개

51) 1971년 베를린 협정의 체결로 동서독간의 왕복교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서독정부가 직접 협상하게 되어 동독여행이 한걸 자유로와 졌다. 분단이후 동서독 주민간의 왕래는 동독측의 잦은 제한조치로 인해 어렵기는 했어도 항상 그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1953년 여권제도 폐지로 방문여행이 보다 수월해 졌었다)

52) 전반적으로 동독의 개방을 전후로 80년대 말에는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특별한 행사

방에 따라 동독여성단체와 새로운 공동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호이해를 위해 1990년 4월 “장벽은 허물었는데 이제 무엇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동서독 사회정책을 비교하면서 제1차 국가조약에서 여성정책이 고려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였다. 「독일여성원(DF)」은 다각도로 동독여성들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여성직업단체로는 「독일여성법조인단체(DJB)」, 「독일여의사단체 (DAB)」, 「독일여성엔지니어단체(DIB)」등이 직능별로 동독의 여성단체 파트너와의 인적교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여성단체로 180만명의 여성회원을 가지고 있는 「독일노동조합연합(DGB)」은 여성직업단체들이 실제 통일이후 여성들이 해야할 과제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실질적 논의가 없었던 것에 반해 여성국을 중심으로 전문가회의를 통해 서로의 문제점, 정보교환, 지원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연금법 등 통일입법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약 20만 명의 여성회원을 가지고 있는 「독일사무직노조(DAG)」도 여성국을 중심으로 여성문제를 논의하였고 특히 “직장 및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여성평등정책 및 가정과 직업의 조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여성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외의 여성교류를 이룬 조직으로 「여성고용자연합(VWA)」이 있으며, 「독일공무원단체(DBB)」의 연방여성대표들은 여성실업, 탁아소 폐쇄 등과 관련하여 1991년 중반기까지 탁아소 재정지원을 규정한 통일협정의 기간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독일여성문제단체(DFK)」는 “문화계에서 여성활동의 활성화와 여성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여성교류를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989년 이후 여성단체나 개인적인 차원의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갔던 반면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급진전된 제도적 통일과정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여성이슈를 반

가 있을 때에만 가능했다. 예를 들면 50회 생일이나 100회 생일 등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일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방문을 위한 기회마련의 길은 다양했고 열려 있었다 (한독위크숍).

영할 수 있는 활동의 한계를 가져왔다. 이는 통일이 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문제와 통일찬반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여성문제는 중요이슈가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 예로 구동독 여성단체들이 연합하여 형성된 「독일여성연합(UFV)」의 역할과 활동의 저조를 들 수 있다 (한독워크숍).

(3) 동서·독 여성교류협력의 특징

동서독 여성교류협력의 특징은 양 독간의 교류가 구동독 여성들로 하여금 동독내에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역할수행에 기여함으로써 여성교류의 사회통합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⁵³⁾ 구동독에서 여성단체는 정부차원의 「독일민주여성단체 (DFD)」가 중심이었는데 1970년대 말 1980년대에는 평화나 환경운동을 주제로 생겨난 비공식적인 여성단체들은 구서독의 여성단체나 국제여성단체와⁵⁴⁾ 연관을 맺었고 교회와 도서관은 의사교환을 위한 중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한독 워크숍).⁵⁵⁾ 평화나 환경문제 외에 비공식적이지만 정치적 문제 및 가정의

53) 게르다 체반스키는 통일직후 옛 동독지역에 살았던 다양한 연령층의 각계 각종 여성을 인터뷰함으로써 변혁이전과 변혁이후 동독 여성들의 삶의 모습, 체제에 대한 그들의 견해, 희망, 혼란스런 감정, 현재 겪는 어려움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여성들간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하였다. 게르다 체반스키 저, 여성한국사회연구소 역 (1999, 「고요한 해방」, 한국신학연구소. 참조

54) 동독여성단체들의 국제회의의 참가는 공식적으로 DFD 같은 정부기관여성단체만 참여할 수 있었고 접근은 가능했지만 (예를 들면 체코 같은 제 3국에서의 만남) 이를 위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회의의 중심적인 주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직업, 탁아, 또는 생활필수품조달 같은 현실적 문제를 많이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독워크숍).

55) 교회를 중심으로 환경 및 평화주제를 가지고 여성신학자들이나 기독교여성단체들이 서로 공동행사를 주최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하였다. 기독교여성단체들은 외부적으로는 환경사업을 표명하면서 베를린에 있는 도서관을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혹은 여성단체를 통해 서독여성들과 미국에 있는 단체들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서독의 여성단체나 환경단체들이 동독을 방문할 때 관광이나 개인적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와서 함께 모여 의견교환을 나누기도 하였고 이때 동독사람들은 이들로부터 인쇄물이나 정보 등 각종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동독인들은 무엇보다 상황을 알아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보획득수단으로 각종 인쇄물이나 자료를 우선적으로 원했으며 접

사회화, 교과서에서의 성역할, 교회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사회문제를 주제로 한 많은 토론은 동독여성들의 의식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독단체들의 민주화 및 사회체제 개혁을 위한 동독시민들의 의식 및 조직화교육은 「노이에스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여성들의 의식화에 영향을 주었다.⁵⁶⁾

그러나 동서독여성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통일과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직전에 급진전된 제도적 통일과정에서 이들의 소외는 동서독 여성운동의 특성과 경험 그리고 정치문화상의 차이에 대한 관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통일 이후 여성관련 정책이 여성에게 유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합차원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통일이 서독의 기존정책을 구동독이 일정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이었기에 구서독여성들의 지위가 약화되었다⁵⁷⁾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9: 251). 구서독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를 보면 이들 여성들에게는 직업, 탁아, 성적 자유를 주요 사업과제로 삼았던 반면 구동독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슈들은 이미 실천된 것이었다. 또한 구동독여성의 경우는 여성차별에 대한 논의가 없는 반면 구서독은 그렇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요구가 다른 차원이었다.⁵⁸⁾ 이

측자체를 통한 토론을 원했다). 이러한 접촉은 동독에서의 서독방문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항상 서독단체가 동독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접촉은 우선적으로 가정에 숙박하는 등 개인적인 루트를 통하였다. 모든 접촉과 모임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서독단체들은 동독시민들의 의식 및 조직화교육을 시켰다 (한독위크숍).

- 56) 통일이 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문제와 통일찬반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여성문제는 중요이슈가 되지 못하자 '새로운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여성들이 단체내의 지도부가 남성들로만 구성되고 이들 지도부 남성들이 여성문제는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그 때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한 것에 반발하였다. 이에 이들 여성들은 다른 단체들에서 빠져 나온 여성들과 연합하여 여성 NGO를 결성하게 되었고 나중에 「독일여성연합(UFV)」을 형성하였다.
- 57) 특히 동독지역 여성들은 실업 및 탁아문제, 낙태문제의 차별조항, 교육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변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58) 말하자면 동독에서는 여성해방이 이루어졌고 차별주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독이 공식적으로 남녀평등을 달성하였다고 했지만 사실상 당 지도층에서는 거의 여성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서독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수 층에서는 여성비율은 5%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슈미트국장은 여성차별은 동서독 여성들의 동일한 문제로 보기도 하였다 (한독위크숍).

는 여성들간의 다른 경험들과 기대들 그리고 정치문화들로 인해 ‘같은 언어로 말하는 데’ 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이후 구동독 여성들의 실업과 사회보장책의 미흡,⁵⁹⁾ 동독여성들의 가치관혼란을⁶⁰⁾ 가져왔고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은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방안을 준비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 독일 여성교류협력의 시사점

동서독 여성교류협력 경험은 전반적으로 구서독의 다원주의와 시민사회, 경제대국으로서의 역량이 일관되게 구동독과의 인적·물적 교류정책을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양 독간 여성단체들의 교류협력은 구서독 정부 및 여성단체들의 지원 하에 상호이해를 위한 만남과 대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통일후 상호이해가 어려웠던 것을 볼 때 다양한 만남과 대화가 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정책결정자로서의 여성의 참여와 여성관련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남북여성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것-노동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통일정책의

59) 통일 이전 동독에서 여성은 가계수입의 40%를 벌었고, 이에 비해 서독여성은 단지 18%에 불과하였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여성의 일자리는 40~50%가 줄어들었고, 여성의 실업률은 13배로 늘어났다.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경영하는 타아소가 자본주의적 영리경영으로 전환되면서, 타아비가 엄청나게 올랐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일자리를 떠나야 했다. 이런 현실들이 동독지역 여성들의 임신기피로 이어지기까지 하였다.

60) 통일이후 구동독지역 여성들의 여성해방론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기초하면서 과거 남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여 여성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부장제에서 찾았다. 반면, 구서독 여성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는 여성해방론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기본적인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함께 자신들의 삶의 양태가 질적인 삶을 부여받게 된 것도 아니라는 현실 속에서 삶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한 구서독지역 여성들의 우월감에서 오는 좌절감으로 인해 사회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겪고 있다.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여성들의 개입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준비와 과정에서 민족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참여는 기존의 군사, 경제중심에서 사회문화 영역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장을 넓힐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조성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호간 정보교환 및 접촉을 통한 대화와 만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을 볼 때 한국의 상황과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에게 대화와 만남을 위한 정보교환 및 접촉방법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본 연구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연구)에게 시사되는 점들을 다음과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독과 동독여성들의 교류상황에서 자료 구입비 및 세미나 참석비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한국의 경우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에게는 교류보다 지원의 성격을 띤 활동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때 북한여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 수집의 필요성과 동시에 북한여성들과 접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의 필요성이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개발원 및 여성관련 연구소들이 북한의 여성연구관련자들과 자료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여성국제학술회의가 제3국과 연계하여 (중국, 연변 등) 다양한 이슈로 개최되는 것도 상호이해를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분단상황에서도 동서독 상호 방문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의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동독인들이 서독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나아가 서독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의 큰 수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호방문 및 접촉이 중요한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 (예: 독일의 내독

성)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지속적인 상호방문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독이 동독과의 교류를 통해 동독으로 하여금 서독을 이해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그리고 다각도로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여성들만의 교류협력 특성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서독의 전반적인 동독지원정책과 종교 및 환경단체들의 교류협력의 유형(세미나, 방문 등)은 여성교류협력의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독일의 이러한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남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단계적인 시도의 필요성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주민의 생존을 돕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다음으로 남북여성들의 공통관심을 찾아 상호접촉 및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여성들에게 중요한 가정과 관련한 문제(가족의 의미,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가족주의 등)와 여성들이 익숙한 생활문화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북한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남한여성들이 북한 및 북한여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남녀평등관련문제(평등의식, 직업생활, 여성복지 등)와 사회문제(평화, 환경문제 등)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독의 경우처럼 남한의 환경 및 종교여성단체들과 기타 관련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며 이들 단체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갖고 개인적인 교류나 단체방문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 내 민주적 구조 확립 프로젝트와 같은 지원프로그램 계획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남한의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구심점을 갖고 계획수립과 이를 위한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제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수행했다.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장의 관련부분에 언급하였으며⁶¹⁾ 여기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결과⁶²⁾ 중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여성비정부기구(NGO)의 개념

여성비정부기구의 개념은 “국가기구를 제외한 모든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67.0%)이 “여성비정부기구에는 여성단체만 포함되어야 한다”(33.0%)는 의견보다 3/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여성비정부기구는 국가기구를 제외한 모든 여성관련 단체 및 기구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표 IV-1> 여성비정부기구의 개념

구 분	응답자수
국가기구를 제외한 모든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포함하는 개념)	12
여성비정부기구에는 여성단체만 포함되어야 함	6
계	18

61) 구체적인 내용들은 부록 참조

62) 조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나. 여성비정부기구와 정부의 관계

(1) 정부와의 연계성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여성비정부기구와 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 필요하다”(83.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통일정책의 기본원칙과 근거 하에서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활동 인정하고 다원화하며, 민간단체는 자율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표 IV-2> 여성비정부기구와 정부의 관계

구 분	응답자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 필요. 즉 통일정책의 기본원칙과 근거 하에서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활동 인정하고 다원화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함.	15
정부와 민간여성단체를 이어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2
통일협의과정에서 여성들이 소외되어 왔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특별조치 필요	1
계	18

(2) 여성비정부기구의 기능

남북한 교류·협력시의 창구 일원화를 위한 여성비정부의 기능을 보면, “여성단체의 대표성을 갖추고, 여성들간의 대화를 통해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합의된 의견을 내야 한다”(30.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고, 단체별로 다양하게 접근을 시도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25.0%)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3> 여성비정부기구의 기능

구 분	응답자수
여성단체의 대표성을 갖추고, 여성들간의 대화를 통해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합의된 의견을 내야 함	6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고, 단체별로 다양하게 접근을 시도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함	5
정부와 파트너쉽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 실시	2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 교류분야를 발굴하되, 상대방의 요구를 존중토록 해야 함	2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의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	2
유사업무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과 공동으로 남북교류를 추진	1
북한여성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1
북한의 교류대상기구와의 만남이 필요하고, 남북 NGO의 합의에 따른 단계적, 지속적 교류 필요	1
계	20

* 복수의견

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우선 영역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우선 영역은 “경제적 교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 문화교류(종교교류) -> 정치적 통합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31.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사업 및 문화교류를 우선으로 해야 하며, 다음이 경제교류 -> 부문별·분야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27.6%)는 의견의 순이다.

다음은 “비정치적 분야는 모두 가능하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직접

관련된 분야를 우선 시 하되, 무리해서 한쪽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13.8%), “초기에는 여성의 보건(한방의료 중 여성질환 등), 육아 등 중요하고 비정치적이며, 남북한 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관심 분야부터 추진한다”(10.3%)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표 IV-4>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우선 영역

구 분	응답자수
경제적 교류가 우선임 경제협력 -> 문화교류(종교교류) -> 정치적 통합	9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사업 및 문화교류 사회·문화교류 -> 경제교류 -> 부문별·분야별 교류	8
비정치적 분야는 모두 가능하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직접 관련된 분야를 우선 시 하되, 무리해서 한쪽의 의견을 관철 시키려 하지 않아야 함	4
초기에는 여성의 보건(한방의료 중 여성질환 등), 육아 등 중요하고 비정치적이며, 남북한 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관심 분야부터 추진	3
공동관심사인 정신대, 전쟁배상 등 공동 대응	2
남북의 가부장적 문화와 해결책 등에 대한 조사 및 토론	1
남한의 여성기업인들이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 (북한의 우수한 여성인력 활용)	1
남북한 서로 알기 위한 학술적 교류, 학자간의 교류	1
계	29

* 복수의견

라.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애요인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애요인을 보면, “여성계 내에 남북교류·협

력에 대한 인식과 노력의 부족과 여성단체간의 의견조정과 단합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몇몇 사람이나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36.4%)에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과 재원조달의 강조”(22.7%)과 “남북교류에서의 여성의 소외. 특히 북한 권력내부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13.6%)의 순으로 들고 있다.

이 외에도 정치와 이념성 배제와 북한의 다양한 교류 파트너가 없으며, 특히 북한의 자유로운 사고의 전염 우려가 문제이고, 인간 삶의 침해, 여성들의 낮은 통일인식과 신변보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 장애요인의 극복방안

북한 당국의 개방의지의 부족, 남한과 북한간의 이념 및 체제의 차이가 두드러진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면,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전개, 북한 정보공개, 남북언론교류 등을 통한 열린 마음을 갖고 상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여성들의 통일인식 향상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43.5%)가 가장 많은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꾀하는 남한의 태도가 중요하며, 특히 남한 정부의 여성교류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17.4%)고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 개방의 시급성, 북한여성 돕기 운동 전개의 필요성, 있는 대로의 이념과 체제 인정, 각 영역에서의 다양한 교류 시도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및 실천방안

(1) 남·북한의 여성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표 IV-5> 남북한의 여성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구 분	응답자수
여성대표성 인정이 중요함. 각 분야의 교류에 여성이 반드시 참여토록 해야 효과적일 것임	3
향후 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여성교류협력도 활성화되고, 교류의 내용과 종류가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2
통일운동은 국민적 동의 내지는 합의가 가장 중요	2
초당적인, 탈 정치적인 자세로 범여성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와 평화군축 문제 등에 있어서도 여성계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어야 함	2
최근 북측이 대 서방 외교에 적극적이므로, 제3국(독일 등)에서 남북여성이 함께 만나는 방법 가능	1
문화교류 필요	1
인적, 물적 교류 필요	1
계	12

남북한의 여성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보면, "여성대표성 인정이 중요하다. 각 분야의 교류에 여성이 반드시 참여토록 해야 효과적일 것이다"(25.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향후 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여성교류협력도 활성화되고, 교류의 내용과 종류가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16.7%)와 "초당적인, 탈 정치적인 자세로 범여성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와 평화군축 문제 등에 있어서도 여성계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16.7%)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통일운동은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문화교류, 인적이고 물적인 교류, 제3국을 통한 교류방법 등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로서 그 촉진요인을 보면, “민족화해와 신뢰를 통한 평화공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여성참여와 NGO의 역할의 중요성을 여성들에게 홍보하여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27.3%)와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경우 여성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내 여성 및 어린이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27.3%)에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이 “남북당국의 합의하에 ‘여성간 교류’의 공식적 독자적 창구를 마련하여 많은 수의 여성들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18.2%)와 “북한의 협력적 태도,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 교류 지원 강화”(18.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실천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보면, “문화, 종교, 예술,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북한 내의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22.2%)와 “여성들의 참여촉진방안 필요. 즉 남북여성들간의 지속적인 만남, 냉전 분위기 해소, 북한 경제난 해결, 남북간 동질성 회복 등의 활동에 여성 참여방안을 모색한다”(22.2%)에 대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이 “북한의 식량원조 및 의료품 등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부터 시작해야 한다”(16.7%)와 “남북한 공동의 관심사안의 개발과 공동의 이익을 확인하는 분야에서 추진, 민족적 유대감을 고유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추진(전통문화), 인사교류 및 여성지위 향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16.7%)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류·협력에서의 여성주류화, 여성과 어린이 지원, 모성간조 등의 사업을 펼쳐가야 할 것이다.

(3)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교류·협력 방식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식을

보면, “국제기구나, 제3국을 활용. 국제구호단체를 통한 지원활동, 남북 여성학자들의 학술교류, 등 북한여성에 대한 교육”(23.5%)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비율이 높다. 다음이 “여성들이 모금운동과 정부지원을 통해 북한 여성 돕기 시도, 일련의 노력 후 교류 제안” “북한 관련 전문인 구성으로 북한대표들과 열린 마음으로 관문점 등에서 “남북여성교류” “관련 사항 논의해야 한다” “공통적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예 위안부 문제)하고, 각 NGO들의 설립목적과 사업방향에 적합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여성계가 더 적합하다는 인식 공유하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임을 강조“의 항목이 각각 11.8%를 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기적인 목표와 원칙 하에, 국제기구나 단체를 통해, 문화 교류 형식으로, 범 여성조직으로, 일반여성들의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해보면, 여성비정부기구는 ‘국가기구를 제외한 모든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여성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크게 첫째,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한계점과 극복방안, 둘째,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실천방향, 셋째,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우선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한계와 방안

통일관련 전문가들이 본 남북여성교류협력의 한계점은 첫째, 북한여성계가 NGO로서 독립된 위치에 있지 않고 더군다나 개방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접촉의 목적과 범위가 제한적인 점. 또한 남북한간 공동현안의 발굴과 신뢰구축 의지 및 시도의 미흡, 그리고 의사소통 통로 제한’ 등의 문제를 들었다. 둘째, 북한이 남한 NGO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특정주체와 특정인사에 편중하여 교류함으로써 다양성이 부

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의 실리적 교류활동으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여성단체와 교류하는 문제점이 있고 넷째, 범 여성계의 이름으로 추진한 사업이 거의 없었으며 남북대화 창구가 남성들이 관할함으로써 여성계 교류문제가 도외시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남북한 모두 실적 위주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양하고, 대북 지원을 매개로 한 현실적인 교류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여성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남북교류를 위한 남한 NGO의 토론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직능단체간의 상호 교류방안이 필요하다 (여의사회 및 간호원 단체들의 의료지원 활동, 유아교육단체들의 북한유아원 돕기, 농민여성들의 농산물 나누기 등). 넷째, 북한의 GO와 남한의 NGO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정치적, 초당적 접근이 중요하다.

2)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촉진 및 실천방향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첫째, 민족화해와 신뢰를 통한 평화공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여성참여와 NGO의 역할의 중요성을 여성들에게 홍보하여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경우 여성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내 여성 및 어린이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당국의 합의하에 '여성간 교류'의 공식적 독자적 창구를 마련하여 많은 수의 여성들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협력적 태도를 유인하며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 교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류·협력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공동관심사를 찾아내야 한다.

교류 협력의 실천방향으로는 첫째, 문화, 종교, 예술,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북한 내의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둘째, 여성들의 참여촉진방안 필요한데, 즉 남북여성들간의

지속적인 만남, 냉전 분위기 해소, 북한 경제난 해결, 남북간 동질성 회복 등의 활동에 여성 참여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셋째, 북한의 식량 원조 및 의료품 등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 공동의 관심사안의 개발과 공동의 이익을 확인하는 분야에서 추진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추진(전통문화)하고, 인사교류 및 여성지위 향상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교류·협력에서의 여성주류화, 여성과 어린이 지원, 모성강조 등의 사업을 펼쳐가야 할 것이다.

3)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활성화 과제와 우선 영역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활성화 과제로는 첫째, 국제기구나, 제3국을 활용. 국제구호단체를 통한 지원활동, 남북여성학자들의 학술교류, 등 북한여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들이 모금운동과 정부지원을 통해 북한 여성 돕기를 시도하고, 북한 관련 전문인 구성으로 북한대표들과 열린 마음으로 판문점 등에서 ‘남북여성교류’ 관련 사항 논의, 공통적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고 (예 위안부 문제), 각 NGO들의 설립목적과 사업방향에 적합한 다양한 접근 필요하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여성계가 더 적합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임을 강조하도록 한다. 셋째, 장기적인 목표와 원칙 하에 남북여성교류가 국제기구나 단체를 통해, 문화교류 형식으로, 범 여성조직으로, 일반여성들의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남북한 여성의 교류·협력을 위한 영역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영역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We-group 위주의 교류·협력 영역
 - 여성음악회
 - 전시회 (미술, 음식, 옷 등)

- 학술토론(평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의 역할, 여성운동 등의 주제)
 - 전문가과견 (여의사, 약사, 교사 등 전문가의 봉사과 의료보건 사업 상호교류 필요)
 - 영화감상 함께 하기
 - 토속음식 만들기 및 전통문화 분야 교류
 - 민족의 동질성과 장점 찾기
 - 경제영역(여성들에게 소자본을 지원해주는 것/ 여성들의 자영업, 창업기금을 마련하여 재정 지원하거나 용자해주는 방법/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경제, 평화, 학술교류 등/꽃꽂이나 미용 등 여성전용 분야)
 - 중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의 평화 관련 토론회 등 전쟁배상금이나 군축과 관련하여 실리가 있는 분야
 - 각 지역, 공장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북한 여성들의 활동분야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우선 영역
- 경제적 교류를 우선적으로 하며 문화교류 (종교교류), 정치적 통합의 순으로 함
 - 인도주의적 지원관련 사업 및 문화교류를 우선으로 하며, 경제 교류, 부문별·분야별 교류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함
 - 비정치적 분야는 모두 가능하며, 민족동질성 회복과 직접 관련된 분야를 우선 하되, 무리해서 한쪽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아야 함
 - 초기에는 여성의 보건(한방의료 중 여성질환 등), 육아 등이 중요하고 비정치적이면서 남북한 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관심 분야부터 추진해야 함
 - 이 외에도 남북한의 공동관심사인 정신대, 전쟁배상 등의 문제 해결, 학술과 학자의 교류, 가부장제 문화와 해결책 논의부문 등의 교류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해 가장 적절한 영역으로는 중군위안 부문제나 ‘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토론회 등 남북한간의 공동관심사 분야를 비롯하여, 대북 지원을 매개로 한 경제적 교류분야와 정치 및 군사적 (전쟁배상금이나 군축 관련), 남성 중심적 분야로 실리가 있는 분야이어야 할 것임.

라.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해야 함
- 지원액에서 일정비율을 여성비정부기구여성들에게 배분해야함.
- 이 외에도 지원부서 및 담당자 배당, 활동 합법화를 위한 법제화 노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기존 기구와의 상호연계강화, 정부 역할축소 등을 제시함.

2)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 여성비정부기구는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등을 자체 사업 내용으로 삼도록 해야 함
- 실험프로그램 실시, 남북한간 지자체 자매결연 등을 통해 개방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해야함
- 남북한 교류협력의 의미를 여성들이 인식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성비정부기구의 연합조직을 마련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효율화를 기해야 함.

V.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되었던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배경,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실태, 관련 전문가 워크숍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⁶³⁾ 여성비정부기구들의 남북여성교류협력 추진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제,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정부 및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추진 방향 및 기본전제

가. 추진 방향

남북교류의 올바른 방향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사회문화를 상호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교류는 분단반세기 동안 유리된 상태로 독자적으로 구축된 사회체제 및 사회문화체제를 이해함으로써,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우영의 주장은⁶⁴⁾ 남북한 사회 구성원의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 교류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남북 여성교류는 일반교류와 달리 여성들만의 공통관심사가 제기될 수 있으며, 여성교류를 통해서 여성들이 통일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독일통일후의 동독여성의 실태나 북한이탈여성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통일과정이나 민간교류의

63)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

64) 이우영 (2000), “남북한 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방안 대토론회, 온겨레평화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과정에서 여성들이 낙후된다면 이것은 민간교류 전체의 파행성과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류는 정부나 민간이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생 교사 노조, 여성 등 각종 사회단체나 사회집단 그리고 지역단체나 지역 사회 등이 중심이 되는 교류가 추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지금 “현실적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능력을 고려할 때, 민간교육의 민간 주도를 인정하고 이를 제한하는 제도는 개선하고, 복돋울 수 있는 제도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⁶⁵⁾

그러므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민간교류는 남북의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여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복리를 증진하고 남북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남북화해방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낙후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하여 남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함으로서 평화와 화해의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남북교류에서 여성교류는 경제협력이나 남성위주의 사회문화교류 만큼 중요하며 체육인이나 음악인처럼 남성들과 함께 교류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여성교류의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자녀교육이나 가정문제처럼 여성특유의 것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주제들을 가지고 교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여성교류 활성화는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노력에 달려있다.⁶⁶⁾

첫째, 성 인지적 관점으로 통일정책이 추진되어 여성들도 통일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게 해야 한다. 현재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정책으로는 여성들이 소외되기 쉬우며, 여성들이 통일을 향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여성들

65) 제성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66) 본 연구진의 의견과 함께 이금순(2000)의 글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이 함께 성인지적 관점의 통일정책이 펼쳐져 여성들이 통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한 여성계의 인식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여성 및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준비 없이 조직 위상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북한여성과의 교류를 추진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북여성교류를 통해 남북한 여성의 공동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단체간의 통일관련 워크숍과 회원교육이 필요하다. 여성통일교육은 남한 여성단체간의 이해와 신뢰구축을 위해 서로 다른 사고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여성들로 하여금 남북여성교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공동목표 설정, 교류전략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여성교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단체들이 연합하여 정기적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연구모임을 조직한다면, 각자의 다양한 견해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의 교류대상 단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 수집이 요구된다.

셋째, 교류를 통해 단기간에 공동의식을 구축하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양 사회내 열악한 여성지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기 자국의 가부장적인 정치체제와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이 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여성운동 차원에서의 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분단상황으로 인해 여성이 겪는 어려움이 다양한 형태로 잔재해 있고 이에 대한 남북여성간의 공동 인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남북교류시 상호간 어떤 형태로든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경쟁적 측면을 최대한 배제하여 장기적으로 상호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 여성들간의 접촉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현 상황하에서 이러한 통일은

의가 북한측에 대한 체제위협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측이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임할 수 있는 분야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기존 남북교류의 주제가 되었던 ‘평화’를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경우 별다른 진전을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체제 비판을 수반하지 않는 작은 분야의 실천운동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여성교류를 단순히 사회문화분야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주제에 여성들을 참여시켜 여성적 시각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남북여성교류는 서로가 경쟁상대로서가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공동운명체라는 확고한 의식 속에서의 만남이 중요하다. 즉 남북여성의 공통관심사(중군위안부 문제 등)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여, 여성단체간 연대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군위안부 문제는 북일국교정상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에게 가치있는 주제이기는 하나, 이제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다섯째, 국제구호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북한여성 및 어린이의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우리 여성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남측여성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아픔을 덜기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남북여성간의 평화 논의가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북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여성계가 연대하여 진행함으로써 북한 여성계와의 교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원을 조건으로 단순히 일회성 방문을 하는 경우보다는 지속적인 방문을 끌어낼 수 있는 협력사업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여성보건사업 및 모자보건 사업(임신수유부, 영아에 대한 특별지원)을 여성계가 연대하여 진행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여성 비정부기구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여성평화운동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사업은 여성들이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섯째, 남북여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이 보여준 기존의 태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측이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포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남북여성교류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단순한 행사차원의 일회성 교류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신뢰 형성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공식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측이 북한여성을 상대로 교류를 제외할 때는 현실적인 접근가능 방법을 통해 남북한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위주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성통일운동은 여성이 주체가 되는 평화운동이자, 여성들간의 교류를 통해 통일 후 통합에 대비하고자 하는 민족화합운동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여성과 교류의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절실하기에 북한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의 개발이 시급하다. 북한여성들에게 교류로 인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는 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인적교류보다 경제교류에 대한 요구가 시급한 북한현실을 감안하여, 여성들도 경제교류 및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곱째, 북한여성들의 정서적, 심리적 동인이 될 수 있는 정보 및 매체교류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남북간 여성교류협력 추진방향은 여성교류협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신뢰의 구축,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주체를 가지고 국제협력을 도모하면서 전개해 나가야 하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제

(1)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체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민족적 공감대 형성, 상호신뢰 구축,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과 복지의 보장을 통해 북한이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상호이해와 현실에 맞는 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에 부합하고 사회현실에 적합한 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하는 사회상을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교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상호 존중 하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여성들 상호간에 우월감이나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호존중의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4) 교류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5) 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과 맥락을 같이 하되, 여성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항목을 선정, 실행토록 해야 한다.

(6)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대표의 북측 초청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남측의 북한대표 초청 수용은 매우 꺼려하여 왔음을 고려해볼 때 반드시 인적교류만이 교류가 아니라 작품, 지역소개 등만 가지고도 교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7) 주제의 다양화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생, 교사, 노조 등 각종 사회단체나 사회집단 그리고 지역자치단체나 지역사회 등이 중심이 되는 사회문화교류, 체육교류, 국제대회가 다양하

게 추진되어야 한다.

(8) 직접적 교류이전에 간접적 교류협력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방송파, 인쇄정보 등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여성 및 지역단체간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을 펼쳐야 한다. 즉 각 분야의 남한의 단체와 지역단체들이 특성에 맞게 북한의 여성관련 단체 및 지역단체와 교류협력사업을 펼쳐야 한다.

(10) 국제기구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세계적인 젠더 이슈로 북한여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며 이를 기회로 보다 직접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11)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3·18 민간차원 대북지원활성화 조치' 등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각종 보안관련 시행령 및 지침 등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북한사회문화를 접촉할 기회를 개방하도록 한다.

(12) 교류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즉 1998년 조직된 '민화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개별조직 및 단체의 과당경쟁을 예방해야 한다.

2.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가. 실행주체 및 주제별 접근

1) 정부의 역할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는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여성비정부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역할은 여성들의 통일운동에의 참여 확대 계획과 맞물려 다양하고 지속적인 통일운동의 계기가 되게 하며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

가) 성인지적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 수립

<표 V-1> 정부의 성인지적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수립

내 용	근거 및 세부내용
1. 정부차원에서 정상회담 후속 프로그램에 여성의 참여를 최소한 30%까지 보장.	2000년 현재 통일부 관련위원회 중 통일고문회(29명중 7명으로 25%)와 정책자문위원회(48명중 12명으로 25%)는 정책결정에의 여성 참여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여성의 참여를 보다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준비기간 중 김대중 대통령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대화를 가졌을 때 여성계의 의견으로서 수행원에 영역별 여성들의 참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4명 특별수행원 중 단 1명(4%)의 여성대표가 참여했다.
2. 통일부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현재 통일부내 교류협력국과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사무국 회담2과가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이나 남북회담사무국 회담2과에 여성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3. 남북한 공동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을 포함	남북한 공동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표 V-1 계속> 정부의 성인지적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수립

내 용	근거 및 세부내용
4. 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한 부문별 부속 합의서 이행	<p>합의서 제22조에 의하면,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 등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다. 즉 ①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설치와 실무적 문제들을 합의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공동위원회 내에 구성하거나, ②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든지 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p>
5.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에 여성참여	<p>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 남북경제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현재 남북화해공동위원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각각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각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각 부처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이 공동위원회에 현재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p>
6. 민간여성 중심의 자문위원회 구성	<p>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의 하나로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외에 민간 여성위원이 포함되거나 민간여성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p> <p>또한 정부와 민간여성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 및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표 V-1 계속> 정부의 성인지적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수립

내 용	근거 및 세부내용
<p>7. 통일과정에서의 여성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 설치와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공동위원회내에 구성</p>	<p>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유도해낼 과제로는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여성부문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여성영역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합의서 제22조에 의하면,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 등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다.</p>
<p>8. 통일전문인력 및 자원활동자 양성</p>	<p>통일과정 및 통일 후 각종 여성관련 문제들에 대비해 여성전문행정인력, 민간단체 여성인력, 민간여성전문가 및 여성자원활동자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실행하도록 한다.</p>

나)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수립

<표 V-2>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수립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1. 행정적 절차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의 단순화	같은 건으로 반복을 신청할 때 과정 및 절차의 중복성과 이로 인한 시간소비, 그리고 접촉시 신고서의 수시 작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활동이 불편하였음. 여성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원은 확실하므로 전반적인 서류제출을 간소화시키도록 한다. 또한 통일부 담당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접촉승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과정들 즉 남북상호간의 연락이나 북한정부로부터 허락을 받는 문제 등에 대한 것도 도와줄 필요가 있다.
2.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여성 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 방식의 대북 지원사업의 재정적지지원	여성비정부기구는 일반비정부기구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간 통일연구에서 여성들이 소외되어 왔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며 교류·협력에서도 여성비정부기구는 정부의 지원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여성교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남북교류기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여성교류에 대한 지원액의 비율을 높여주도록 해야 한다. ⁽⁶⁷⁾

67) 강영식(2000),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대토론회』, 온겨레평화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p.23에서 참조하였음.

정부는 1999년 10월 21일 제 6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였다. 이 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지원기로 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대북 지원활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아니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은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분배투명성 확보하고,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도 1년 이상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자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분유, 식용유 등 단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활성화와 다변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표 V-2 계속>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수립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3. 통일관련연구 및 학술교류 지원	<p>여성단체 및 여성연구소에 북한여성 및 통일관련 활동과 연구, 그리고 학술분야의 교류가 비교적 성사가능성이 높음으로 각 분야 여성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2000년 들어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처음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중 통일관련 지원사업에 3000만원(총6억 5천 200만원)을 시범적으로 책정했다. 1999년까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일반예산의 일부를 통일관련 분야에 지원했을 뿐이다.</p>
4. 여성비정부기구들 간의 네트워크구축 지원	<p>대북 지원 여성비정부기구들간이 창구일원화를 통해 사업선정과 구체적인 교류아이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관계 폭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 민주적 구조 확립 프로젝트와 같은 지원프로그램 계획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남한의 여성비정부기구들이 함께 이를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p>
5. 역할조정 및 여성교류의 민간화의 활성화	<p>정부는 여성비정부기구들의 통일운동, 이질화 극복운동의 큰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 주제 자체가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상적으로, 국가 보안적으로 어느 수위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정해주고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과 여성비정부기구에 과감히 넘겨야 할 일을 구분하는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 하에 여성비정부기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며 여성교류의 민간화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p>

<표 V-2 계속>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수립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6.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여성교류 지원	이는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 여성비정부기구들과의 연대를 통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국제적 유연화를 도모하고 국제여성단체들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으면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다)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실천과제

<표 V-3>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1. 여성자신들의 삶의 현장 중심으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프로그램 내용과 유형의 설정	<p>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교류를 해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도록 한다.</p> <p>우선적으로 문화 (여성음악회, 영화감상 함께 하기, 토속음식 만들기, 미술·웃 등의 전시회), 학술토론 (평화와 여성, 여성운동 등), 전문가 파견(의사, 약사, 교사 등), 지자체를 통한 남북한 자매결연 등으로 상호 교류를 시작하여 인권문제, 여성의식문제 등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상호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고, 접촉활동을 하도록 한다.</p> <p>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계가 다양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되, 영역에 따라서는 각 단체가 각기 고유의 특성을 갖고 교류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p>
2. 남북한간의 경제적 차이와 빈부의 격차를 감안한 통일사업 전개	<p>통일 후 남북여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활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적 모델을 개발, 실현해나가야 한다⁶⁴⁾. 즉 평등하고 열린 공동체를 생산 및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모색하고 이러한 공동체의 형태를 창조하는 통일사업을 전개한다. 남북한 여성교류를 위한 공동의 장과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p>

<표 V-3 계속>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3. 통일교육의 공교육화와 활성화	<p>평화의 관점을 담은 통일교육을 공교육으로 확대하며 여성비정부기구들의 통일관련 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평화 통일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여성비정부기구들의 통일교육프로그램을 확대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 여성들의 생활실태와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통일의 파트너로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4. 숙식 교류프로그램 운영	<p>남북여성들간의 이질성문제의 심각성⁶⁹⁾에 비추어 남북여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를 직접 만나 숙식을 함께 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한다.⁷⁰⁾</p> <p>물론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즉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고 지엽적인 것 시간을 빼앗기는 일 정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그런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한다.</p>

68) 이효재(2000),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전문가 의견조사의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임(전문가 의견조사 표 IV-16 참조).

①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간의 만남은 남북여성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②“여성은 왜 통일을 원하며, 어떠한 통일사회를 갈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이념적인 답론을 여성들은 지혜와 소망을 모아 제기해야 한다. ③같은 언어와 민족문화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에는 심각한 장벽과 어려움이 가로 놓여 있다. 분단으로 인해 내면화된 상호불신과 적대관계, 그리고 자본주의에 기반한 남측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측의 사회주의적인 가부장적 국가체제가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남북간의 여성교류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69) 남북한 여성간의 이질성 문제: 표기순서의 민감성(예: 남북한→북남한)/ 개념에 대한 시각의 차이 (예: 정조, 여성문제, 윤락행위, 식민지, 체제 등)/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 북한측은 “민족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라고 전제하는 반면 남한측은 분단에 따른 이질감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분단상태에 따른 인식의 차이.

2)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사업을 구상하며 여성들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사업을 실행하는데 정부의 강력한 지원요구와 남성(단체)들과의 연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단체들이 통일사업과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의 빈약한 재정 및 인적자원과 허약한 조직의 문제점들이 극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여성비정부기구는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한 여성계의 인식을 새롭게 정비하며 교류의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가)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사업내용의 구상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견해차이-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남녀평등지수와는 달리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봉건적임.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시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큰 아파트를 배정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여성을 주체적인 인간이 아닌 “꽃”으로 지칭함)

- 70) 독일에서 통일 이후 시도되었던 방법을 보면, 독일에서는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3박 4일로 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고 서로에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으나 마지막에는 자신들 개인의 사적인 부부갈등, 성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면서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오해가 많이 극복되었던 경험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논의 기간은 매우 짧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통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통일과정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과정 중 남북한 여성들이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남북한간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주 작은 규모에서부터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 지금은 학술대회 형태로 주로 학자들이 만나 시간을 가지는 정도이지만, 이것이 점차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일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무슨 사상적인 논쟁이나 선전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희망, 걱정, 고민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로만 그 내용이 제한되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V-4>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교류협력사업내용의 구상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1. 남북여성교류가 다수의 여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며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의제의 지속적 개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예민하게 제기된 통일방안, 자주의 문제 등에 대한 남북여성의 의견을 교환하는 정치군사적 의제로부터, 남북의 사회문화 통합의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 대한 여성·생태주의적 관점의 제시, 남북한 여성·가정 교육의 비교, 여성의 직업과 사회활동 현실 등 여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의제들에서 남북한 여성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여성간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주제는 ①일제의 전후 보상문제, ②요리대회, ③미용대회, ④여성의 건강문제, ⑤농촌총각문제, ⑥가정생활, ⑦결혼풍습 등을 들 수 있다.

<표 V-4 계속>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교류협력사업내용의 구상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p>2.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설정</p>	<p>여성간 인적 교류사업으로 ①이산가족 노인 여성들의 이산가족 재회, ②공동의 학술문화행사 (평화, 민속문화재, 전통문화, 아동보육, 건강 등의 다양한 이슈를 가진 학술회의개최 및 참여 등)와 공동연구 및 남북한 여성의식조사, ③여성관련 연구자 및 여학생의 상호 방문, ④ 지방자치단체간 여성단체 중심의 자매결연 등을 들 수 있다.</p> <p>경제영역에서의 교류는 북한여성들에게 소자본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육성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여성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계획을 제의한다면 북한고위직 여성들과 교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p> <p>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분야의 상호교류로 교류분야가 확대될 수 있다.</p>
<p>3. 남북한 상호 방문의 지속</p>	<p>동서독의 경우를 보면, 분단상황에서도 상호방문이 계속되고 있었다. 동독에서 서독의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동독인들이 서독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나아가 서독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의 큰 수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호방문 및 접촉이 중요한바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산가족들의 지속적인 상호방문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사업을 개발하도록 한다.</p>
<p>4.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여성교류협력센터를 설치해야 한다</p>	<p>여성비정부기구간의 워크숍과 여성단체의 회원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상시 활용이 가능토록 여성교류협력센터를 설치하고, 남북한 여성 및 여성비정부기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p>

나) 남북한여성교류협력을 위한 방법론 구축

<표 V-5>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p>1. 북한여성 및 아동 지원운동을 병행하면서 남북여성교류를 모색토록 한다.</p>	<p>1997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와 함께 탈지분유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연대를 위한 조선여성협회’와 조선민주여성동맹에게 지정 기탁했다. 2000년 3월 우리민족서로돕기 여성위원회는 옷감 30만 야드 등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연대를 위한 조선여성협회’에 전달했다. 그리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북한 어린이 돕기 교회 여성연대”(24개 단체)를 조직하여 20억 모금을 향해 출발했다. 각 여성단체들이 대북한 어린이나 여성지원운동을 전개하여 경제적인 지원은 남북여성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p>
<p>2. 남북한 여성간에 상호 공통성이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인 교류·협력추진</p>	<p>남북여성간 학술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의 기본원칙은 남북한의 공통적, 우수하고 도움이 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p>제3국 (북경, 연변 등)에서 우선 북한이 자랑할만한 영역 (한의학, 발해사, 단군사 등) 상호간의 공통적인 영역 (전통민속, 무용, 음악, 미술 등) 북한의 도움이 될 영역 (현대의학, 농업기술, 전자기술 등)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치적 분야와 함께 정치적 분야에서도 <남북공동선언>에서 제기된 개념 (자주,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들을 주제로 하여 토론하고 토의하는 국제세미나 개최방법이 실효성이 있다.⁽⁶⁵⁾</p>

<표 V-5 계속>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p>3. 여성비정부기구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방법의 시도</p>	<p>서독이 동독과의 교류와 동독으로 하여금 서독을 이해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그리고 다각도로 접근하였음을 볼 때 남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도되어야 한다.</p> <p>우선적으로 북한주민의 생존을 돕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다음으로 남북여성들의 공통관심을 찾아 상호접촉 및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여성들에게 익숙한 부분인 생활문화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북한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남한여성들이 북한 및 북한여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남녀평등관련문제 (평등의식 고양, 여성복지 등)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독의 경우처럼 남한의 환경 및 종교여성단체들과 기타 관련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며 이들 단체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갖고 개인적인 교류나 단체방문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p>
<p>4. 여성단체들의 연대틀이나 정보교류네트워크의 구성</p>	<p>이것을 통하여 공동의 협력으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정보 채널의 역할도 해야 한다.</p>
<p>5. 북한의 전문가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여성 접촉과 현재 북한을 이끄는 여성지도자들과(부록참조)의 접촉을 하도록 한다.</p>	<p>북한은 여성단체가 별도로 있기보다는 모든 조직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함으로 여성조직을 중심으로 한 여성교류는 제한적임. 북한은 남녀가 함께 하는 의사회, 교사회 같은 전문가모임이 있어서 이러한 모임과 우선 교류를 한 후 여성을 구별하여 만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여성들과의 교류를 제외한다면 여성들의 생활에 근거를 두거나 주로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 탁아소, 유치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p>

<표 V-5 계속>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p>6. 교류상황에서의 재정 지원은 자국의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 뿐만 아니라 북한 여성들의 참여를 위해서도 주어 져야 한다.</p>	<p>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이 하나의 사업으로 선정되면 재정지원이 총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서독과 동독여성들의 교류상황에서 자료 구입비 및 세미나 참석비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에게는 교류보다 지원의 성격을 띤 활동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때 북한여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 수집의 필요성과 동시에 북한여성들과 접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의 필요성이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개발원 및 여성단체들과 여성관련 연구소들이 북한의 여성연구관련자들과 자료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여성국제학술회의가 다양한 이슈로 개최되는 것도 상호이해를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p>

다)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실천과제

<표 V-6>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실천과제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p>1. 여성비정부기구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를 향상시켜 비정부기구활동분야의 저변의 확장</p>	<p>비정부기구가 오래 전부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나라는 아직도 비정부기구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인 만큼 계몽과 교육을 통해 비정부기구 자체와 그 활동영역을 알려야 한다. 더 나아가 여성비정부기구가 여성교류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량을 기구 자체가 갖추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p>
<p>2. 모든 여성들의 통일 의식을 향상시켜 다수의 여성들의 교류 동참.</p>	<p>지금까지 남북여성교류는 특정 소수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남한은 재야 여성운동가들이었고, 북한은 정부와 가까운 여성들이었다. 북한사회에서 사회단체는 노동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한과 같은 의미의 민간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교류 일정이 행사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성과가 일반여성들에게 파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반여성들과의 접촉이나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의 삶을 느끼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탈피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p>
<p>3. 단체의 특성에 맞게 북한의 여성단체 및 지역단체와 교류·협력할 수 있는 사업의 구상</p>	<p>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향후 각 여성단체들이 북의 지역이나 단체를 선정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교사들 역시 통일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류하며, 환경단체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여성단체들은 북의 지역 여성동맹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p>

<표 V-6 계속>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실천과제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4. 단체의 특성에 맞게 북한의 여성단체 및 지역단체와 교류·협력할 수 있는 사업의 구상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향후 각 여성단체들이 북의 지역이나 단체를 선정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교사들 역시 통일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류하며, 환경단체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여성단체들은 북의 지역 여성동맹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세 확립	남북한 여성들이 논쟁할 수 있는 주제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제행사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침체화할 위험성이 적었으며 상호자제가 가능하였으나 토론회 시 논쟁의 가능성이 늘 남아있다. 개념, 여성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에서 남북 여성의 인식 차이가 토론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다.
6. 주제의 개방	여성들은 남북여성교류의 기회가 생기는 주제는 무엇이든지 제3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정신대대책협의회가 주관할 “2000년성노예국제법정”(2000.12.7~11)에 현재 북한여성 1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정되어 또 한차례의 남북한 여성교류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5차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구하도록 한다
7. 여성교류를 실천해 갈 인력자원의 육성	북한여성과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정보수집과 기획, 추진가능한 정치적 실무력을 겸비한 여성평화전문가들을 양성하여 통일정책이나 교류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V-6 계속> 남북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실천과제

내용	근거 및 세부내용
8.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의 전문성 배양	<p>이를 통해 통일운동이나 이질화 극복운동에 있어 정부로 하여금 단체들이 가장 중요한 동반자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며 단체들도 이러한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일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있어 정부와도 공동보조를 맞출 수 없는 단체가 북한의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 이질화를 극복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에 있어 단체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애정과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각 단체는 그 단체고유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통일운동과 이질화극복운동에 있어 구체적인 영역의 활동능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그 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p>

3)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간의 협력관계 증진과 국제여성비정부기구의 협력관계 구축

<표 V-7>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관계

주제	내용
1.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증진	<p>1) 대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성비정부기구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먼저 북한의 정치,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p> <p>2) 북한과의 협력·교류할 수 있는 주제와 분야, 교류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정부를 통하여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p> <p>3) 정부는 여성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북 정보 제공, 남북교류 시 대북 창구 역할을 하며 북한주민 접촉승인, 방북승인, 사회문화협력사업자 및 사업승인,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p>
2.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p>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들이 평화형성을 위한 주체로서 동북아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여성들이 화해의 전달자이며 갈등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는 남북을 뛰어넘어 일본 여성들이 결합한 하나의 여성네트워크였다. 이를 토대로 여성평화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p> <p>2) 전세계적으로 젠더이슈가 되고있는 여성의 빈곤문제나 여성가주구의 문제를 통해 이를 다루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여성 및 어린이지원사업과 연대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p>

<표 V-7 계속>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관계

주제	내용
<p>2.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p>	<p>3) 북한 내 활동하고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 (예: UNICEF)를 파악하여 이들이 북한정부의 당 간부와 각종 사회단체들과 연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남한여성비정부기구와의 교류채널을 확대시키도록 한다.</p> <p>4) 연변여성들과의 교류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을 왕래하는 연변주민들이 많을수록 북한여성들이 남한상황 (정보, 물품 등)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며 남한여성들도 북한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연변의 단체들이나 모임 (연변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한인모임, 무역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여성들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야한다. 또한 연변사람들의 70%이상이 북한사람들과 친인척임으로 연변여성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북한측과 일정한 교류를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과 학술교류를 하고 있는 연변대학의 여성문제연구소를 통한 학술교류, 연변의 ‘여성불교연합회’, 연변의 ‘여성경영인협회’와 ‘부련회’ 등과도 교류할 수 있음)/ 남한, 북한, 연변 3국 여성들이 함께하는 소규모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임/ 연변과 북한이 함께 하는 행사가 있을 때 재정적 지원을 통한 행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류기회를 가질 수 있다.</p>

<표 V-7 계속>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 및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관계

주제	내용
<p>2.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 관계 구축</p>	<p>5) 소액신용(Microcredit) 프로그램⁷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05년까지 여성인 전 세계 빈민층 1억 가정에 소액신용 혜택이 미치게 한다는 목표아래 1997년 2월부터 실시되었는데 ‘극빈’의 범위를 각 국가가 빈민층으로 규정한 선 이하로 떨어진 수준에서 생활하는 인구의 하부 절반으로 정의하였다. 전세계 1,065개 소액신용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12월 31일자로 이 프로그램은 1,380만 극빈자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중에 75%인 1,030만 명이 여성이었다. 전세계의 극빈층과 혜택받지 못한 지역 사람들의 가난의 고통을 덜어주고 자립력을 높여주며 경제활동을 격려하는 귀중한 수단임을 볼 때 북한여성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교류의 기회를 넓히도록 한다.</p> <p>6) 한국여성비정부네트워크의 행사 (After Beijing+5)를 개최함으로써 최근에 비정부기구 활동을 시작한 중국이⁷²⁾ 다른 동아시아국가처럼 구조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이슈화 한 것처럼 북한의 상황도 이슈화 할 수 있도록 한다.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세계비정부기구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여성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아·태지역 여성문제를 이슈화하여 해결방안을 위한 교류 기회를 넓히도록 한다. UNGASS의 행사 프로그램 (패널 토의시 다루었던 ‘International Responses to Comfort Women Issue’는 좋은 예임)과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을 통한 적극적인 교류방안도 검토하도록 한다.</p>

71) Beijing+5 UN 특별총회 NGO 보고회 (한국여성NGO네트워크, 2000 소액신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증대: 소액신용 정상 캠페인 2000’ (‘Empowering Women with Microcredit: Microcredit Summit Campaign

나. 단계별 접근

위에서 제시되었던 실행주체 및 주제별 접근방법과 마찬가지로 영역 및 단계별 접근에서는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을 단기와 중장기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 정부의 역할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성인지적 정책수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여성교류협력 실천을 위한 과제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가) 성 인지적 정책수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구분	성 인지적 정책수립
단기	1)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정책 수립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최소한 30%까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민간차원의 정부차원에서 정상회담 후속프로그램에의 여성참여 보장 •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에의 여성참여 • 민간여성 중심의 자문위원회 구성 3) 통일부에 여성문제 전담부서 설치 4) 남북한 공동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중장기	1) 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한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2) 통일과정에서의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설치와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공동위원회 내에 구성 3) 통일전문인력 및 자원활동자 양성

Report 2000')

72) Howell, Jude (1995), "Prospects for NGOs in China," *Development in Practice* 5(1):5-15

나)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구분	여성비정부기구의 지원정책
단기	1) 정부의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와 과정의 단순화 시도 2)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방식의 대북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3) 여성비정부기구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통일관련 학술교류 지원
중장기	1) 통일관련연구 및 지속적인 학술교류의 지원 2) 여성비정부기구간 역할조정 및 여성교류의 민간화의 활성화 3)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여성 교류 지원

다) 남북한 여성교육협력을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

구분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
단기	1) 여성자신들의 삶의 현장 중심으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프로그램의 내용과 유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교류, 상호 신뢰 구축토록 지원 ▪ 정부지원 및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류 (여성음악회, 영화감상 함께 하기, 토속음식 만들기, 미술·웃 등의 전시회) - 학술토론 (평화와 여성, 여성운동 등) - 전문가 파견(의사, 약사, 교사 등) - 지자체를 통한 남북한 자매결연 등에서 인권문제, 여성의 식문제 등으로 확대 - 상호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파트너 확보, 접촉활동 시행 - 여성계, 다양한 단체가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되, 영역에 따라서는 각 단체가 각기 고유의 특성을 갖고 교류토록 지원
	2) 남북한 여성간 통일교육의 공교육화와 활성화 3) 숙박교류 프로그램 운영

73) Beijing+5 UN 특별총회 NGO 보고회 (한국여성NGO네트워크, 2000 소액신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증대: 소액신용 정상 캠페인 2000' (Empowering Women with Microcredit: Microcredit Summit Campaign Report 2000')

74) Howell, Jude (1995), "Prospects for NGOs in China," *Development in Practice* 5(1):5-15

구분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의 실천과제
중장기	1) 남북한간의 경제적 차이와 빈부의 격차를 감안한 통일사업 전개 - 통일 후 남북여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활방안 모색, 실천적 모델 개발, 실현 즉 평등하고 열린 공동체를 생산 및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창조하는 통일사업을 전개 2) 남북한 여성교류를 위한 공동의 장과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함.

2)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해서 여성비정부기구가 해야 할 역할은 여성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상하고,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사업의 방법론을 구축하며, 여성비정부기구가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하였다.

가) 여성교류·협력 사업의 내용구상

구분	여성교류·협력사업 내용 구상
단기	1) 남북한 여성의 공감대 형성 가능 주제 개발, 실현 - ①일제의 전후 보상문제, ②요리대회, ③미용대회, ④여성의 건강문제, ⑤농촌총각문제, ⑥가정생활, ⑦결혼풍습 등 2)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교류영역 설정 - 남북한 여성간 인적 교류사업 ①이산가족 노인여성들의 이산가족 재회 ②지방자치단체간 여성단체 중심의 자매결연 등

구분	여성교류·협력사업 내용 구상
중장기	<p>1)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구상 및 의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예민하게 제기된 통일방안, 자주의 문제 등에 대한 남북여성의 의견교환 - 남북의 사회문화 통합의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 대한 여성·생태주의적 관점의 제시 - 남북한 여성·가정 교육의 비교, 여성의 직업과 사회활동 현실 등 여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의제 <p>2)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설정으로 교류가 지속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의 학술문화행사 (평화, 민속문화재, 전통문화, 아동보육, 건강 등의 다양한 이슈를 가진 학술회의개최 및 참여 등)와 공동연구 및 남북한 여성의식조사 - 여성관련 연구자 및 여학생의 상호 방문 - 경제영역: 북한여성들에게 소자본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육성 -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분야의 상호교류로 교류분야 확대 <p>3) 지속적으로 남북한 상호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서독 TV 및 라디오 시청이 가능하여 동독인들이 서독을 이해하는데 도움됨. 서독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된 점이 통일과정의 큰 수확이었음. -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호방문 및 접촉이 중요함. 즉 이산가족들의 지속적인 상호방문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이며,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사업 개발 필요. <p>4)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여성교류협력센터 설치</p>

나)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방법론 구축

구분	여성교류·협력사업의 방법론 구축
단기	1) 여성비정부기구의 역량 강화 2) 북한여성 및 아동 지원운동을 병행하면서 남북여성교류 모색 3) 남북한 여성간에 상호 공통성이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인 교류·협력추진 - 여성단체들이 대북한 어린이나 여성지원운동을 전개하여 경제적인 지원은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 탈지분유 전달, 옷감 30만 야드, 북한 어린이 돕기 교회 여성연대(24개 단체)를 조직 20억 모금 시작 4) 북한의 전문가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여성접촉과 현재 북한을 이끄는 여성지도자들과(부록참조)의 접촉 시도
중장기	1) 여성비정부기구의 역량 강화 2) 남북한 여성간에 상호 공통성이 있는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추진 ▪ 남북여성간 학술분야의 상호교류협력 ▪ 제3국 (북경, 연변 등)에서 상호교류 - 북한이 자랑할만한 영역 (한의학, 발해사, 단군사 등) - 상호간의 공통적인 영역 (전통민속, 무용, 음악, 미술 등) - 북한의 도움이 될 영역 (현대의학, 농업기술, 전자기술 등) - 비정치적 분야와 함께 정치적 분야에서도 <남북공동선언>에서 제기된 개념 (자주,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들을 주제로하여 토론하고 토의하는 국제세미나 개최 방법 3) 여성비정부기구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방법의 시도 - 여성들에게 익숙한 부분인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남한여성들이 북한 및 북한여성을 이해토록 해야 함. - 남녀평등관련문제 (평등의식 고양, 여성복지 등) 접근 - 동서독과 같이 개인적인 교류나 단체방문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구분	여성교류·협력사업의 방법론 구축
중장기	4) 여성단체들의 연대들이나 정보교류네트워크의 구성 5) 재정지원의 확대, 즉 자국의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 뿐 만 아니라 북한여성들의 참여를 위해서도 주어져야 함. -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이 하나의 사업으로 선정되면 재정지원이 총괄적으로 주어져야 함. 예로는 서독과 동독여성들의 교류상황에서 자료 구입비 및 세미나 참석비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음.

다)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여성비정부기구의 실천과제

구분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실천과제
단기	1) 여성비정부기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활동분야의 확대 2) 모든 여성들의 통일의식을 향상시켜 다수의 여성들의 교류 동참 3) 단체의 특성에 맞게 북한의 여성단체 및 지역단체와 교류·협력할 수 있는 사업의 구상
중장기	1) 남북한 여성들의 통일이해 및 실천자세 확립 - 남북한 여성들이 논쟁할 수 있는 주제 회피교육 필요 개념, 여성지위, 문제 해결방식 등에서 남북 여성의 인식차이가 토론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제 회피 2) 다양한 주제의 선정 및 개방 - 남북여성교류의 기회 확대 및 지속적 만남 필요 - 정신대대책협의회가 주관할 “2000년성노예국제법정”(2000.12.7~11)에 현재 북한여성 10여명 참석 예정. 이를 계기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5차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 요청. 3) 여성교류를 실천해갈 인력자원의 육성 4)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의 성숙한 태도와 전문적인 능력 배양

3)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간의 협력관계 증진

구분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협력관계 증진 과제
단기	1) 북한과의 협력·교류할 수 있는 주제와 분야, 교류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정부를 통하여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 2) 정부는 여성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북 정보 제공, 남북교류 시 대북 창구 역할을 하며 북한주민 접촉승인, 방북승인, 사회문화협력사업자 및 사업승인,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	1) 대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성비정부기구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먼저 북한의 정치,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4)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구분	국제여성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단기	1) 전세계적으로 젠더이슈가 되고있는 여성의 빈곤문제나 여성가주구의 문제를 통해 이를 다루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여성 및 어린이지원사업과 연대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2) 연변의 부련회를 중심으로 조선족여성들과의 교류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UN 비정부기구의 소액신용(Microcredit)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	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 북한 내 활동하고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 (예: UNICEF)를 파악하여 이들이 북한정부의 당 간부와 각종 사회단체들과 연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남한여성비정부기구와의 교류채널을 확대시키도록 한다. 3) 한국여성비정부네트워크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최근에 비정부기구활동을 시작한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국가처럼 구조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이슈화 한 것처럼 북한의 상황도 이슈화 할 수 있도록 한다.

VI. 결 론

2000년 6월 15일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면을 보이고 있다. 즉 상호 교류협력과정에서의 여성들의 참여부족, 여성정책관련 의제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부족, 여성비정부기구를 비롯한 일반여성들의 참여의지 및 지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류 주체면에서도 남한은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들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북한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여성비정부기구와 대비될 수 있는 여성비정부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기구인 여맹을 상대로 한 여성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여성과의 교류는 여성자신들의 의지보다 북한정부의 의지를 반영해야 하는 점으로 인해 남북한 여성간 자유로운 교류·협력의 한계가 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여성의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삶의 태도와 의식은 여성자신들의 의지대로 교류·협력을 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여성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류·협력과정에서의 여성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북한에 대한 지식과 이해능력을 향상시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통일의 기본 입장과 통일방안 그리고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홍보, 북한여성들의 삶에 대한 지식 등의 정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며 남북한간 여성들의 삶의 영역에서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동질성 회복, 민족화합, 그리고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성들에게는 통일논의에 대한 범국민적인 합의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자유, 인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통일국가의 건설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또한 남한여성들을 위한 북한이해지식 향상노력과 마찬가지로 북한 여성들을 위한 남한사회와 여성에 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간의 삶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활용하거나 지식과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법 등이 구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직접적인 상호 교류에 앞서 간접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여성교류협력 활성화는 남북한 여성의 생활을 중심으로 삶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함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여성들간의 삶의 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여성비정부기구의 적극적인 합의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남북한 교류여건과 주체가 다른 상황을 고려하면서 여성비정부기구는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의 방법이 강구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식(2000),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대토론회』, 서울: 은거레평화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 강정구·정대화 외(1992), 『우리의 절반 북한 백분백답』, 서울: 사계절
- 게르다 체판스키 (1999), 『고요한 해방: 동독의 여성들』, 여성한국사회연구소 역, 한국신학연구소
- 권영호(1999),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사회단체 및 대학연구소의 역할”, 통일문제연구협의회(편집), pp 71~88
- 김경량(1999), 『독일통일과 동서독 자치단체간의 역할 및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강원도: 강원개발연구원.
- 김귀옥 외 (2000),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 당대
- 김대중(1995),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 김선옥(1992a),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92b), “남북교류의 활성화 방안”, 『여성연구』, 제10권 제3호,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92c), “남북여성교류에 있어서의 여성단체 역할과 문제”, 『남북 교류·협력의 실천과제 연구』, 서울: 통일원.
- 김영희·장영아(2000), 『통일대비 여성관련 법제연구』, 서울: 한국여성

개발원.

김원홍(1992),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평화문제연구소.

_____ (1998),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편),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쟁점과 대책』, 서울: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pp.1~22.

김재인·유희정·양애경(1999),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서
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김학성 (1996),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김현숙(1997), “북한여성정책의 변화”, 숙명여대통일논총, pp.123~158

내외통신사(1998), 『내외통신』, 서울: 내외통신사.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_____ (2000a), 『여성단체현황』

_____ (2000b), 『Beijing+5 UN 특별총회 NGO 보고
회』자료

동북아평화연구회(1999), 『대북포용정책』, 서울: 밀레니엄북스.

베르너 바이덴펠트·칼-루돌프 코르테 (1998), 『독일통일백서』, 임종헌
신현기. 백경학 배정한 최필준 역, 한겨레출판사

보건복지부 (1999), 여성단체 현황

북한연구소·북한학회(1999), 『북한학보』, 제24집, 서울: 북한 연구소·북

한학회.

북연회(1997), 『북한연구논평집 1972~1997』, 서울: 북연회.

북한문제연구소(2000), 『연합통신』, 서울: 북한문제연구소.

대한주부클럽연합회(1998a), 『21세기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의 자세』, 서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_____ (1998), 『여성들의 ‘통일’에 관한 의식조사』, 서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손봉숙·이경숙·이온죽·김애실(1991),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손봉숙(1998), “조선민주여성동맹연구”,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이종석 편집, 서울: 세종연구소.

안소니 기든스, 윤병철·박병래(역)(1992), 『사회이론의 주요쟁점』, 서울: 문예출판사.

연합뉴스(1999), 『연합뉴스 통일·북한』, 서울: 연합뉴스.

오유석 (2000), “통일사회에서 여성과 정치,” 사회학대회 발표문, 한국사회학회

온겨레평화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2000), 『남북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서울: 온겨레평화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윤미량(1991),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윤석인 (2000), “한국여성NGO의 민주성과 조직활동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숙(1991),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pp.265~291
- 이종석(편)(1998),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 이금순(2000), “남북여성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제 2회 여성평화통일포럼 토론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0,7.12)
- 임순희(2000), “남북한 여성의 삶의 모습-남북한 여성 삶에 대한 이해가 남북여성교류의 기본조건,” 한국여성단체협의회(편), 『여성』, 서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장공자 외(1997) , 『분단· 평화· 여성』, 서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연구회, pp.227~248
- 전복희(1997), “여성 자원봉사조직의 통일의식 고취방안”, 서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연구회(편집), pp. 238~241
-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도서출판 오름
- 정경환(1999), “통일문제연구 발전방향(민간단체의 역할문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협의회(편집), pp. 584~606
- 정영태(1999),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민간단체의 통일운동”, 통일문제연구협의회(편집)
- 정유진(1999), “북한 근로단체의 성격과 구성,” 북한조사연구 2(2):79-97, 통일정책연구소
- 제성호(1996),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_____ (1999),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방향”, 통일

문제연구협의회(편집).

_____ (2000), “남북교류협력의 법적문제에 관한 제고찰과 개선방안.”
정책연구 135:83-137,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조지 리처 (1987), 『현대사회학이론』, 최제현 역, 서울: 형설출판사.

최성철(1998), 『북한인권론』, 서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터너 J.H. (1992), 『사회학 이론의 구조』, 김진섭 외 역, 서울: 한길사.

통일교육원(2000), 『통일문제 이해』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세미나(1999), 『국민의 정부 대북 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통일문제연구협의회

통일부(1994),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_____ (1995), 『95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4)-남북교류·협력분야』, 서
울: 집문당.

_____ (1999),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대북 정책과 남북현안에 대
한 입장』

_____ (2000a), 『통일백서』

_____ (2000b), 『독일통일백서('99)』

_____ (2000c), 『북한개요』

_____ (2000d),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 109호, 통일
부 교류협력국

통일원(1992), 「남북교류 협력의 실천과제 연구」, 서울: 통일원.

_____ (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_____ (1995),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서울: 통일원.

평화문제연구소(1996), 「통일문제연구」, 제8권 1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p.96~113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1998),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_____ (2000a), 「남북정상회담 여성,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_____ (2000b),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평화통일과 여성의 과제」, 서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1992), 「여성연구 제10권 제13호 1992년 가을호」,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pp. 172~194

허정무(1993), 「교원의 정년퇴직준비과정과 퇴직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1991), 「アジアの平和と女性の役割」, 報告集.

Homans, George C. (1950), *The Human Group*,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_____ and David M. Schneider(1955), *Marriage Authority and Final Causes: A Study of Unilateral Cross-Cousin*

Marriage, New York: Free Press.

_____ (1974),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Howel, Jude (1995), "Prospects for NGOs in China," *Development in Practice* 5(1):151

Richard M. Emerson(1976), "Social Exchange Theory," *Annual Review At Sociology* 2, Palo Altoc Annual Reviews, Inc.

Ehrhart Neubert, *Geschichte der Opposition in der DDR 1949~1989*,
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Gisela Helwig, Hildegard Maria Nickel (Hrsg.), *Frauen in Deutschland 1945~1992*. 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Herausgegeben von Wolfgang Hardtwig und Heinrich August Winkler(1994), *Deutsche Entfremdung Aum Gefinden in Ost und West Verlag*, C.H. Beck Munchen

Werner Weidenfeld, Karl-Rudolf Korte (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 Sonderaufgabe fur de die La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sarbeit Berlin

<http://www.unikorea.go.kr>

<http://www.pcwa.go.kr>

<http://community.kongju.ac.kr/~sunny/Socil109.htm>

부 록

1. 조선노동당 외곽단체
2. 성사되지 못한 남북여성교류제의 현황
3. 선행연구의 남북여성교류협력방안
4. 한독워크숍
5. 한중워크숍
6. 남한여성비정부기구관련자, 귀순여성
및 국내거주 연변조선족여성 워크숍
7. 현대 중국을 이끄는 각계 여성지도자
8. 남북여성교류협력관련 자문 전문가 명단
9.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10. 전문가 설문지
11. 교류협력 제 양식

1. 조선로동당 외곽단체

정치	조선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조선통일민주주의 전선(조국전선) 의장 박성철 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위원장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 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북측본부 의장	조국통일범민족청년 학생연합북측본부 의장 김인호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김영대	조선평화옹호전국 민족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서기국장 강태부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류미영	남조선의 비전향장기 수구원대책조선위원회	남조선의국가보안법 철폐를위한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대외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조선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대리 문제철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조선외교협회 회장	조선.아시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김국훈
	일제의 조선강점 피해조사위원회 위원장 리무호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리성호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반핵평화를위한조선 피폭자협회 회장 주성운	아시아여성들과관련 대하는조선여성협회 회장 리청희
	조선유네스코민족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네스코민족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개발계획 민족조정위원회 서기장 리태균	유엔기금조선 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인종격리제도 반대조선위원회 위원장
사회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1비서 리일환	조선직업총동맹 (직총) 중앙위원회 위원장 립순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위원장 송상섭	조선민주녀성동맹 (여맹) 위원장 천연옥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서동범	조선자연보호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일선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함학선	조선중앙변호사협회 위원장 리동석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국권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용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정운업	조선아시아무역 촉진위원회 위원장 리성록	조선국제합영촉진위원회 위원장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김몽문
종교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그리스도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장재언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양형섭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장 철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창덕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용상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김광우
학술 체육	조선력사협회 회장 전영율	조선김정일화련맹 위원장 장 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황봉영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회장 박명철

2. 성사되지 못한 남북여성교류 제의현황

제안자/기관	대상자/기관	목적	처리 일자
김경오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	김성애 (여맹위원장)	제27회 전국여성대회에 참가요청 및 남북한 여성단체 교류 제의	90.10.29
박금순 (한국부인회장)	김성애 (여맹위원장)	남북여성 토속음식 경진대회(평양,91. 2) 개최를 위한 방문초청장 입수 및 공예품 전시회 개최문제 협의제의	91. 1.15
오정순 (대한미용사회 회장)	김성애 (여맹위원장) 원동구 (조선민주직업 총연맹위원장)	아시아 미용경연대회(서울, 91.11.5)에 북한 미용인 참가 및 제24회 ‘월드 참피온쉽 미용대회’(동경, 92.10)에 남북한 미용단일팀 출전제의	91. 5.23
김경오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	김성애 (여맹위원장)	1차 교류제의(제 27회전국여성대회)와 관련, 91년 제 28회 전국여성대회 참여촉구 및 남한여성 북한초청 제의	91. 8.14
최경자 (국제패션디자이너 이사장)		남북 실생활 의류전시회 개최 제의	91. 8.21
오부자 (보라꽃꽃이회장)	백인준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중앙위 원회 위원장)	남북 꽃꽂이 교류전 제의	91. 8.23
윤영애 (한국교회여성연 합회 외 3인)	고기준 (조선기독교도 연맹 서기장)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창립 25주년기념 행사에 선교적 차원으로 평양 봉수교회 성가대 초청	91,10.25
김영자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총무 원장 외 1인)	장제철 (조선천주교인 협회장)	북한 장충성당에서의 미사봉안 및 수녀파견 협의	92. 9. 2
이계경 (여성신문사장)	북경주재북한 대사관 관계자	남북한 수공예품 교환 전시 제의	92. 5.12
김숙희 (YMCA 연합회장 직무대행)	고기준 (조선기독교도 연맹 서기장)	YMCA 70주년 행사에 북한기독교여성 초청	92. 1.23

제안자/기관	대상자/기관	목적	처리 일자
박금순 (한국부인회명예 회장 외 7인)	강점순 (여맹중앙위원회 서기장)	남북 토속음식 경진대회 개최 제의 (5월과 10월 두 차례 제의)	92. 6.18
오부자 (꽃꽂이학회장)	김성애 (여맹위원장)	남북한 여성꽃꽂이 교류 제의	92. 8.31 94.12(2차)
윤정옥 (정대협공동대표)	종태위	제3차 중군위안부아시아연대회의 초청	95. 1.14
윤문자 (통일희년교회 여성협의회)	고기준 (조선기독교도 연맹 서기장)	북한교회 여성초청 협의	95. 6.23
홍미화 (디자이너)	프랑스 주재 북한대표부 문화담당관	패션문화 북한에 소개	93. 7.28
최만자 (YMCA 연합회 실행위원)	고기준 (조선기독교도 연맹 서기장)	미래세계와 여성문화에 북한초청 관련협의	94. 5.25
이종경 (YMCA 연합회 사무총장)	고기준 (조선기독교도 연맹 서기장)	미래세계와 여성문화를 위한 모임 참석	94. 8.26
유소정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총원장 외 6인)	장제철 (조선천주교인 협회 회장)	장충성당 수녀파견 협의	95. 7.11
손봉숙 (한국여성 NGO위원회 공동대표)		제1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일본) 북한참석요청	96. 7.18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 합공동대표외3인)	김선옥, 홍선옥 (여맹중앙 위원회 위원)	국제여성평화 심포지움 초청	97. 4.29

3. 선행연구의 남북여성교류협력 방안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1998)의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는 남북 여성교류의 활성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통일은 정치현상의 표현이며, 통합은 국민적 일체감의 형성, 사회경제체도의 단일화, 문화적 동질화를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통합도 힘의 논리가 작용될 때는 침범이나 흡수의 성격이 될 것이므로 여성교류의 방향은 통합과정에서도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배제하고 상호주의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는 윤리적으로 선한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목표는 평화증진, 무력이나 폭력 감소, 긴장 완화, 신뢰구축-이는 윤리적으로 선한 여성교류가 남북교류의 주류가 되고, 남북화해와 평화로 정의로운 사회 통합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성교류의 과제로는 ①여성교류를 실천해갈 인력자원이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수집과 기획, 추진가능한 정치적 실무력 요청, 북측 여성과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연구가 필요하며 여성평화전문가들이 통일정책이나 교류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②여성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즉 여성단체간의 정보공유와 교류의 내용과 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야 한다. 여성단체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면서 자율적 조정장치를 함께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③여성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유도해내야 한다. 즉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여성부문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여성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합의서 제22조에 의하면,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 등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는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구설치와 실무적 문제들을 합의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공동위원회 내에 구성하거

나,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든지 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국제적 여성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즉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국제적 유연화가 필요하고, 국제여성단체들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으면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⑤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비전으로 “남북여성평화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야 한다. 즉 남북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고, 이산가족의 상봉과 그 이후의 문제, 민족과 여성, 국가와 여성 등 벽을 허물 수 있는 공동체를, 새로운 민족공동체 형성의 모형 실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한국여성단체연합(2000.5), 『남북정상회담: 여성,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정현백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성의 요구와 역할”)은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로는 ①한반도문제의 해결구도를 ‘북미축’에서 ‘남북축’으로 전환, ②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구조적 산물-북한은 극심한 식량난 극복 상태, 체제 안정상태,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환으로 자연스레 복귀하는 계기를 제공, ③적대적 공생관계에서, 상호 협력적 공생관계로 전환-상호간의 차이 인정, 북한 지원국이 한국밖에 없다는 것 인식,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조건이 성숙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원칙과 방향으로는 ①포괄적인 의제선정과 신중한 접근의 조화, ②자주적 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정신의 구현, ③비등가성, 비동시성의 원칙, ④평화주의 원칙의 실현을 들고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여성들의 요구’를 보면, 통일정책과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평화체제 구축이나 통일은 여성의 일상적 삶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㉞정부 대표단 구성이나 실무에의 여성참여 증가시키기외) ㉟여성교류에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여성의 주도적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①여성참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미흡, ②통일문제의 중요성과 여성의 능동적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들에게 부족, ③유교적 전통과 분단현실에 의해 강화된 가부장적 사회분위기는 통일정책분야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여성운동의 과제와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정상회담에 힘을 실어주기가 필요하다. ②남과 북의 주도하에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정에서 외세 힘의 가능성을 여성운동 등 시민사회운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③통일운동단체들의 포괄적인 의제로 접근하도록 여론이 움직여가야 한다. ④성 평등한 통일의 실현이 통일운동과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⑤언론의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보도와 여성단체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⑥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통일의식이 확산되고 평화통일운동의 지원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⑦여성단체들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남북대화과 마찬가지로 남남대화가 필요하듯이 남북정상회담과 평화공존체제의 구축을 위해 여성들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000.7)의 『남북여성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김귀옥은 ‘남북여성의 사회문화공동체 수립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통일된 사회문화공동체 수립을 위한 여성의 노력으로 ①남북공동선언 체제가 불가역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흡수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 1) 정현백(2000),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성의 요구와 역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한국여성단체연합, “『남북정상회담: 여성,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 관련 위원회의 여성 비율>

구분	계(전체인원)	여성(명)	비율(%)
통일교문회의	27	6	22
정책자문회의	48	4	8.3
통일정책평가회의	15	0	0
민주평통자문회의	13340	1998	14.9

배제하는 일이다. ③공동관심사로 남북 여성들의 사회심리적 통합, 민족일체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④반공이데올로기보다 함께 하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고해야 한다. ⑥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시민단체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가 공존하는 사회문화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000.7)의 「남북여성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김윤옥은 다음과 같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여성교류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우선적으로 “남북여성교류의 문제”는 ①남북한 대결구도로 인한 제한된 교류로 순수한 민간교류가 다원화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어려웠다. ②남북여성교류는 특정 소수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남한은 재야여성운동가들이었고, 북한은 정부와 가까운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북한사회에서 사회단체는 노동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한과 같은 의미의 민간단체와는 다르다. 그리고 교류 일정이 행사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성과가 일반여성들에게 과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반여성들과의 접촉이나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의 삶을 느끼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또한 ③국제행사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침체화할 위험성이 적었으며 상호자제가 가능하였으나 토론회 시 논쟁의 가능성이 늘 남아있었고 개념, 여성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에서 남북 여성의 인식차이가 토론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다. ④학술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동일한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제가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서의 남북여성교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에 대한 제언으로는 ①통일관련 회의 및 회담에의 여성참여 최소한 30%까지 해야 한다. ②통일부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③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여성들의 대북

지원에 주어져야 한다. ④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한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및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에 여성참여가 절실하다. ⑤여성단체 및 여성연구소에 북한여성 및 통일관련 활동과 연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⑥정부는 통일(평화)교육을 공교육으로 확대해야 하며, 여성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의 통일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성단체의 과제로는 ①지속적으로 만나야 할 과제로 정신대대책협의회회의 ‘2000년 성노예국제법정(2000.12.7~1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5차 토론회 준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여성교류 의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북한 여성 및 아동 지원운동을 병행하여 확산해야 한다. ④여성들이 통일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다양하고 전문화된 통일,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⑤각 부문의 단체와 지역단체들이 특성에 맞게 북의 여성관련 단체 및 지역단체와 교류협력사업을 펼쳐야 한다. ⑥여성단체간 연대 및 정보교류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⑦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김선옥 (1992)의 “남북여성교류에 있어서의 여성단체의 역할과 문제-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모색,” 『남북교류협력의 실천과제 연구』를 보면, 남북한 여성교류의 필요성으로 민족적 공감대 형성, 상호신뢰 구축,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과 복지의 보장으로 들고 있다. 남북한 여성교류의 현황과 성과로서 북한의 경우, 북한사회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인적 교류의 진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각 분야에서 어떠한 교류라도 북한이 응하는 교류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신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북한이 선호하는 대상, 주제, 행사 등을 추진해야 교류의 물꼬를 트는 적극성이 요구된다. 남한의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는 통일정책은 국가정책이라는 인식 하에 남한내부의 정치문제나 반정부운동의 목적으로 연계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그 동안 여러 정부가 통일문제를 정권유지차원에서 이용했던 것과 같은 과오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교류 및 통일준비를 위한 여성단체의 과제로서 남북기본 합의서의 기본정신과 그 내용에 대한 홍보, 양국정부의 행위를 감독, 이행의 모니터 및 공개하면서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 상호 경험 나누기 프로그램,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 공개적인 평가모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과제로는 ①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외에 민간위원이 포함되거나 민간중심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②교류준비를 위한 연구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평화통일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③여성계가 다양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성의 대표성을 찾지 말고 각 단체가 각기 고유의 특성을 갖고 교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 ④교류가 함께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여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단체의 가능한 전략적 접근방법으로는 ①관련 여성단체 및 기관간의 자료 및 정보교환(부속합의서 제9조 1항)이 필요하다. 그 예로는 여맹의 「조선녀성」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민주여성」등이 상호교환을 할 수 있다. ②제3국에서의 공동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1조에 근거하여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의 교류협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④전통문화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남북토속음식경진대회, 한복문화의 교류, 민속명절날 전통놀이의 공동실시, 전통음식의 교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⑤종교단체의 접촉 및 교류, ⑥여대생 교류, ⑦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단체 중심의 자매결연, ⑧이산가족재회와 재결합의 적극적 지원 및 참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통일준비과제는 공동의 학술문화행사 및 공동연구와 법·제도 통합과정에 여성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여성계의 의사형성 및 각 분야를 통합준비기구에의 공동참여 준비가 되어야 한다.

▶ 김원홍 (1996)의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평화문제연구소(편), 『통일문제연구』 제8권 1호)을 보면, 남북한 여성교류의 한계로서 ①남북한 정치대결구조에 ②북한의 여성교류 제의나 성사되는 과정이 전적으로 당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북한의 상황 ③북한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현실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었다.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으로는 ①개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의 함양, ②남한의 성숙된 통일역량의 확보, ③통일국가를 대비하여 시민들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확대, ④여성의 교류증진과 통일 이후 바람직한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한 공직부분으로 공무원과 정치인에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한 할당제의 도입과 여성교류기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①여성 지원계획 수립, ②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③정부의 각 교류협력기구 및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보장, ④여성교류의 민간화 활성화 및 재정지원, ⑤북한여성관련 연구지원, ⑥평화건물로 여성공동의 장과 어린이집 설치, ⑦국제기구나 북방정책을 통한 여성교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단체 및 여성계의 노력으로는 ①여성단체간의 워크숍과 여성단체의 회원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②여성교류협력센터 설치, ③여성단체 및 여성계의 남북 여성교류 제의 및 교류 활성화를 들고 있다. 또한 여성교류는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주제’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일제의 전후 보상문제, 요리대회, 미용보고 대회, 여성의 건강문제, 농촌총각문제, 가정생활, 결혼풍습 등을 들었다.

‘통일여성정책을 바람직하게 하는 기본적인 방향설정’으로는 ①여성의 경제활동과 모성보호 조치 및 보육시설 문제, ②교육체제의 개선방향과 여성의 참여 문제, ③여성의 정치참여 문제, ④자녀교육 문제, ⑤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철폐방법 등, ⑥남북여성교류위원회 설치를 들고 있으며, ‘여성간 인적 교류’로는 ①이산가족 노인여성들의 이산가족 재회, ②남북한 여성의식조사, ③여성관련 연구자 및 여학생의 상호 방문, ④지방

자치단체간 여성단체 중심의 자매결연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교류접근 방법 및 태도로서는 제3국 통한 접촉과 국제기구를 통한 만남을 들고 있다.

▶ 정현백·윤덕희·이금순·김귀옥·강남식 (1999)의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에서 “남북한 여성교류와 남한측 참석자의 태도에 대한 분석”을 보면, 남북여성교류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①남북한 양 정부의 대결구도에 따른 제한된 교류로서, 양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변수가 많았고, 순수한 민간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②기존 남북여성교류는 특정 소수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한은 재야 민간여성운동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북한은 정부측 여성들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③남북한 이외에 일본 등이 참여한 국제행사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첨예화될 위험성이 적었으며 상호자제가 가능하였으나, 토론회 시 논쟁의 가능성이 늘 남아있다. ④북한은 남한대표의 북측 초청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남측의 북한대표 초청 수용은 매우 꺼려하여 왔다. ⑤학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동일한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있다.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부분을 보면, ①남북교류관련 국가기구에 여성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정부는 정책적으로 북한여성관련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③남북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교류창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교류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④기존의 교류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간 순수학술 분야 교류가 비교적 성사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 분야 여성학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⑤여성단체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방식의 대북 지원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는 ①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한 여성계의 인식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교류의 방식을 다양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교류를 통해 단기간에 공동의식을 구축하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④ 남북한 여성들간의 접촉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현 상황에서 이러한 통일논의가 북한측에 대한 체제 위협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⑤남북한 여성들만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여성운동 활동기구들이나 제3국 여성들을 매개로 한 남북한 여성들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국제구호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북한여성 및 어린이의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우리 여성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⑦전반적인 교포여성들과 남북한 여성들이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⑧남북여성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북한측이 보여준 기존의 태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측이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포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한 ⑨ 여성들이 주체가 되고 북한여성과 교류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북한여성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는 안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현실을 감안하여 경제교류에 대한 요구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통일의식과 통일관련 사업에 관한 연구”부분은 여성통일운동이 극복해야 할 한계점으로 ①여성대중의 정치에 무관심하고 통일의식이 낮은 것이 극복되어야 한다. ②여성단체의 재정적, 인적자원이 너무 빈약하고 조직적인 허약성이 노출되고 있다. ③일회적인 캠페인 위주 혹은 북한의 비참한 실상 중심의 비디오 프로그램에서 탈피해야 한다. ④여성들간의 연대가 너무 약하다. 여성들간의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성적 접근 방식개발이 부족하다. ⑤가부장제적인 군사문화가 여전히 강함을 제시한다.

여성통일운동의 가능성을 보면, ①여성성은 화해와 평화의 가치에 더

적합하여, 여성들이 주도하는 통일운동은 폭력을 배제한 평화통일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②여성적 관점인 생명회복과 화해의 정신은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하고 평화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여성특유의 품어 안기와 관계 지향적인 성격이 분단 상처를 회복시키는데 유리하다. ③여성들은 수용적, 허용적인 성품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폭이 넓다. 이런 성품과 기질은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통일운동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④정치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화주의적인 이상과 결합된 통일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남북한 통일대비 여성의 역량강화 방안연구“부분에서 독일사례가남한에 주는 시사점으로 ①통일역량의 강화 ②남북한 여성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예상 ③만남과 대화의 중요성 ④통일과정에서 정책결정자로서의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⑤통일 후의 여성과 관련된 노동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본틀의 사전 마련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을 위한 남한여성의 역할과 문제점으로 남북한 여성교류 경험을 보면, ①남북한 대결구도에 따른 제한된 교류로서, 양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변수가 많았고, 순수한 민간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외교전략이 아직도 민간교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기존 남북여성교류는 특정 소수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남한은 재야 민간여성운동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북한은 정부측 여성들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③남북한 이외에 일본 등이 참여한 국제행사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첨예화될 위험성이 적었으며 상호자제가 가능하였으나, 토론회 시 논쟁의 가능성이 늘 남아 있다. ④북한은 남한대표의 북측 초청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남측의 북한대표 초청 수용은 매우 꺼려하여 왔다. ⑤학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동일한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⑥북한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현실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한계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폐쇄사회로 북한에 관한 정

보나 자료수집이 한정되어 있다.

여성단체들의 통일관련 사업실적과 의식은 ①여성들의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단체를 통해 여성들이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다. ②여성단체들이 통일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는 민족적 과제로서, 조심스럽게 남북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통일사업을 전개코자 한 것이다. ③여성단체들의 통일사업의 내용은 주로 민족애적인 차원에서 ‘북한 돕기’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④여성단체는 통일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내용을 남북체제의 차이보다 ‘남북한 여성들이 경험한 여성문제와 정책의 차이’를 꼽고 있다. 그리고 ⑤앞으로 통일사업을 하는 여성활동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여성주의적 관점의 통일교육, 남북한 여성현실과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여성실무자들간의 연대, 북한 바로 알기, 갈등과 관용훈련, 평화심성 개발 및 훈련’ 등으로 나타났다. ⑥여성단체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이 관철되는 통일사업을 통일과 함께 남녀평등사회 실현이 가능하도록 ‘우선적으로 여성적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진 통일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다. ⑦여성 독자적인 통일사업으로 ‘남북한 여성교류’와 ‘남북한 사회 및 여성현실 바로 알기’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⑧여성단체들의 통일사업에 있어서 남성(단체)들과 연대도 중요한데, 가능한 주제와 내용을 보면, 주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⑨여성단체들이 통일운동과 관련하여 극복해야 할 문제는 여성단체의 빈약한 재정적, 인적자원과 허약한 조직의 문제이다. 또한 여성들간의 연대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간의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성적 접근방식을 개발하여 여성들이 정치력을 높여가야 한다.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정립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①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확대는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여성의 시민의식 고취와 맥을 같이 하여야 한다. ②통일정책의 결정과정과 정부의 다양한 통일관련 활동에 여성이 정책결정자로서 실무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③여성들의 통일을 위한 활동은 평화, 인권, 더불어 사는 삶 등의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④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은 통일이후 남녀평등에 기초한 통일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후 여성관련 노동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틀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여성들은 단순히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통일이후 나타날 수 있는 사회갈등을 예측하고 이를 해소하는 작업을 미리 시작하여야 한다. ⑥주체와 관련하여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민간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정부는 민간분야의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조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여성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대중화전략이 중요하다.

여성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남한사회의 민주적 역량의 강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정부의 각 통일관련 기관과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보장, 통일부내에 여성관련 전담 부서의 신설, 통일과정 및 통일 후 각종 여성관련 문제들에 대비해 전문행정인력, 민간단체인력, 민간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계획 마련 및 지원, 통일교육과 시민교육, 탈북자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북한여성 관련 연구지원,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여성교류 지원, 여성들의 시민운동에의 참여 확대 등이 있다.

여성들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계와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은 여성들의 시민운동에의 참여 확대, 여성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국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통일운동의 활성화와 대중화, 탈북자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여성들의 통일 관련 활동 사이의 연대 형성, 여성교류협력센터 설치 등이다.

▶ 온겨레평화대행진행사준비위원회(2000)의 「남북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에서 이우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은 발전적 사회문

화교류의 방향에서 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즉 체제경쟁 혹은 체제홍보의 수단으로 취급한 경향이 강했고, 과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북한체제나 북한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교류대상의 북한 내 실태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문화교류의 방향으로 ①상대체제가 다름을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②개념을 확대하여 반드시 인적교류만이 교류가 아니라 작품, 지역소개 등만 가지고도 교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③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3·18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등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각종 보안관련 시행령 및 지침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북한사회문화를 접촉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²⁾

2) 이우영(2000),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온겨레평화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편), 『남북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남북고위급회담 협상과정에서 문화교류에 대한 남북의 주장>

구분	남한	북한	비고
보도매체 교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및출판물의 상호개방	자본주의 사회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방 반대	소극적
종교교류	종교분야의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종교인 등의 상호교류 실시	종교분야교류는 절대 반대	부정적
언론교류	언론출판분야등의 상호교류와 언론의 상호교류 및 자유취재 보장	언론을 명기할 필요 없으며, 민족구성원 전체의 자유교류가 실현되면 언론의 교류도 해결	부정적
체육교류	체육인 교류 및 국제경기 단일팀 참가	단일팀 구성 유보, 체육분야에서 기술협력, 접촉교류 및 공동행사 실시	비교적 소극적
예술단 교환	공동기념일 민속명절에 사회문화 예술단 상호 교환	교환시기를 명기하지 말고, 다각적 협력 추진으로	비교적 소극적
예술작품 유물의 교환전시	자료 및 경험 교환, 각자 보존하는 유물 예술작품 교환전시	민족유물 발굴 및 민족사회문화 계승사업 추진, 교환전시 진행	적극적
저작권 보호	상대측의 출판, 연극, 음악 미술 등 저작권 권리 보호	분야는 명시하지 않고 쌍방이 합의하여 저작물 권리 보호	소극적
자료교화 실설치	판문점에 자료교환실 설치	교환실이 아닌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필요한 기구를 협의	소극적
국제무대 협력대회 공동진출	국제행사 등에 공동진출, 해외동포에 공동으로 민족전통 소개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국제기구들에 서로 협력, 공동가입	적극적

자료: 박상천 외(1993),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pp.27~29.

이 외에도 교류의 체계화, 주제의 다양화, 교류협의체 구성, 사회현실에 적합한 교류추진,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욕구를 수용하는 교류추진 남북한 주민이 현 단계에서 수용 가능한 사회문화적 요소, 그리고 관심 있는 장르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호이해에 부합되는 교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4. 한독 워크숍 결과 : 동서독 화해·협력에서 여성 NGO의 역할

슈미트 국장(Gertraude Schmidt)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청

여러분을 환영하며 한국이 동서독 통일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동안의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정치적으로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문하신 곳은 연방정부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청”으로서 이곳은 가족부, 노인부, 여성부, 청소년부, 일반행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에는 6개에서 10개의 전문과정 분야와 담당전문가들이 있고 저는 여성부에서 남녀평등분야의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부에서는 부처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하며 그 중에서도 남성도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동양육 및 교육에 관한 것인데 이를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은 부 또는 모 한 사람이 3년간 얻을 수 있는데 동 기간동안에는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부와 모가 다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의 휴직사용 비율은 1.4%에 불과 합니다. 이에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관련 사업을 담당하며 특별히 ‘청소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NGO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부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사람이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부는 아시다시피 직원채용이나 급여지급 등 행정적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들은 특별히 기존의 법조항이 여성참여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검토하여 여성참여증진과 여성권리신장을 위한 법개정을 건의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기관이나 여성연구가와의 협동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회의나 미팅을 주관합니다. 또한 여성부의 중요한 역할은 여성과 직장/직업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서독의 여성 NGO가 동서독 화해·협력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자 합니다.

A) 저는 남녀평등분야에서 헌법의 기본원칙을 연구하고 있는데 서독의 여성 NGO활동보다는 동독인으로서 동독의 입장에서 동서독 화해 문제에 관해 해 드릴 말이 많습니다.

먼저 서독과 동독의 여성민간교류는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단계인 통일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 당시 동베를린과 동독에서는 교회 내 여성단체,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 변화·대화를 위한 여성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단체들은 내면적으로는 반정부적 세력들이었지만 외형적으로는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목적들을 표방한 여성단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여성단체로 ‘독일민주여성단체’(DFD)가 있었으며 이 여성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단장이라고도 합니다. DFD는 통일과정과 통일 된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Q) 단계별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A) 1단계로서 준비과정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제한적이었고 집중

적인 시기는 80년대 후반인 86년에서 87년입니다. 통일준비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사회주의와 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데모와 경찰들과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때 민주주의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들 단체에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성들의 역할과 참여가 컸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문제와 통일찬반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여성문제는 중요이슈가 되지 못하고 결국 이들 단체의 여성들의 참여와 활동이 단절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여성들이 단체내의 지도부가 남성들로만 구성되고 이들 지도부 남성들이 여성문제는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그 때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한 것에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이들 여성들은 다른 단체들에서 빠져 나온 여성들과 연합하여 여성 NGO를 결성하게 되었고 나중에 UFV라는 독립여성단체 (총여성단체)가 되었습니다. UFV는 다양한 여성단체의 연합체였는데 한 예로 이 단체의 임원 중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임원은 인민극장을 대여하여 14일만에 커다란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인민극장의 2000개 좌석 수가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UFV에의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양한 여성단체의 연합체로서 특성을 가진 이 UFV는 각 참가자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1000명이 참가하는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역할과 의미는 매우 컸지만 선거 이후에는 서로 분리되어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말하자면 89년 12월까지를 계기로 그 이후 역할과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 독립여성단체에 여성당원도 있었는데 여성당원들은 대중적인 기본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많은 단체들이 빠져 나옴으로써 현존하고 있지만 총여성단체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많은 여성 NGO들이 생겼는데 근래에 10주년을 맞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2년밖에 존재하지 못했던 단체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동독에서 폭력남편으로부터 도피처를 제공하

는 시설인 ‘여성의 집’ 건립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금까지 말씀해 주심으로 동독 여성단체의 역사적 기원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여성단체들의 자율성 정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독에서 통일 후 여성단체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일 후보다는 통일 이전의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며 이때 서독의 여성단체와 교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통일 후 정부프로그램으로 동독 내 여성단체에 막대한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액수는 몇백만 마르크에 달했었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율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성단체가 자치적으로 결성되었어도 외부적으로 그 성격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는 사회주의통치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기독교 행사를 표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많이 토론했다고 봅니다. 대개 교회를 중심으로 환경 및 평화주제를 가지고 여성신학자들이나 기독교여성단체들이 서로 공동행사를 주최하면서 정부에 대한 반대의견을 토론하였고 비밀리에 동독 내에서만 행해졌습니다.

기독교여성단체들은 외부적으로는 환경사업을 표명하면서 베를린에 있는 도서관을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혹은 여성단체를 통해 서독여성들과 많은 접촉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단체들과 접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청소년단체가 있었는데 이러한 청소년단체들간의 교류가 있었으며 동서독간의 방문과 교류는 주로 베를린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독의 여성단체나 환경단체들이 동독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관광이나 개인적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와서 함께 모여 의견교환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사람들이 올 때 동독사람들은 이들로부터 인쇄물이나 정보 등 각종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동독에서의 서독방문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항상 서독단체가 동독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독여성단체들이 동독을 방문할 때 신생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들 단체와의 접촉은 우선적으로 가정에 숙박하는 등 개인적인 루트를 통하였습니다. 모든 접촉과 모임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서독단체들은 동독시민들의 의식 및 조직화교육을 시켰습니다. 워크숍을 개최할 때 발표할 사람이 서독에서 와서 발표하고 가거나 저 자신은 조직화교육을 받았는데 이러한 교육은 사실 동독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독에서 강사들이 와서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 훈련시키고 서독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Q) 서독인의 동독방문은 비공식적으로라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했습니까?

A) 전반적으로 80년대 말에는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50회 생일이나 100회 생일 등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방문을 위한 기회마련의 길은 다양했고 열려 있었습니다.

Q)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만 서독인들이 많은 행사 건수를 만들면 동독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독이 얼마만큼 수용하였습니까?

A) 비교적 자유스러웠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78년부터 관광목적 방문이 자유롭게 가능했는데 대개는 학생단체간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는데 아침에 갔다가 0시까지의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Q)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과 어떻게 교류를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서독의 경험이 궁금하였는데 동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에서 여성단체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통일 이후 동서독 여성들이 평화협의체 구성을 했다고 말씀했는데 통일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A) 아까 말씀드린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는 통일이전에 있었는데 서독 여성들이 방문하는 단체들에서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공동협의체가 있었으며 비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Q) 동독단체의 여성들은 서독의 여성들이 어떠한 것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까?

A) 무엇보다 상황을 알아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보획득수단으로 각종 인쇄물이나 자료를 우선적으로 원했으며 접촉자체를 통한 토론을 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회의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회의 때 배포된 발표자료나 팜플렛을 서독여성 이 가져다주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쉬운것으로 들리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독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인쇄물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무책자나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밑수의 형식으로 동독으로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Q) 인쇄물이나 자료를 받으면 동독여성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확산했습니까?

A) 인쇄물 배포는 동독 내에서는 불법이므로 대개는 구식복사기를 통해서 복사하여 돌려보았습니다. 한 사람 당 이틀정도 시간제한을 두어 책이나 자료를 본 후 페이퍼로 제출하여 돌려봄으로써 정보접촉을 확산시켰습니다. 물론 복사자체도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공식적

으로 할 수 있는 등록 단체는 정부기관 여성단체인 DFD였는데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며 손님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Q) 등록된 여성단체는 하나만 있었습니까?

A) 독일에서 등록에 대한 개념은 한국과 다른데 등록된 것은 잘 모르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가한 단체는 DFD 하나뿐입니다. DFD는 임원들의 회비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면 행사개최 행사비용 같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Q)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을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남북통일을 위해 한국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는 것으로 질문을 이해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서로간의 정보교환이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입니다. 이는 쌍방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생각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통일 후에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서독여성과 동독여성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게 서로에 대해 실망을 했습니다. 즉 서독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를 보면 서독여성들에게는 직업, 탁아, 성적 자유를 주요 사업과제로 삼았던 반면 동독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슈들은 이미 실천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독여성의 경우는 여성차별에 대한 논의가 없는 반면 서독은 그렇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요구가 다른 차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호간의 대화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말하자면 동독에서는 여성해방이 이루어졌고 차별주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독이 공식적으로 남녀평등을 달성하였다고 했지만 사실상 당 지도층에서는 거의 여성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서독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수 층에서는 여성비율은 5%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여성차별은 동서독 여성들의 동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Q)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이 단체는 인가된 것이었습니까?

A)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는 사실상 두 단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독교 여성단체로 이는 인가된 단체가 아니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제여성단체에서 동독을 대표하는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Q) 국제여성단체와 서독의 여성단체가 교류를 시도할 경우 동독의 지원정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국제여성단체들과의 교류는 서독과 동독의 직접적인 교류보다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주변국 관계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국제적인 교류는 정식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한 공식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독정부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독 내에서 서독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많았지만 교류의 한계가 있었으며 국제적인 교류라 하더라도 DFD 같은 정부기관여성단체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동서독여성단체간 접근은 가능했지만 (예를 들면 체코 같은 제 3국에서의 만남) 이를 위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Q) 국제회의의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A) 저는 교류에 참가한 적이 없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중심적인 주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직업, 탁아, 또는 생활필수품조달 같은 현실적 문제를 많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있었는데 여성분야는 어떠했습니까?

A) 서독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개가 있었고 자체적으로 상호 교류가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독은 하나의 중앙체

체였기 때문에 공식적 여성단체 외에는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Q) 서독정부에서 NGO가 동독에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가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그렇습니다. 서독정부는 통일이전과 통일과정에 가급적으로 많은 NGO를 지원하였고 특히 서독 NGO가 동독의 단체 및 여성을 접촉하는데서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Q) 그러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A) 시사적인 것만 있습니다. 관련 책자가 하나 있는데 이 책자는 마지막 동독정부의 여성평등에 관한 것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Q) 서독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독 내에서 여성단체들간의 자체네트워크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A) 통일이전 서독정부가 동독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구체적 방법은 책, 인쇄물의 형태, 여행경비 (서독여성단체가 동독으로 갈 수 있는 여행경비), 그리고 과일바구니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선물하고 오는 형태들이었습니다. 동독의 여성단체들은 통일이전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통일이후에 형성되었습니다. 통일 후 서독정부는 이러한 여성단체네트워크에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을 받은 경우는 동독여성단체 세 기관과 서독여성단체 두 기관이 함께 공동행사를 할 때이며 행사의 주제는 여성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Q)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서독 여성 직업문제를 언급하셨는데 통일이전 동독에 계실 때 여성의 교류협력 중에 동독여성의 직업기술교육 및 지원을 위한 교류가 있었습니까?

A) 없었습니다.

Q) 비공식적으로도 없었습니까?

A) 저 개인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조직화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훈련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Q) 그럼 남성을 포함한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은 있었습니까?

A) 서독정부의 지원은 없었으며 개인이 받았던 것도 서독의 기독교단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직업기술교육은 동독 내에서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는 동독 내에서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Q) 통일 전 단계로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호교류의 활성화가 우리의 과제인데 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생각해 보며 여성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독 여성NGO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많은 접촉이며 통일을 대비하여 일종의 지원프로그램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지원프로그램의 주 역할은 북한 내에 민주적 구조를 건립할 수 있는 프로젝트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방안 연구에 대한 시사점>

연구진은 본 워킹샷을 통해 통일 이전 서독의 시각에서 여성교류협력 추진과정 및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자문자인 슈미트 국장이 구동독인이었기 때문에 동독의 관점에서 통일을 전후한 민간 및 여성교류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워킹샷에서 부각되었던 점은 서독과 동독의 민간교류는 단계별로 이루어졌고 특히 서독에서 동독 내 여성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정에서 교회와 도서관의 역할이었다. 또한 초기에는 관광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가족방문으로부터 나중에는 단체들의 방문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교류를 하게되었는데 동독여성들이 서독여성들로부터 원했던 도움들은 각종 정보관련 인쇄물 및 자료 그리고 접촉자체를 통한 토론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상호간 정보교환 및 접촉을 통한 대화와 만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을 볼 때 한국의 상황과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에게 대화와 만남을 위한 정보교환 및 접촉방법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에게 시사되는 점들을 다음과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서독과 동독여성들의 교류상황에서 자료 구입비 및 세미나 참석비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에게는 교류보다 지원의 성격을 띤 활동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때 북한여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 수집의 필요성과 동시에 북한여성들과 접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의 필요성이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개발원 및

여성관련 연구소들이 북한의 여성연구관련자들과 자료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여성국제학술회의가 다양한 이슈로 개최되는 것도 상호이해를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분단상황에서도 동서독 상호 방문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의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동독인들이 서독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나아가 서독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의 큰 수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호방문 및 접촉이 중요한바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지속적인 상호방문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서독이 동독과의 교류와 동독으로 하여금 서독을 이해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그리고 다각도로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여성들만의 교류협력 특성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서독의 전반적인 동독지원정책과 종교 및 환경단체들의 교류협력의 유형(세미나, 방문 등)은 여성교류협력의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독일의 이러한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남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단계적인 시도의 필요성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주민의 생존을 돕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다음으로 남북여성들의 공통관심을 찾아 상호접촉 및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여성들에게 익숙한 부분인 생활문화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북한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남한여성들이 북한 및 북한여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남녀평등관련 문제(평등의식 고양, 여성복지 등)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볼 때 서독의 경우처럼 남한의 환경 및 종교여성단체들과 기타 관련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며 이들 단체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갖고 개인적인 교류나 단체방문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 북한 내 민주적 구조 확립 프로젝트와 같은 지원프로그램 계획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남한의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구심점을 갖고 계획수립과 이를 위한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한·중 워크숍: 남북한 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림금숙 (연변대학 경제학부교수)

본 논문은 남북한 여성교류·협력현황을 분석한 기초 상에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현황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포착하였고 앞으로의 실천방향과 교류협력의 우선 영역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류협력의 실천과제와 우선 영역에 관한 분석은 현실적이며 다방면으로서 아주 잘 지적되었다고 본다. 연변은 북한과 특정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또 장시간 동일한 체제 속에서 걸어왔으므로 북한을 이해하고 오늘의 현실을 연구하는 면에서 우리로서의 우세가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학자들의 요구를 만족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필자는 아는 것만큼 말하는 원칙 하에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하여 간단한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가능성

남북정상회담이전 한국여성계의 적극적인 노력 하에 90년대 남북여성들은 도합 9차의 교류를 성사시켰다. 한국여성계에서 도합 31건의 교류건의를 제의하였으나 성사 수는 겨우 9건에 불과하고 22건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것도 대부분은 중국, 일본 등 제3국가와 함께 하는 세미나 등에서의 참석을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그 주요한 원인은 남북이 여전히 대립관계에 처해있는 탓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사회가 남한사회에 대한 태도는 급진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남북여성들의 교류협력에 가장 큰 정치환경을 조성하여 남북여성들의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을 것이다.

사회정치체제와 의식형태를 떠나 여성들은 또 여성들로서의 특유한 공동언어가 있다. 근 반세기의 분단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모성으로서 자식들이 군대에 나가는 아픔을 남성들보다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며 아울러 남북통일을 더욱 갈망하고 있다.

북한사회는 비록 붕괴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지만 90년대 이후의 경제난 속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외부세계의 변화를 다소 알고 있으며, 특히는 변경지역주민들의 중국친척방문과 95년도 특대수재 이후 중국 조선족 친척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혹은 비밀리 도강하여 다녀간 주민들을 통하여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변화 특히는 경제상 부유해진 사실을 알고 있으며 중국의 친척들을 통하여 한국에 대하여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2) 교류협력의 단계

북한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지만 노동당의 정책상 대내 개혁의 조짐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사람들의 관념의 변화가 크게 알리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의 경험으로 보아 사람들의 관념의 변화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 때문에 여성계의 교류 역시 초기단계, 중기단계 등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초기단계에서는 본문에서 지적한 바 같이 비정치적이면서 남북한 여성들이 공동으로 관심 하는 분야, 즉 여성들의 보건, 육아 등 영역과 문화교류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기단계에 진입하면 북한의 시장경제체제의 서서히 도입과 더불어 북한여성들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도록 자금, 기술, 관리 등 면에서 도와주고 서로간 유관 전문인원들을 파견하는 동시에 학술영역에서도 진일보 심층적인 교류를 진행하여야 한다.

북한은 중국보다 나라가 작고 현재 북한이 처한 국제환경도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처한 국제환경과는 비할 수 없이 변화하였고 북한이 가장 쉽게 접수 할 수 있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사례가 있으므로 당의 인식과 결심만 있다면 시장경제의 도입과 발전속도가 중국보다 매우 빠를 수 있다. 남북한 여성들의 교류와 협력의 폭과 속도는 북한사회의 변화 특히는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의 속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북한사

회의 대내의 변화를 떠난 단순한 교류는 표면에만 그칠 것이며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구체적 실천방법

북한사회에서 일체의 여성활동은 여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일정한 시일까지 여맹은 대내외 여성활동의 중심일 것이다. 때문에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NGO를 상대로 하겠다는 인식은 현실적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북한여성들과 교류협력을 진행하면서 여맹과 손잡고 중앙의 여맹을 통하여 기층의 여맹조직들과의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물론 학술교류는 직접 대학의 외사부문을 통하여 대학 내의 여러 분야의 여성교수들과 연계를 가질 수 있다. 허나 기업, 농촌, 의료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여성들과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로는 여맹조직이다. 여맹은 당의 령도하에 있는 대중성적인 조직으로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대외로는 NGO의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여성의 교류, 협력은 주로 남한사회를 상대로 한 것이야 하며 북한사회는 여맹을 실질상의 NGO로 상대하여야 한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이 남한정부를 실질상 인정하고 있기에 비정부조직들에서도 정부의 유관 여성관련 기구와 손잡고 대외로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야 북한의 충분한 중시와 인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각종 NGO 조직들에서 저마 꿈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는 것도 각자의 적극성을 발휘하는 좋은 면이 있겠지만 정부차원에서 나서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더 한층 북한의 중시를 받을 것이다.

4) 남북한 여성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연변의 역할

수선 동일한 민족으로서 강 건너 북한여성들이 교류협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도와주고 실질적인 일들을 하고저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인 동시에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

라고 생각한다. 또한 연변사람들은 남과 북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장시간 동일한 체제 속에서 생활하여 왔으므로 그 누구보다 북한 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북한여성들에게 있어서 연변의 조선족들은 가장 쉽게 접수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정부차원을 제외하는 일반인들 사이 상호래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연변은 남북여성들이 한자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며 앞으로 상호 서로 래왕이 쉽게된다 하여도 관념상의 차이로 일정한 기간은 시장경제체제를 한걸음 앞서온 중국조선족들의 완충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변의 학술계를 통하여 남북 및 중국여성들의 문제를 토의하고 앞으로 다가올 북한여성계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하나의 이론적 작업으로 되어야 한다. 한국이화여대여성연구원은 작년부터 이러한 목적으로 연변대학성연구 중심과 손을 맞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동시에 연변의 부련회를 중심으로 각종 민간단체 레하면 여성의 전화, 심리상담, 여성기업인협회 등 여러조직들을 통하여 북한의 여맹조직과 연계를 짓고 각종 교류협력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연변은 남과 북 여성들의 교류협력의 중요한 유대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우리들의 개혁개방의 경험들을 북한여성들에게 적극 전수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남과 북 여성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의의 및 성과

남북간의 상호교류협력은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지속적인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공동의 명제인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접촉이 자유로운 연변 조선족이나 중국학자들과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 및 교류협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워크숍에서 여성분야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1) 중국인의 시각에서 본 북한 및 북한여성의 실상을 알게 됨으로써 남북한여성교류협력에 대한 제 3국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북한과 북한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남한의 시각과 문헌으로 바라보았던 것에서, 북한사람들을 직접 접촉한 연변 및 길림성 중국학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 실상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남북여성들간의 교류협력의 가능성, 교류협력의 단계, 교류협력을 위한 실천적 과제와 이의 실천방법, 그리고 고려해야할 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3) 연변대학 및 길림성대학 교수들을 통해 이들이 접촉한 북한 여성 간부 및 북한 여성학자들, 그리고 관련분야의 여성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간접적으로라도 이들과의 접촉 및 교류 가능성 여부와 이를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4) 연변대학 여성연구중심 연구소와 연변여성관련 자료 및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6. 남한 여성비정부기구 관련자, 귀순여성 및 국내거주 연변 여성 워크숍 결과

가. 남북여성교류·협력의 문제점

(1) 정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복잡하다. 같은 건으로 방북을 신청할 때 과정 및 절차의 중복성과 이로 인한 시간소비, 그리고 접촉시 신고서의 수시 작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활동이 불편하였다.

(2) 통일부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교체와 사업지원의 한계로 교류협력 성사의 어려움이 있다.

(3)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과 남한은 민간여성단체 중심인 반면 북한은 국가기구 중심인 데서 교류의 한계가 있다.

(4) 성사된 남북여성교류에 있어서도 남북한 여성간의 이질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국가 표기 순서의 민감성 (예: 남북한→북남한), 개념에 대한 시각의 차이 (예: 정조, 여성문제, 윤락행위, 식민지, 체제 등),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 북한측은 “민족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라고 전제하는 반면 남한측은 분단에 따른 이질감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분단상태에 따른 인식의 차이.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견해차이-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남녀평등지수와는 달리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봉건적임.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시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큰 아파트를 배정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여성을 주체적인 인간이 아닌 “꽃”으로 지칭함) 등은 대표적인 남북여성이질성을 나타낸다.

나. 남북여성의 교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영역

(1) 여성과 아동과 관련한 생활용품과 다양한 품목의 지원을 통하여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2) 경제영역을 통해 교류가 확산될 수 있다. 북한여성들에게 소자본

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여성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계획을 제의한다면 북한고위직 여성들과 교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3)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분야의 상호교류와 평화, 민속문화재, 전통문화, 아동보육, 건강 등의 다양한 이슈를 가진 학술회의 개최 및 참여로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교류분야가 확대될 수 있다.

다. 효율적인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1) 남한의 정부기구와 여성비정부기구간의 관계정립

①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원은 확실하므로 전반적인 서류제출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②통일부는 접촉승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과정들 즉 남북상호간의 연락이나 북한정부로부터 허락을 받는 문제 등에 대한 것도 도와주어야 한다.

③여성비정부기구에 대한 재정지원과 국제적으로도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며 여성비정부기구에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④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 및 통일문제를 다룰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⑤남북교류와 관련된 모든 공식 협의체에 여성을 적어도 50%씩 배려하도록 한다.

(2) 남한여성비정부기구들간의 관계정립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간의 창구일원화를 통해 사업선정과 구체적인 교류아이템을 실천하는데 정부의 지원 및 협력관계 폭을 넓히도록 한다.

(3) 북한의 전문가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여성접촉

①북한은 여성단체가 별도로 있기보다는 모든 조직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함으로 여성조직을 중심으로 한 여성교류는 제한적이다. 북한은 남녀가 함께 하는 의사회, 교사회 같은 전문가 모임이 있어서 이러한 모임과 우선 교류를 한 후 여성을 구별하여 만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②여성들과의 교류를 제의한다면 여성들의 생활에 근거를 두거나 주로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 탁아소, 유치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연변여성들과의 교류 및 지원

①북한을 왕래하는 연변주민들이 많을수록 북한여성들이 남한상황(정보, 물품 등)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며 남한여성들도 북한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변의 단체들이나 모임(연변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한인모임, 무역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여성들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야한다.

②연변사람들의 70%이상이 북한사람들과 친인척임으로 연변여성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북한측과 일정한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북한과 학술교류를 하고 있는 연변대학의 여성문제연구소를 통한 학술교류, 연변의 '여성불교연합회', 연변의 '여성경영인협회' 등과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③남한, 북한, 연변 3국 여성들이 함께 하는 소규모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연변과 북한이 함께 하는 행사가 있을 때 재정적 지원을 통한 행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류기회를 가질 수 있다.

7. 현대 북한을 이끄는 각계 여성지도자

(참조: 김귀옥, 2000)

이 름	출생년도	출생지	직 위	약 력
강관선		평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91년 1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중앙위원 · (現)1993년 11월 여맹중앙위 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국제관계대학 졸업 · 여성동맹 부위원장 · 1972년 12월 여맹중앙위 비서 · 1985년 9월 여맹중앙위 부위원장 · 199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강명옥 (姜明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문덕군 풍년협농 관리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년 함북도 봉산협동농장관리위원장 · 1972년 12월 제5기 대의원 · 1975년 1월 사리원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 · 1977년 12월 제6기 대의원 · 1982년 2월 제7기 대의원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노 력영웅 · 1987년 4월 김일성훈장 서훈 · 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375사리원) · 1998년 7월 제10기 대의원(342호 선거구)
강순희	1934년	함북 청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경공업성 부상 · (現)1984년 12월 당중앙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4년 11월 당 제3경제사업부장 · 198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8,9기 대의원 · 1987년 9월 당 경공업부 부부장
강점숙 (姜占淑)	19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76년 7월 여맹 중앙위 부위원장 · 1985년 3월 여맹 중앙위 서기장 · 1990년 2월 제9기 대의원선관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 1975년 5월 여맹 중앙위 비서 · 1979년 2월 여맹 대표단장으로 이라크/이란 등 순방 · 1980년 3월 '3·8국제부녀절'주양보고회서 '보고'(90년까지) · 1992년 8월 노부모방문단 교환 무산 관련 담화발표
고금순 (高金順)		평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90년 4월 제 9기 대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년 구성방직공장 천리마 작업 반장, 노력영웅 · 1962년 10월 제3기 대의원 · 1967년 11월 제4기 대의원 · 1972년 12월 제5기 대의원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 253 청년
권현숙 (權賢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 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 1998년 7월 제10기 대의원(제174호 선거구)

이름	출생년도	출생지	직위	약력
김금옥 (金金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74년 문덕군 입석협농관리위원장 · (現)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11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 1972년 12월 제5기 대의원 · 노력영웅 칭호 · 1977년 12월 제6기 대의원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 130 김홍
김경희	1946년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88년 1월 당중앙위원 · (現)199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10기 대의원 · (現)1997년 7월 당 경공업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 당 경공업부장 · 1971년 10월 여맹중앙위 집행부 임원 · 1975년 당 국제부 지도원 · 1976년 10월 당 국제부 부부장 · 1993년 12월 당 경제정책 검열부장
김분옥 (金粉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91년 8월 김정숙군 행정경제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12월 제5기 대의원 · 1977년 12월 제6기 대의원 · 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김성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612 대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4월 노력영웅 칭호
김성애	19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70년 11월 당중앙위원 · 1998년 4월 여성동맹 위원장 해임(천연옥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5년 11월 여성동맹 부위원장 · 1971년 10월 여성동맹 위원장 ·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9기 대의원 ·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 1994년 7월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김복신 (金福信)	1926년	신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72년 조선이라크친선협위원장 · (現)1983년 12월 당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 정위원 · (現)1984년 1월 부총리, 대외경제위 위원장 · (現)1988년 6월 경공업위 위원장 · (現)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 (現)1990년 5월 부총리, 경공업위원장, 피복가공기술협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학교 졸업 · 1957년 8월 제2기 대의원 · 1958년 9월 경공업성 부상 · 1960년 7월 당중앙위 경공업 부부장 · 1961년 5월 경공업위 부위원장 · 1966년 10월 평양시 지방산업 총국장 · 1971년 5월 방직공업상 · 1982년 1월 정무원 부총리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조선국제합영회사 이사장(겸) · 1991년 1월 연형묵총리 말레이시아 방문 수행 · 1992년 4월 김일성훈장 서훈 · 1992년 12월 정치국 후보위원 탈락 · 1994년 7월 9일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 1995년 2월 25일 오진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 1998년 9월 5일 부총리 탈락

이름	출생년도	출생지	직 위	약 력
김숙정 (金淑貞)			· (現)1985년 8월 경공업대학 학장	· 1988년 8월 남북학생회담 참관
김신숙	1948년	평남		· 모스크바대 졸업 · 김일성의 종매(從妹)·양형섭의 처 · 1985년 김일성대 교원 · 1964년 12우리 김일성대 부교수 · 1966년 9월 김일성대 사학부장, 박사 · 1970년 2월 김일성대 교수, 여맹 중앙 위원 · 1970년 7월 사회과학원 부원장 · 1985년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관장 · 1986년 7월 사망
김연순			· (現)예술영화촬영소 편집원	· 1992년 12월 인민예술가 칭호
김영숙			· (現)마동희대학(청진교원대)청년 동맹 위원장	
김영숙			· (現)로동당 자강도 위원회 비서, 농업과학자	
김영숙 (金永淑)				·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농 관리위원장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 황북도 농촌경리위 위원장 · 1996년 1월 황북도 농촌경리위 위원 장 경질
김영숙			· (現)1963년 평양의학대 의사, 배 구선수(국가대표급)	
김영옥 (金英玉)			· (現)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 (現)황남도 안악군 농촌경리위 위원장	· 1986년 11월 제 8기 대의원 · 314 월지 · 황남도 해주시 농촌경리위 위원장
김영옥			· (現)동흥대학 부문청년동맹 위원장	
김영희			· (現)태권도선수	· 1990년 국제대회 1위
김영희				·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김옥희	1967년	청진 포항	· (現)항공승무원(안내)	· 1991년 2월 방일 노동당대표단 안내
김옥희			· (現)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	· 1992년 12월 인민배우 칭호
김월선 (金月仙)			· (現)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 1977년 12월 제6기 대의원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 309 자성

이름	출생년도	출생지	직위	약력
김의숙 (金義淑)			· (現)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 268 창성
김정숙	1930년	평양 대동	· (現)198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 7~10기 대의원 · (現)1986년 6월 『민주조선』 책 임주필 · (現)1988년 3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 1964년 5월 사로청 부위원장 · 1965년 2월 조선학생위 부위원장 · 1971년 12월 직업총동맹 부위원장
김정화	1954년	평양	· (現)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	· 평양연극영화대 졸업 · 1979년 공훈배우 칭호 · 1988년 10월 인민배우 칭호 · 1991년 4월 일본방문 · 출연작<민족과 운명> <나의 행복> <이름없는 영웅들>
김종옥				· 1980년 적십자병원 안고 박사, 노력영웅
김후분 (金厚分)			· (現)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 360청단
김후손			· (現)천리마제강연기소 기사	
남순희 (南順姬)	1933년	함북 은성	· (現)1985년 5월 삼흥대학(평양교원 대학)학장 · (現)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7월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대표 · (現)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 위원장	· 198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 1991년 2월 방일 노동당 대표단원 · 1997년 5월 9일 스웨덴 국회대표단과 담화(만수대의사당)
려원구			· (現)1998년 2월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現)1998년 4월 조국전선 중앙위 위원장 · (現)1998년 7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 1989년 1월 교포사업총국 부국장 · 1989년 1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 1991년 2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류경애	1920년		· (現)조선예술영화촬영소 소속 배우	· 월북배우 · 1980년 김일성훈장 서훈 · 1985년 9월 인민배우칭호 및 국기훈장 제1급 서훈 · 1993년 4월 노력영웅 칭호 · 1995년 6월 다부작 극영화<민족과 운명>‘노동계급’편 출연 유공 · 김정일로부터 감사문 받음 · 출연작<민족과 운명>‘노동계급’편 출연, 다부작 극영화<내고향>(테비작)

이름	출생년도	출생지	직 위	약 력
류금선 (柳錦善)			· (現)조선·모리타니친선협위원장	· 1972년 제5기 대의원 · 1975년 보통교육부 부장
류춘옥 (柳春玉)			· (現)노력영웅 역포목장 지배인 · 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 1972년 12월 제5기 대의원,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 82대현 · 1992년 4월 이증노력영웅 칭호 · 1994년 전국농업대회서 토론
류미영	1921년		· (現)199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 9,10기 대의원 · 1993년 7월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 1994년 1월 조선총노동교회 주양지 도위원회 위원장 · 1997년 9월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 1990년 3월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 · 1993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리경숙			· (現)보천보경음악단 가수	· 1991년 9월 일본 공연 · 1992년 2월 공훈예술가 칭호
리경숙 (李敬淑)			· (現)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652 만월	· 1965년 9월 여맹 중앙위 상무위원 · 1968년 2월 여맹 중앙위 부위원장 · 1972년 12월 제5기 대의원 · 1976년 4월 순천계약공장 일꾼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리계산 (李桂山)		강원	· (現)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463백산 · 모계협동농장 고문관리위원장	· 1958년 1월 노력영웅 칭호 · 1962년 10월 제3기 대의원 · 1967년 11월 모계협동농장관리위원장 · 1972년 12월 제5기 대의원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리금녀 (李錦女)			· (現)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194 역전동	· 1967년 11월 벽동군 남중협동농장 관리위원장 · 1967년 12월 제4기 대의원 · 1972년 12월 제5기 대의원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리수월 (李秀月)				· 1975년 여맹 중앙위 비서 · 1976년 여맹 중앙위 부위원장 · 1980년 3월 '3·8국제부녀절'중앙보고 회서 보고 · 1980년 10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리상진			· 1985년 만수대의사당 부총장 등용	·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 졸업후 대외부문 다년간 종사

이름	출생년도	출생지	직위	약력
리선실	19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80년 10월 당 정치국 후보위원 · 198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7~10기 대의원 · 1991년 1월 한국민족민주전선 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금강학교 졸업 · 1979년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 1994년 7월 김일성국가장외위원회 위원
리순임 (李順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87년 5월 조선·카메룬친선의회그룹 위원장 · 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15동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년 12월 제6기 대의원 · 1981년 3월 평양산원 간호장, 영웅간호원 칭호 · 1982년 2월 제7기 대의원 · 1982년 4월 김일성훈장 서훈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리신자 (李信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92삼등 · 평양시 농촌경리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12월 평양시 형제산구역 협동농장 경영위원장, 제5기 대의원 · 1977년 12월 제6기 대의원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리은순 (李恩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년 통천군 장진수산협동조합 관리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제5기 대의원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 1988년 8월 노력영웅 칭호
리음전 (李吟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과일군 과수종합농장 일꾼 · 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325삼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12월 제5기 대의원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리정순 (李貞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용강군 애원고등중 교장, 노력영웅 · 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686용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리청일 (李清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87년 7월 강원도 행정경제위 부위원장 · 1988년 5월 조선·소련친선협 강원도 위원장 · 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448비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11월 황북도 인민위 부위원장, 당중앙위 후보위원 · 1972년 8월 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 제5기 대의원,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 1975년 2월 여맹 중앙위 비서 · 1990년 5월 일본 방문 · 1996년 5월 29일 강원도 친선대표단 인솔, 중국방문
림경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98년 9월 재정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8월 중앙은행 부총재
문수옥 (文秀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76년 개천백화점 지배인 · 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143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 1991년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모델

이름	출생년도	출생지	직 위	약 력
문예봉 (文藝峰)	1917년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 · 1946년 남조선영화동맹위원 · 1961년 5월 조통연합북측본부 중앙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년 남편(임신규)과 함께 월북 · 1952년 12월 공훈배우 칭호(<빨치산 처녀>주연), 국기훈장 3급 수훈 · 1982년 인민배우 칭호, 국기훈장 제1급 수훈 · 1989년 7월 임수경 양 단식현장 위문, 출연작<춘향전><은비녀><생명수>등
박성실 (朴成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삭주직물공장 지배인 · 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262 삭주 	
방애선 (方愛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90년 4월 제 9기 대의원, 214 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력영웅 · 1978년 6월 평북 운전군 운하협동농장관리위원장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평북도 농촌경리위 위원장
백설희 (白雪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80년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실장 · 1980년 10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 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286 성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년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박사, 새법씨개발(품종개발)로 노력영웅 칭호 · 1982년 2월 제7기 대의원 · 1986년 11월 제8기 대의원 · 1994년 7월 김일성국가장의위원회위원 · 1995년 2월 오진우국가장의위원회 위원
송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1980년 10월 당중앙위 검사위원회 위원 · 1990년 5월 덕천 수출피복공장 지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11월 당중앙위 검사위원회 위원 · 1995년 김일성훈장 수상
신진순	1931년	경기 이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11월 당중앙위후보위원 · 1971년 2월 문학장 · 1991년 1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북측본부 중앙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5년 작가(시인)

8. 남북여성교류협력 관련 자문 전문가 명단

고동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권수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경량	강원대 교수
김기택	통일부 정책기획과 사무관
김선옥	이화여대 교수
김숙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총장
김영탁	통일교육원 과장
김윤옥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
김해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
남인숙	대구 효성카톨릭대 교수
남인순	여성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백영옥	명지대 교수
송경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협력사무국장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양미강	정신대 대책 협의회 총무
엄종식	통일부 교류총괄과 과장
윤덕희	명지대 교수
윤영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윤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총장
이금순	통일연구원
이미경	국회의원
이온죽	서울대 교수
이우정	평화여성회 이사
이효재	전 이대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한명숙	국회의원
최영희	내일신문

9.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2000년 5월-6월)는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여성비정부기구의 개념 정의로부터 정부와의 연계성,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현황 및 문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및 실천방안,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담론을 중심으로 전문가 18인의³⁾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여성비정부기구의 개념정의와 정부와의 연계성

(1) 여성비정부기구(NGO)의 개념 정의

<표 IV-1> 여성비정부기구의 개념

구 분	응답자수
국가기구를 제외한 모든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포함하는 개념)	12
여성비정부기구에는 여성단체만 포함되어야 함	6
계	18

여성비정부기구의 개념은 “국가기구를 제외한 모든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67.0%)가 “여성비정부기구에는 여성단체만 포함되어야 한다”(33.0%)는 의견보다 3/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여성비정부기구는 국가기구를 제외한 모든 여성관련 단체 및 기구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중요한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NGO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의 이해에 따라 관련이나 정당의 권력

3) 조사대상자 명단은 <부록 2> 참조

에서 독립된 여성단체 및 전문기관들, 즉 성차별 극복 및 여성권익을 위한 여성단체, 시민운동단체를 위시하여 전문분야의 이익집단 및 연구기관들이 포함된다.” (이효재)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NGO의 개념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민간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NGO의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국가기구를 제외한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미경)

“여성 NGO는 여성(운동)단체이다. 또한 자율성, 독립성, 공익성이 전제된 것이다.” (윤정숙)

“NGO는 제3영역의 중요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활동영역과 비교하여 제3영역으로 시민사회는 자원성과 연합주의의 기본가치와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사적 비영리조직인 비정부단체라는 행위자를 지닌다.” (남인순)

“여성 NGO의 개념을 ‘정부기구를 제외한 모든 기구’로 정의하되, 북한과 교류할 때에는 정부인사를 개별 회원의 하나로 간주하여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김영탁)

(2)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여성비정부기구(NGO)와 정부의 관계

<표 IV-2> 여성비정부기구와 정부의 관계

구 분	응답자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 필요. 즉 통일정책의 기본원칙과 근거 하에서 정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활동 인정하고 다원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함.	15
정부와 민간여성단체를 이어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2
통일협의과정에서 여성들이 소외되어 왔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특별조치 필요	1
계	18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여성비정부기구와 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 필요하다”(83.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통일정책의 기본원칙과 근거 하에서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활동 인정하고 다원화하며, 민간단체는 자율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 외에 “정부와 민간여성단체를 이어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11.1%)와 “통일협의과정에서 여성들이 소외되어 왔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5.6%)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중요한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비정부기구는 일반 NGO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간 통일 연구에서 여성들이 소외되어 왔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류·협력에서도 여성NGO는 정부의 지원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여성교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남북교류기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현백)

“정부는 모든 형태의 교류를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예멘)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끼리의 합의만 가지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동실)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접촉이 폭넓게 진행되고 간간히 정부와의 협의를 이루어 가면 좋을 듯 하다. 사실은 각 조직의 성격상 정부와 모든 것을 협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시도하면 정부에서 이를 도와주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송경민)

“통일정책의 기본원칙과 근거 하에서 교류·협력의 내용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다양한 교류·협력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김선옥)

“대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먼저, 민간단체의 역할은 북한의 정치,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교류할 수 있는 주제와 분야, 교류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정부를 거쳐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 NGO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북 정보 제공, 남북교류 시 대북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경)

(3) 남북한 교류·협력시의 창구 일원화를 위한 방안

(가) 정부의 기능

<표 IV-3> 정부의 기능

구 분	응답자수
정부는 민간의 교류에 필요한 정확한 북한정보 확보, 제시하고 재정적 지원과 실무차원의 자문 실시	12
남북한 교류협력 시 창구일원화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고 간섭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함	3
방북이나 교류신청 시 허가가 아닌 심사나 신고로 전환되어야 함	2
남북교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끼리 공동 주최하는 방안 제안 필요	1
통일관련 끊임없는 정보제공과 함께 교육의 장 마련	1
여성전문가를 양성해서 협조와 조정 시도	1
교류협력 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적 절차에 관한 사항만 권장해야 함	1
계	21

* 복수의견

남북한 교류·협력시의 창구 일원화를 위한 정부의 기능을 보면, “정부는 민간의 교류에 필요한 정확한 북한정보 확보, 제시하고 재정적 지원과 실무차원의 자문 실시해야 한다”(57.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 다음은 “남북한 교류협력 시 창구일원화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고 간섭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14.3%)로 간섭이 아닌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북이나 교류신청 시 허가가 아닌 심사나 신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9.5%)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 외에도 정부는 기본원칙과 절차만 제시해야 하고, 유관기관간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전문가를 양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세하게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비정부기구의 창구일원화를 강제하기 보다, 정부는 필요한 정보제공과 함께 단체들간의 경쟁과 교류분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과 다양한 단체의 균형 있는 참여와 상호협력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이효재)

“정부는 교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실무차원의 도움을 주어야 하고, (창구 일원화를 통해) 여타의 간섭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정현백)

“북한주민 접촉승인, 방북승인, 사회문화협력사업자 및 사업승인,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엄종식)

“여성 NGO의 남북교류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측의 교류대상 단체(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류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윤정숙)

“정부는 북한의 속성상 질서 있는 대북 접촉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물론 교류·협력의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북 민간협력운동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성숙한 면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질서 있는 교류를 위해서 창구단일화를 희망한다고 생각하며, 비정부기구의 질서 있는 접촉 및 교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하고 힘을 실어주는

동업자적 협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기혁)

“꼭 창구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손봉숙)

“보다 열린 자세로, 개별단체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어떤 애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해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북 교류 경험이 있는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통일이 정부 혹은 민간의 단독 힘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낮은 차원의 아이디어들도 존중해서 살려갈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측에서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 싶다.” (송경민)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정부기구”의 일원화를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현실에 기초하여 북한에 남한과 교류하고자(선호)하는 분야나 방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NGO가 “남북교류” 신청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공동주최를 제안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미경)

(나) 여성비정부기구의 기능

<표 IV-4> 여성비정부기구의 기능

구 분	응답자수
여성단체의 대표성을 갖추고, 여성들간의 대화를 통해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합의된 의견을 내야 함	6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고, 단체별로 다양하게 접근을 시도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함	5
정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 실시	2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 교류분야를 발굴하되, 상대방의 요구를 존중토록 해야 함	2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의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	2
유사업무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과 공동으로 남북교류를 추진	1
북한여성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1
북한의 교류대상기구와의 만남이 필요하고, 남북 NGO의 합의에 따른 단계적, 지속적 교류 필요	1
계	20

* 복수의견

남북한 교류·협력시의 창구 일원화를 위한 여성비정부의 기능을 보면, “여성단체의 대표성을 갖추고, 여성들간의 대화를 통해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합의된 의견을 내야 한다”(30.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고, 단체별로 다양하게 접근을 시도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25.0%)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실현 가능한 교류분야를 발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정

부와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민들에게는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북한여성과의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류를 여성비정부기구끼리 합의하에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로서 북한여성이해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비정부기구는 북측 여성생활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사전준비와 교육이 앞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우선 존중하며, 이에 부응하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교류를 시작할 것이다.” (이효재)

“교류·협력을 둘러싼 여성단체들간의 의견도 다양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여성들간에 남·남대화를 진행하면서, 자발적인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합의된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 (정현백)

“우선 북측의 교류대상기구와의 만남이 필요하고, 남북 NGO의 합의에 따른 단계적, 지속적 교류가 필요하다. 남측여성 NGO들간의 단일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윤정숙)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북 사업이나 교류·협력의 문제에 있어서 마치 정부와 경쟁상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산통이 깨질 것이며, 이것이 북한이 희망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다. 따라서 반민주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과거 정권에서처럼 반정부적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취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동업자적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동업자가 잘되면 그 파트너도 잘 되지 않을까?” (김기혁)

“우리의 현실에서는 비정부기구의 일원화는 매우 어렵다. 다만, 유사업무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과 공동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경)

(4)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우선 영역

<표 IV-5>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우선 영역

구 분	응답자수
경제적 교류가 우선임 경제협력 -> 문화교류(종교교류) -> 정치적 통합	9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사업 및 문화교류 사회·문화교류 -> 경제교류 -> 부문별·분야별 교류	8
비정치적 분야는 모두 가능하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직접 관련된 분야를 우선 시 하되, 무리해서 한쪽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아야 함	4
초기에는 여성의 보건(한방의료 중 여성질환 등), 육아 등 중요하고 비정치적이며, 남북한 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관심 분야부터 추진	3
공동관심사인 정신대, 전쟁배상 등 공동 대응	2
남북의 가부장적 문화와 해결책 등에 대한 조사 및 토론	1
남한의 여성기업인들이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 (북한의 우수한 여성인력 활용)	1
남북한 서로 알기 위한 학술적 교류, 학자간의 교류	1
계	29

* 복수의견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우선 영역은 “경제적 교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 문화교류(종교교류) -> 정치적 통합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31.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사업 및 문화교류를 우선으로 해야 하며, 다음이 경제교류 -> 부문별·분야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27.6%)는 의견의 순이다.

다음은 “비정치적 분야는 모두 가능하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직접 관련된 분야를 우선 시 하되, 무리해서 한쪽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13.8%), “초기에는 여성의 보건(한방의료 중 여성질환 등), 육아 등 중요하고 비정치적이며, 남북한 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관심 분야부터 추진한다”(10.3%)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남북한의 공동관심사인 정신대, 전쟁배상 등의 문제해결, 학술과 학자의 교류, 가부장제 문화와 해결책 논의 등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측의 경제적 후진성과 생활물자의 결핍으로 그들은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성단체들은 그들의 생활에 긴급히 요구되는 물자와 생활수단을 도움으로서 교류의 기반을 쌓아가도록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분야는 전통문화분야와 식민지하의 여성피해 및 민족문제에 관련된 과제를 중심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각 분야에서 집단적 만남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효재)

“북측은 일반 여성대중에게 교류를 개방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북한 내 엘리트 여성집단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학술적 접근이 나올 수도 있다. 우선 「남·북한 서로 알기」를 위해 학자간의 교류가 바람직하다. 북한이 우선적인 교류를 원하는 분야는 정신대, 전쟁배상 등의 문제이다.” (정현백)

“사회·문화의 영역에서의 교류가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서로 많이 알고 신뢰감 형성에 필요수적인 전제이고 이후 경제, 정치적 분야의 교류로 확대해야 한다.” (윤정숙)

“경제협력, 종교협력, 문화교류, 마지막 단계에서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고동실)

“남측은 전문성, 조직·인원·재정 등 감당할만한 능력 있는 사안 관련자료 교환, 제3국 교류, 남북왕래 등 쉽고 작은 일부터 민간차원에 맞는 정치성 배제 행사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문화교류를

하면서도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엄종식)

“북한문제에 대한 분석과 탈북 주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제가 판단한 북한의 여성계는 한마디로 북한의 공식적·선언적 현상과는 달리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여성들의 여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정도의 봉건적, 가부장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여성계는 정치성과 이념성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본연의 이념무장으로 인해 잘 짜여진 구조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아주 심각한 “2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적인 입장으로 나올 것이므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실사구시적, 실질적 협력분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여성들이 가장 희망하는 가재도구(살림살이) 지원, 산부인과 여성질환 치료 등 생활주변에서 북한에 도움이 되는 협력을 우선하고, 그 다음 종군위안부 문제처럼 우리민족 공동의 이해가 걸린 문제를 상호 협력하고, 그 이후 신뢰가 형성된 후 권리분야를 조심스럽게 거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기혁)

“초기단계에는 여성의 보건, 육아, 문화 등이 부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은 정치적 문제를 들고나올 수 있다.” (김영탁)

“남북 양측이 우선 순위가 틀린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여성분야와 관련하여서는 ①남한 여성기업인들이 북한 진출하는 방안(북한의 우수한 여성인력 활용), ②공동관심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공동 대응, ③남북의 가부장적 문화와 해결책 등에 대한 조사 및 토론, ④한방의료 중 “여성질환” 관련 교류 등 비정치적이고, 남북한 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관심 분야부터 추진해야 한다.” (이미경)

나.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현황 및 문제

(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현황

(가)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영역

<표 IV-6>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영역

구 분	응답자수
중군위안부문제나 ‘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토론회 등 남북한간의 공동관심사	4
대북 지원을 매개로 한 경제적 교류	4
정치, 군사적(전쟁배상금이나 군축 관련), 남성중심적 분야로 실리가 있는 분야	4
계	12

* 복수의견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해 적절한 영역을 보면 “중군위안부문제나 ‘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토론회 등 남북한간의 공동관심사”(33.3%)와 “대북 지원을 매개로 한 경제적 교류의 비중이 높아짐”(33.3%) 그리고 “정치, 군사적(전쟁배상금이나 군축 관련), 남성중심적 분야로 실리가 있는 분야”(33.3%)가 동등한 비율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은 경제적 교류를 중시하고 있으며, 남북한간 공동관심사를 찾는 시도가 필요함으로 알 수 있다.

(나) 접촉목적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이유

<표 IV-7> 제한된 여성교류·협력이 이루어진 이유

구 분	응답자수
북한여성계는 NGO가 아니며 독립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북한은 개방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교류·협력의 실현 및 확대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음	7
최근에 이르러서 경제교류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북 지원을 매개로 한 교류가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4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정치, 군사, 남성 중심적 분야에 쏠려있었고,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	3
남북한 각계가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고, 교류 자체가 지원과 맞물려져 있어 자금을 동원할 수 없는 곳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음	3
북한의 대남 교류 창구에 대한 선택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임. 단순한 만남, 세미나, 북한의 활용의도와 남한의 여성단체의 노력과 합치되는 중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남북여성의 공동현안 중심으로 논의 하다보니 교류·협력의 내용이 협소하게 되었음	3
남북한 당국의 교류나 신뢰의 정도가 여성교류의 내용을 규정함. 즉 '여성교류'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의식과 비중의 취약함	3
과거에는 북한이 당시 재야 그룹들이 주선한 프로그램에만 협력. 지금은 당시의 재야 그룹의 위치가 정부가 되어 좀더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봄	1
북한이 여성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임	1
대북 접촉 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워 여러 시도들이 이 과정에서 좌절된 적도 없지 않았음	1
계	26

* 복수의견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현황 중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영역과 접촉목적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북한여성계는 NGO가 아니며 독립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북한은 개방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교류·협력의 실현 및 확대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음"(26.9%)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다음이 "최근에 이르러서 경제교류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북 지원을 매개로 한 교류가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15.4%)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남북한간 공동현안의 발굴 미흡, 신뢰구축 의지 및 시도 미흡, 의사소통 통로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장애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에는 종군위안부문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북측이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남측 여성단체의 노력이 합치될 수 있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대북 지원을 매개로 교류가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금순)

“남북정부간의 대립적인 제한된 관계와 북측의 부정적인 개방정책에 기인한다. 평화운동은 남북정부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및 한미간의 군사적 관계로 관념적일 수 밖에 없다.” (이효재)

“북한은 교류를 별로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를 할 경우에는 실리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이다. 종군위안부 문제나 ‘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토론회는 전쟁배상금이나 군축과 관련하여 실리가 있는 분야이다.” (정현백)

“북한 내에서의 여성운동의 성과가 적은 결과로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NGO가 없는 관계로 대상 선정의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고동실)

“현재 북한은 NGO 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들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체제개방에 대한 거부감·두려움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북한측의 입장 때문에 아직까지 NGO는 제한된 범위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 하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김경량)

“북한여성계가 독립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우리도 그러한 이념적 외향적 사업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며, 실사구시적 영역을 의면했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이다. 북한은 아직 우리와 대등하

게 협력할 준비가 안되어 있으며, 쉽게 자발적으로 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야에 대해 조심스럽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이며 이념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조금씩의 지속적 협조이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인내와 종합적 계획이 필요한 사항이다.”

(김기혁)

“북측이 우선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 때문이다. 남측의미의 NGO가 없기 때문에 정부허가 받아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남측에서 추진해도 지금까지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해 오기 때문이다.” (손봉숙)

“①남북한간의 공동관심사 이면서 동시에 입장의 차이가 없는 분야의 이슈 부족 ②북한여성계 지도자에 대한 정보 부족” (권수현)

“남북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신뢰관계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북측의 대남 교류 창구에 대한 선택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미경)

(2)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애요인

(가)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장애요인

<표 IV-8>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애요인

구 분	응답자수
여성계 내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식과 노력의 부족과 여성단체간의 의견조정과 단합 필요. 즉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몇몇 사람이나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함	8
경제협력과 재원조달의 강조	5
남북교류에서의 여성의 소외. 특히 북한 권력내부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	3
정치·이념성 배제 문제. 즉 남북간의 대립적 이데올로기와 적화통일 또는 흡수통일에 대한 일방적 주장의 문제	2
북한의 개방이 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다양한 교류 파트너가 없는 것이 문제	1
남북한 당국 모두 여성들을 믿지 못하고, 북한은 더욱 ‘자본주의 바람’, ‘자유로운 사고’의 전염을 두려워함	1
대다수 여성의 낮은 통일인식, 통일 주체세력으로서의 인식 결여	1
분단이 주고 있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인간 삶의 침해에 대한 인식 결여	1
신변보호 문제	1
계	23

* 복수의견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애요인을 보면, “여성계 내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식과 노력의 부족과 여성단체간의 의견조정과 단합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몇몇 사람이나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36.4%)에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과 재원조달의 강조”(22.7%)과 “남북교류에서의 여성의 소

외. 특히 북한 권력내부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13.6%)의 순으로 들고 있다.

이 외에도 정치와 이념성 배제와 북한의 다양한 교류 파트너가 없으며, 특히 북한의 자유로운 사교의 전염 우려가 문제이고, 인간 삶의 침해, 여성들의 낮은 통일 의식과 신변보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측의 민족주체성에 기반한 남측의 자본주의화와 서구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교류를 통한 체제수호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불안과 위기의식, 남측여성들의 불필요한 우월주의나 선심이 북측여성들의 자존심과 민족적 긍지를 손상시킴으로서 분담으로 인한 심리적 장벽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남북간의 대립적 이데올로기와 적화통일 또는 흡수통일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 문제이다.” (이효재)

“북한 권력내부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남측으로부터의 교류요청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정현백)

“남북한 교류 협력을 몇몇 사람 내지는 특정 그룹이 독점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 교류를 개방했으면 한다.” (이은죽)

“북한여성계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여성계 내부의 단합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이다.” (김기혁)

“북한측이 자기체제에 대해 좀더 자신감이 서면 여성교류에도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김영탁)

“남과 북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교류방식이 세미나로 이루어져 다양한 접근방법 필요하다.” (남인순)

“남한 내 단일한 여성계 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과다 경쟁이 우려된다.” (송경민)

“이제 남북정상회담이후 정치적인 조건이 마련되면, 대등한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기본전제와 자세가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는 교류·협력이 아니라 서로 유익한 것이 교환·교류되고 바로 이해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김선옥)

“남측은 주제와 분야별로 여성단체가 매우 다양하지만, 북측은 국가조직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기에는 북측의 개방, 다양한 교류 파트너 형성 등 과제가 많다.” (이미경)

(나) 장애요인의 극복방안

<표 IV-9> 장애요인의 극복방안

구 분	응답자수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전개, 북한 정보공개, 남북언론교류 등을 통한 열린 마음을 갖고 상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여성들의 통일인식 향상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방안 시급	10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꾀하는 남한의 태도가 중요하며, 특히 남한 정부의 여성교류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더욱 필요함	4
북한이 개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통해 장기적·종합적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제3국 특히 중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방안을 연구, 제시해야 하여 북한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수밖에 없음	3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일이 중요	2
‘북한 여성 돕기’운동 전개	2
문화, 학술, 사회 계층간의 ‘다양한’ 교류와 시도가 더욱 풍부해져야 할 것임	1
계	23

* 복수의견

북한 당국의 개방의지의 부족, 남한과 북한간의 이념 및 체제의 차이가 두드러진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면,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전개, 북한 정보공개, 남북언론교류 등을 통한 열린 마음을 갖고 상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여성들의 통일인식 향상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43.5%)가 가장 많은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꾀하는 남한의 태도가 중요하며, 특히 남한 정부의 여성교류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17.4%)고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 개방의 시급성, 북한여성 돕기 운동 전개의 필요성, 있는 대로의 이념과 체제 인정, 각 영역에서의 다양한 교류 시도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측의 민족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공적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입장에서 겸허하게 접근할 것이다. 북측 여성들은 가족과 국가체제 수호를 위한 자존심과 애국애족의 정신이 강하다. 민족경제의 자주성과 독립을 지키려는 주체사상의 한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부장적 국가공동체의 전통을 미화시켜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이에 비추어 우리의 외세 의존적인 정치, 경제, 문화적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화해와 사랑의 성숙한 마음으로 자매애를 발휘함으로써 인간적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통일준비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효재)

“보다 많은 접촉, 교류, 대화, 북한의 자존심 존중, 국내 경제적 여력이 필요하다.” (엄종식)

“무엇보다도 남한측의 태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여러모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위해서는 조바심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 하에 일관되게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경량)

“문화, 학술, 사회 제 계층간의 ‘다양한’ 교류와 시도가 더욱 풍부해

져야 한다. 남한 정부의 여성교류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 (윤정숙)

“실질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조용히, 북한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분야들을 찾아 장기적·종합적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김기혁)

“제3국 특히 중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인다. 북한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이 방안이 좋겠다.” (남인숙)

“분단이 주고 있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인간 삶의 침해에 대하여 인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김선옥)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즉 1) 정부는 북한 정보 공개, 남북언론교류 활성화 등을 지원하여 북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확대 제공해야 한다. 2) NGO들은 북한을 이해하고, 바로 보기 위한 활동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3) 북한이 개방화될 수 있도록 경제교류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이미경)

다.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및 실천방안

(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가)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촉진요인

<표 IV-10>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촉진요인

구 분	응답자수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경우 여성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내 여성 및 어린이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과 협력 필요	6
민족화해와 신뢰를 통한 평화공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여성참여와 NGO의 역할의 중요성을 여성들에게 홍보하여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야 함	6
북한의 협력적 태도,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 교류 지원 강화	4
남북당국의 합의하에 ‘여성간 교류’의 공식적 독자적 창구를 마련하여 많은 수의 여성들이 만나도록 하는 것	4
공동의 관심사(정신대 문제..) 해결 모색	1
여성만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남북관계에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필요	1
계	22

* 복수의견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로서 그 촉진요인을 보면, “민족화해와 신뢰를 통한 평화공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여성참여와 NGO의 역할의 중요성을 여성들에게 홍보하여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27.3%)와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경우 여성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내 여성 및 어린이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27.3%)에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이 “남북당국의 합의하에 ‘여성간 교류’의 공식적 독자적 창구를 마련

하여 많은 수의 여성들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18.2%)와 ”북한의 협력적 태도,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 교류 지원 강화“(18.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교류·협력에의 여성의 적극적 참여방안 모색, 공동관심사 찾아내기 등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만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남북관계에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하다.”(이금순)

“민족화해와 신뢰를 통한 평화공존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민족국가통일의 과업을 너무 앞세워 서두르는데서 이념과 체제의 차이나 정치조사적 대립을 첨예화시킬 수 있음. 정부간의 정치·군사적 대립을 극복하며 평화를 정착시킴에 따라 통일국가를 위한 실천적 과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이효재)

“서로간의 ‘신뢰가’ 첫째 요건임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무엇보다도 먼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이은죽)

“정치적 화해와 평화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평화협정의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동실)

“전반적 남북관계의 개선, 적극적인 대북 접촉 활동, 파트너 확보, 추진력, 기존 대북 사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엄종식)

“북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굴하여 그 문제를 놓고 북측과 협의하면 그 과정에서 여성교류가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김영탁)

“동질성 회복과 모성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남인숙)

“여성이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임을 강조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 위

한 노력이 여성계가 더 적합하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경우 여성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 인식해야 한다.” (손봉숙)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된 이후 남북(특히 북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교류 촉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권수현)

“민간교류가 확대되면 여성내부에서도 교류 욕구가 증대할 것이다. 여성교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인순)

“우선 많은 수의 남북 여성들이 만나는 것이 첫째이다. 다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여성들의 생활난 해결에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북한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여성교류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송경민)

“남북한 여성의 공동의 이해와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문제영역이 형성될 때이다. 예를 들면, 통일준비를 위한 문제에서, 이미 여성들의 역할이 많은 영역에서(예 : 문화,사회분야), 여성들의 역할이 기대되는 영역(예 : 인권, 이산가족문제 등)에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김선옥)

“정부의 여성교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미경)

(나)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실천방향과 과제

<표 IV-11> 여성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실천방향과 과제

구 분	응답자수
문화, 종교, 예술,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북한 내의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함	4
여성들의 참여촉진방안 필요. 즉 남북여성들간의 지속적인 만남, 냉전 분위기 해소, 북한 경제난 해결, 남북간 동질성 회복 등의 활동에 여성 참여방안 모색	4
북한의 식량원조 및 의료품 등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부터 시작해야 함	3
남북한 공동의 관심사안의 개발과 공동의 이익을 확인하는 분야에서 추진, 민족적 유대감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추진(전통문화), 인사교류 및 여성지위 향상 방향 설정	3
북한여성 및 어린이를 위한 개발구호사업과 함께 여성교류를 결합하는 과제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2
여성교류와 협력이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서 주변화되지 않고 주류화 되도록 해야 함	1
토속음식 나누기, 장기자랑(북이 이길 테니까), 모성교육, 평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1
계	18

* 복수의견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실천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보면, “문화, 종교, 예술,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북한 내의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22.2%)와 “여성들의 참여촉진방안 필요. 즉 남북여성들간의 지속적인 만남, 냉전 분위기 해소, 북한 경제난 해결, 남북간 동질성 회복 등의 활동에 여성 참여방안을 모색한다”(22.2%)에 대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이 “북한의 식량원조 및 의료품 등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부터 시작해야 한다”(16.7%)와 “남북한 공동의 관심사안의 개발과 공동의 이익을 확인하는 분야에서 추진, 민족적 유대감을 고유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추진(전통문화), 인사교류 및 여성지위 향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16.7%)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류·협력에서의 여성주류화, 여성과 어린이 지원, 모성강조 등의 사업을 펼쳐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측의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생활물자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 의료분야 및 여성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여성기업가 및 여성전문인 조직과 창업자금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효재)

“공동의 관심사와 공동의 이익을 확인하는 분야에서 추진, 민족적 유대감을 고유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추진(전통문화), 남북한 여성 모두의 각 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윤덕희)

“여성(북한)의 생활고를 일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성계의 자매결연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문화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손봉숙)

“보다 다양한 남북여성들간의 만남, 지속적인 만남 및 교류, 냉전분위기 해소에 여성들이 선구적 역할, 북한 경제난 해결에 도움, 통일의 밑바탕이 될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사회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남북여성들이 생활 속으로 참여한다.” (송경민)

(다)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식

<표 IV-12>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식

구 분	응답자수
국제기구나, 제3국을 활용. 국제구호단체를 통한 지원활동, 남북여성학자들의 학술교류 등 북한여성에 대한 교육 실시	4
공동적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예 위안부 문제)하고, 각 NGO들의 설립목적과 사업방향에 적합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2
여성들이 모금운동과 정부지원을 통해 북한 여성 돕기 시도, 일련의 노력 후 교류 제안	2
북한 관련 전문인 구성으로 북한대표들과 열린 마음으로 판문점 등에서 “남북여성교류” 관련 사항 논의해야 함	2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여성계가 더 적합하다 는 인식 공유하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임을 강조	2
문화적 방식, 세미나, 관심분야별 교류	1
일회성 만남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원칙 하에 단계적인 교류와 협력 추진	1
유엔기구나 국제단체를 통해 북측의 정보 수집,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에 관한 실정 파악, 수용가능 과제 제안	1
범여성 NGO 통일연대 등의 조직으로 여성단체들을 묶어 그 안에서 분야별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함이 교류활성화에 도움될 것임(남북교류 노하우의 공유)	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위원회에서 제안한바 있듯이(가칭) 남북여성교류한마당 형식으로 각계의 남북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1
계	17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식을 보면, “국제기구나, 제3국을 활용. 국제구호단체를 통한 지원활동, 남북여성학자들의 학술교류, 등 북한여성에 대한 교육”(23.5%)이 중요하다

는 의견이 가장 비율이 높다. 다음이 “여성들이 모금운동과 정부지원을 통해 북한 여성 돕기 시도, 일련의 노력 후 교류 제안” “북한 관련 전문인 구성으로 북한대표들과 열린 마음으로 관문점 등에서 “남북여성교류” 관련 사항 논의해야 한다“ ”공통적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예 위안부 문제)하고, 각 NGO들의 설립목적과 사업방향에 적합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여성계가 더 적합하다는 인식 공유하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임을 강조“의 항목이 각각 11.8%를 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기적인 목표와 원칙하에, 국제기구나 단체를 통해, 문화 교류 형식으로, 범 여성조직으로, 일반여성들의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들이 적극적인 모금운동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북한여성 돕기를 시도한다. 이런 일련의 노력을 보인 후에 교류를 제안해 본다.” (정현백)

“남북한을 교대로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진행과 길게는 상주하는 사무소나 전화설치도 가능하다.” (고동실)

“제3국 접촉 통한 정보교환과 개인적 신뢰구축-다국간 여성행사, 3국 개최 행사 참여한다. 문화교류에 적극 참여한다. 즉 한복, 전통놀이 등이다.” (엄종식)

“남북한에서 또한 제3국에서의 토론, 친목, 문화적 교류가 필요하다. 공동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 계획과 지속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정숙)

“생필품을 들고 방문하되 주제가 있어야 한다. 세미나나 교류는 형식이고 속내용은 물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남인숙)

“범여성 NGO 통일연대 등의 조직으로 여성단체들을 묶어 그 안에서 분야별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함이 교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남북교류 노하우의 공유).” (권수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위원회에서 제안한바 있듯이(가칭) 남북여성교류한마당형식으로 각계의 남북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송경민)

라.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

<표 IV-1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

(단위: 순위)

	1	2	3	4	5	6	가중치 점수
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에 맞추어 여성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5						30
여성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법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1					23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7	5	1				68
지원액 등에서 일정비율을 여성비정부기구 등 여성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3	6	3	1			63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6	6	3	1		65
여성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7	5	4	1	52
기존의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협력 기능과 상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1	4	2	1	2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로서 정부의 역할을 가중치를 두어 살펴보면,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68점)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이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65점)이고, “지원액 등에서 일정비율을 여성비정부기구 등 여성들에게 배분해야 한다”(63점)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원부서 및 담당자 배당, 활동 합법화를 위한 법제화 노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기존 기구와의 상호 연계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 전문가 “정부의 역할은 적을수록 좋다”(김선욱)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기타 의견

<표 IV-14>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 의견

구 분	응답자수
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모든 관련 분야의 고위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30%이상 참여 보장	3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우선하여 정부에서 전문성을 띤 계획이 세워지고, 다음에 민간인들의 도움이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함	3
여성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부서와 담당자를 둘 것이 아니라, 통일과 관련된 여성사안을 담당할 독자적인 여성부서(통일부내) 설치 필요	2
일반여성 참여기회의 확대	1
남북여성협력문제는 여권신장문제가 아니라, 남북문제와 인권신장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임	1
계	10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시된 문항 이외의 의견을 살펴보면, “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모든 관련 분야의 고위사결정과정에서 여성 30%이상 참여 보장”(30.0%)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우선하여 정부에서 전문성을 띤 계획이 세워지고, 다음에 민간인들의 도움이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30.0%)이 많은 의견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여성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부서와 담당자를 둘 것이 아니라, 통일과 관련된 여성사안을 담당할 독자적인 여성부서(통일부내) 설치 필요”(20.0%)를 들고 있다.

이 외에도 일반여성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인권신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 정책, 기구를 여성화함으로 전체적 차원에서 여성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 이것을 감안한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효재)

“여성기구의 대북 사회문화 협력 사업 시 남북 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엄종식)

“남북여성교류라는 것은 독립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 남북문제와 궤를 같이 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추진조직, 자원, 공식화 등에 있어서 역차별적 발상은 위험하며, 객관적이고 실천 가능한 영역에서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대두되는 지원은 공론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원주체는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민간 협력 시스템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남북여성협력문제는 여권신장문제가 아니라, 남북문제와 인권신장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기혁)

“남북 모두 여성을 통일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남북여성회담 대표로 여성은 고려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대표성(남북회담 포함한 통일관련 노력이나 과정에서)을 인정

하고 할당제 채택해야 한다.” (손봉숙)

“모든 정부의 교류·협력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가 중요하다. 모든 교류·협력과정에서의 여성참여(예 : 경제인 교류에서는 여성경제인 참여), 여성NGO의 교류·협력 지원(이미 준비된 단체부터 지원)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선옥)

(2)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

(가)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에 대한 의견

<표 IV-15>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에 대한 의견

(단위: 순위)

	1	2	3	4	가중치 점수
여성비정부기구는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프로그램 마련하여 교육 등을 자체운동 내용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13				52
여성비정부기구는 여성의 수요를 파악하고, 여성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의미를 인식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10			38
여성비정부기구는 여성의 통일의식화에 대한 노력, 새로운 체험을 가능케 하는 실험적 프로그램 실시, 남북한간 지자체 자매결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방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해야 한다.	1	5	10		39
여성비정부기구의 연합조직을 마련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2	2	7	17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가중치를 설정하여 응답한 결과표를 보면, "여성비정부기구는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교육 등을 자체운동 내용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52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이 “실험프로그램 실시, 남북한간 지자체 자매결연 등을 통해 개방의 물꼬를 트는 노력”(39점)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의미를 여성들이 인식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38점)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비정부기구의 연합조직을 마련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17점)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기타 의견

<표 IV-16> 여성비정부기구의 제 기능

구 분	응답자수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다양화, 다 채널화, 다원화로 NGO간의 상호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필요함	2
여성 NGO는 정부산하 통일정책(교류협력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실무팀 등에서 여성이 충분한 대표성을 갖도록 요구해야 함	2
한반도 통일과 평화는 정부와의 협조체제 강화가 필수적임 또한 여성들은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 강화	2
남북간에 벌어지는 경제적 차이와 빈부의 격차를 감안하여 통일 후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의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적 모델을 실현해 나갈 것	1
남북의 여성이 대단한 프로그램 없이도 자주 만날 수 있는 방안 모색	1
남북교류에 있어 여성주의적 시각의 반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와 여론형성에 주력	1
계	9

여성비정부기구의 역할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한 문항 이 외의 의견을 살펴보면, “여성 NGO는 정부산하 통일정책(교류협력정책)과 관련

된 위원회, 실무팀 등에서 여성이 충분한 대표성을 갖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 평화는 정부와의 협조체제 강화가 필수적이고, 또한 여성들은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 강화”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다양화, 다 채널화, 다원화로 NGO간의 상호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가 각각 22.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상적인 여성교류·협력 실천모형 개발, 자주 만날 수 있는 채널, 남북교류·협력에의 여성주의적 시각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간에 벌어지는 경제적 차이와 빈부의 격차를 감안하여 통일 후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의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적 모델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증가하는 탈북자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평등하고 열린 공동체를 생산 및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모색하고 형태를 창조하는 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①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간의 만남은 남북여성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은 먼저 민족역사와 사회변혁이 주인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사회를 지향하는 새 사회에 대한 비전과 변화방향을 제기하기 위한 담론이 요구된다. ②“여성은 왜 통일을 원하며, 어떠한 통일사회를 갈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이념적인 담론을 여성들은 지혜와 소망을 모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이에 대한 분명한 방향의 합의를 쉽게 모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일단 고뇌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③같은 언어와 민족문화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에는 심각한 장벽과 어려움이 가로 놓여 있다. 분단으로 인해 내면화된 상호불신과 적대관계, 그리고 자본주의에 기반한 남측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측의 사회주의적인 가부장적 국가체제가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어느 한 체제로의 흡수나 종속이 아닌 통일을 목표로 한다면, 남북여성이 함께 바라며 일구어 나갈 새 사회가 어떤 것인지? 이를 위한 공감대를 어떻게 창조해 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상적 방향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만이 남북간의 여성교류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효재)

“남북문제는 모든 부문에서 통일과 한반도 평화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과 보조를 맞춰야 안전할 것입니다.” (이은죽)

“정부와의 협조체제 강화,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 강화, 북한과의 접촉선 확보 및 신뢰구축, 인력, 조직, 재정력 보완해야 한다.” (엄종식)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다양화, 다 채널화, 다원화. 금전보상 안하기 (남측단체간) 합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남북의 여성이 대담한 프로그램 없이도 자주 만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손봉숙)

“남북교류에 있어 여성주의적 시각의 반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와 여론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권수현)

마.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담론

(1) 남·북한의 여성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표 IV-17> 남북한의 여성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구 분	응답자수
여성대표성 인정이 중요함. 각 분야의 교류에 여성이 반드시 참여토록 해야 효과적일 것임	3
향후 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여성교류협력도 활성화되고, 교류의 내용과 종류가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2
통일운동은 국민적 동의 내지는 합의가 가장 중요	2
초당적인, 탈 정치적인 자세로 범여성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와 평화군축 문제 등에 있어서도 여성계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어야 함	2
최근 북측이 대 서방 외교에 적극적이므로, 제3국(독일 등) 에서 남북여성이 함께 만나는 방법 가능	1
문화교류 필요	1
인적, 물적 교류 필요	1
계	12

남북한의 여성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보면, "여성대표성 인정이 중요하다. 각 분야의 교류에 여성이 반드시 참여토록 해야 효과적일 것이다"(25.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향후 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여성교류협력도 활성화되고, 교류의 내용과 종류가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16.7%)와 "초당적인, 탈 정치적인 자세로 범여성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와 평화군축 문제 등에 있어서도 여성계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16.7%)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통일운동은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문화교류, 인적이고 물적인 교류, 제3국을 통한 교류방법 등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북측이 대 서방 외교에 적극적이므로, 제3국(독일 등)에서 남북여성이 함께 만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제3국이 재정지원 프로그램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는 우리의 다자간 외교를 증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현백)

"겸허한 자세로 "우리(We-group)" 위주의 활동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속 없이 걸돌기만 할 수 있다." (이은죽)

"몇몇 소수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전면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의 내용과 종류를 현장중심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 교류, 종교여성들의 연합예배, 여성학 학술세미나 등 경제협력 외의 다양한 기반에서의 교류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법률과 물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동실)

"향후 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여성교류협력도 활성화 될 것이다. 대북 접촉선 확보 및 신뢰형성 등 준비노력 필요하다 (대북 관계에서의 성과는 인내와 오랜 노력의 산물)." (엄종식)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교류와 남북관계진전에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윤덕희)

“남북한 여성을 위한 교류·협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 문화 : 여성음악회, 전시회(미술, 음식, 옷 등)
- (2) 학술토론 : 평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의 역할, 여성운동 등의 주제
- (3) 전문가과견 : 여의사, 약사, 교사 등 전문가의 봉사와 상호교류 필요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자존과 자주성을 상호 인정하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정숙)

“여성교류를 여성 그 자체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각 분야의 교류에 있어서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경제, 학술, 체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NGO가 적극 추천하는 등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김영탁)

“영화감상 함께 하기, 토속음식 만들기, 민족의 동질성과 장점 찾기 등이다.” (남인숙)

“통일운동은 국민적 동의 내지는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인구 절반인)을 배제한 통일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표성 인정이 중요하다. 여성계의 단체간, 인사간의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뉴스보도 중심의 교류·협력이 아니라 장기적·지속적인 교류·협력 필요하다. 벽돌 한 장씩 놓아 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손봉숙)

“주로 위에서는 범여성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제로 비정치적이고 무난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다면 평화군축 문제 등에 있어서도 여성계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남북이 군축을 해서 그 돈으로 교육비나 사회복지 등에 투자한다면 이는 남북한 국민 모두에 엄청난

난 이득이 될 것이며, 또한 자식과 애인의 청춘을 군대에 뺏겨야만 하는 남북한에 살고 있는 개별 여성들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송경민)

“이제 남북정상회담이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전제하에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접근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전에는 남북의 교류·협력이 막혀 있으므로 비정치적인 여성의 교류·협력에 역할과 가능성을 기대했던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교류·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하고 생각된다. 우선 북한의 일반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있게 분석하여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내지 의료인 교류·협력(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남한 NGO와 성격상 비슷한 북한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전문영역별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인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선욱)

10. 전문가 설문지: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협동연구과제인 「남북한 화해·협력 추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성인지적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협력방안의 마련, 그리고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교류·협력 현황과 독일의 경험, 그리고 연변을 통한 북한 당국의 의중과 주민들의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에 우선적인 작업으로 우리 나라의 남북한 교류·협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문제와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신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지의 각 문항별로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5월

연구진 : 김재인·장혜경

전 화 : 356-0332/ 356-0070(303/306)

팩 스 : 384-7164

e-mail : Janekim@kwdi.re.kr(김재인)

hkchang@kwdi.re.kr(장혜경)

한 국 여 성 개 발 원

I. 여성비정부기구의 개념정의와 정부와의 연계성

50여년이라는 남북의 분단상황은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정서, 감정 등을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식과 자세를 취해야 하며,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여성비정부기구(NGO)의 개념 정의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에서는 여성비정부기구의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정부기구의 여성대표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에서의 여성비정부기구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여성비정부기구를 여성단체로 한정시켜 보는 견해들도 있고, 여성비정부기구는 정부기구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2.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여성비정부기구(NGO)와 정부의 관계정립

여성비정부기구가 남북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정부의 주도뿐만 이루어질 경우 자발적인 민간의 교류·협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부문에서 무분별하게 북한당국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탈법적인 방법으로 통일운동이 전

개될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의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자율성 확보”문제와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의 수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의 조화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효율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해 여성비정부기구와 정부가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남북한 교류·협력시의 창구 일원화

여성비정부기구(NGO)가 남북한 교류·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북한측에 공동으로 상대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여성비정부기구의 창구 일원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중요시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3-1. 정부의 기능

3-2. 여성비정부기구의 기능

4.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우선 영역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남북여성의 교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영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교류 협력은 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교류·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때 남한과 북한의 여건상, 남북협력의 우선순위에 대해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북한이 우선적으로 교류·협력을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II.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현황 및 문제

5.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현황

1991년 5월 일본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일본에서 개최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를 통해 분단 40여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의 여성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 여성교류가 성사된 경우는 교류 협력을 시도한 총31건 중 9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이후 4차례의 세미나가 서울과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1993년 10월에는 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었고, 1998년 10월에는 이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99년 9월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여성계 4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 여성계 3인을 면담하였습니다.

남북한 여성교류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문	접촉목적	비고
평화, 전쟁, 종군위안부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4회	
	일본의 전후처리 토론회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3회	
우리민족 서로돕기	여성계 교류협의	

5-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영역과 접촉목적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2. 현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장애요인

기존 연구(여성특별위원회, 1999)에 의하면,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여성교류의 한계는 1) 남북한 양 정부의 대결구

도에 따른 제한된 교류가 창구를 다원화시키지 못했고, 양 정부의 제재와 간섭으로 순수 여성들만의 토론회를 성사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2) 기존 남북여성교류는 특정 소수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남북한 이외에 일본 등이 참여한 국제행사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침체화될 위험성이 적었으며 상호 자제가 가능하였으나, 토론회 시 논의의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4) 북한은 남한대표의 북측 초청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남측의 북한대표 초청 수용은 매우 꺼려하여 왔습니다.

- 6-1. 위에서 제시된 이외에 앞으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6-2. 북한 당국의 개방의지의 부족과 함께 남한과 북한간에는 이념 및 체제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서든 마음을 열고 한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Ⅲ.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및 실천방안

7.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7-1.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2.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실천방향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3.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IV.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8. 정부의 역할

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에 맞추어

- 1) 여성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2) 여성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법제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 3)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지원액 등에서 일정비율을 여성비정부기구 등 여성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 5)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6) 여성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7) 기존의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협력 기능과 상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8-1. 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에 대해 번호로 답해주십시오.

8-2. 위에서 답해주신 것 이외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9. 민간기구의 역할

- 1) 여성비정부기구는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등을 자체운동 내용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 2) 여성비정부기구는 여성의 수요를 파악하고, 여성의 남북한 북한 교류협력의 의미를 인식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여성비정부기구는 여성의 통일의식화에 대한 노력, 새로운 체험을 가능케 하는 실험적 프로그램 실시, 남북한간 지자체 자매결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방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해야 한다.
- 4) 여성비정부기구의 연합조직을 마련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9-1. 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성비정부기구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항목 중에서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에 대해 번호로 답해주십시오.

9-2. 위에서 답해주신 것 이외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IV.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담론

10. 남·북한의 여성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10-1. 지금까지 논의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대한 각종 주제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 남북교류협력 제 양식

<자료 1>

제 목 : 남북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추진절차

작성일 : 1999. 1

작 성 :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추진절차

* 본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통일부 교류협력국 담당
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류1과: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관광 ☎ 02-720-2146)

- 교류2과: 종교, 언론·출판, 과학·환경 ☎ 02-725-3588)

1. 개 념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관광, 종교, 언론·출판, 과학·환경 등 비경제분야에 관한 제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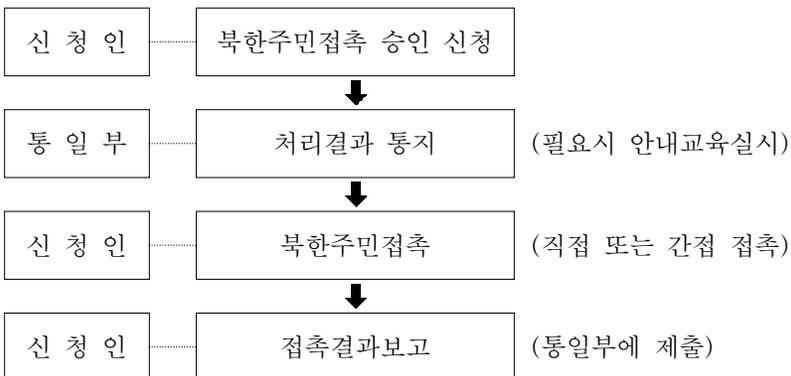
2. 추진절차

가. 북한주민접촉 승인

○ **접촉**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
 -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는 것을 물론, 중개인을 통하거나 전화·우편·FAX·TELEX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

* 북한국적 미소유자라도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조종단계 인사 등은 북한주민으로 간주

○ 처리절차 흐름도



○처리기간 :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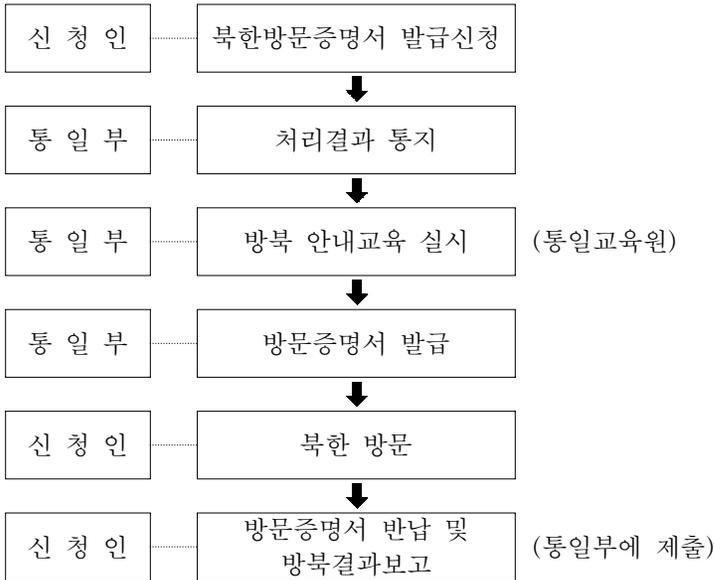
○신청서류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 신원진술서(여권사진 2매)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승인 유효기간 : 3년이내

나. 북한방문 승인

○처리절차 흐름도



○처리기간 : 20일

○신청서류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여권사진 4매)
- 북한측의 초청장 등 신변안전보장 관련 서류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단,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함)
- 방북시 활동계획 등 참고자료

○승인유효기간 : 최장 1년 6개월(수시방북 승인의 경우 최장 3년)

※ 재외국민(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획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하여 외국에서 업무수행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출발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 재외공관의 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 제출(북한방문결과보고서 폐지)

다. 협력사업자 승인

○승인요건 : 남북교류·협력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국내 또는 국외)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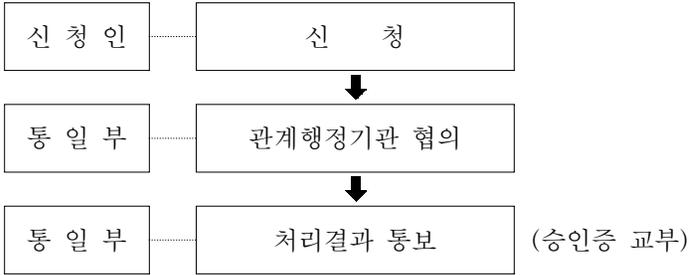
○유 형

- 공동 조사·연구·저작·편찬과 그 보급
- 영화·연극·음악·무용·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 제작·상영 및 공연
- 음반 및 영상물·방송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 개최
- 학술·문화 연구단체,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

업의 공동추진

- 기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처리절차 흐름도



○처리기간 : 30일

○신청서류

-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1부
- 협력사업 개요 설명서 1부
- 북한측 당사자 의향서 사본 1부
- 최근 3년이내의 해당분야 사업실적 증명서류 1부
-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1부

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자격 :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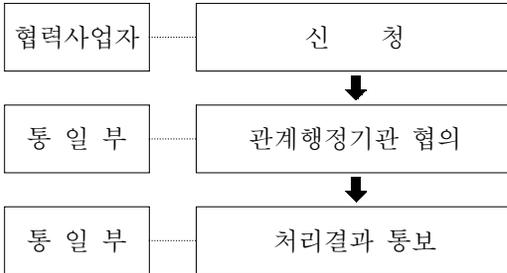
○승인요건

-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할 것
-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남북한간에 분쟁야기할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 침해우려가 없을 것

○처리절차 흐름도



○처리기간 : 30일

○신청서류

- 협력사업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1부
-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 영화·공연물·출판물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제작승낙서 1부

【'98.4.30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시행으로 사업분야·투자액·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 시행중임】

<자료 2>

제 목 : 북한방문 절차

작성일 : 199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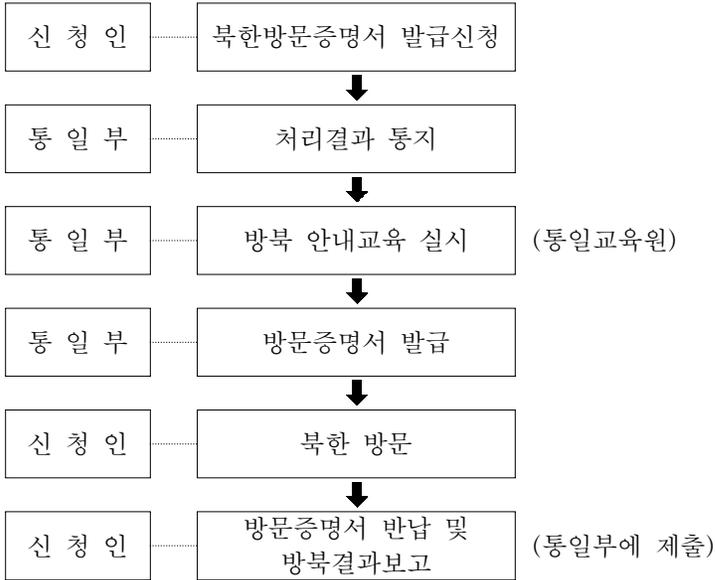
작 성 : 통일부 교류협력국

북한방문 절차

* 본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통일부 교류협력국담당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관광 : 교류1과(☎720-2146)
- 종교, 언론·출판, 과학·환경 : 교류2과(☎725-3588)
- 교역, 수송, 통신 : 교류3과(☎736-7205)
- 경제협력사업 : 협력과(☎738-7776)
- 사회문화협력사업 : 교류1과, 교류2과

○처리절차 흐름도



○처리기간 : 20일

○신청서류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여권사진 4매)
- 북한측의 초청장 등 신변안전보장 관련 서류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단,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함)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방북시 활동계획서, 회 사소개서 등)
- * 대리신청, 우편접수도 가능

○승인유효기간 : 최장 1년 6개월(수시방북 승인의 경우 최장 3년)

※ 재외국민(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획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하여 외국에서 업무수행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출발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 재외공관의 장에게 북한 방문신고서 제출(북한방문결과보고서 폐지)

<자료 3>

제 목 : 북한주민접촉 절차

작성일 : 1999. 1

작 성 : 통일부 교류협력국

북한주민접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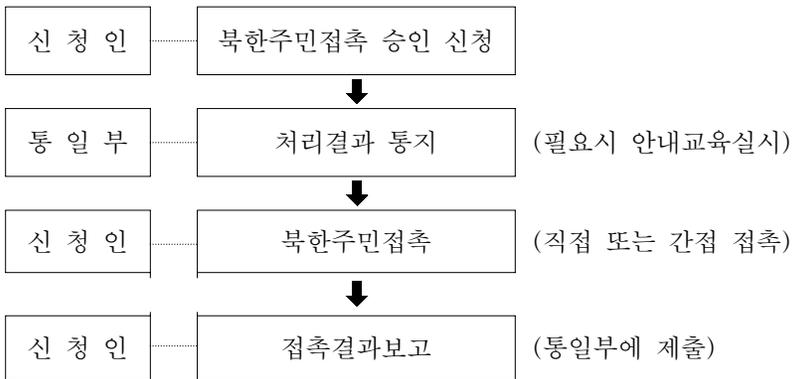
* 본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통일부 교류협력국담당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관광 : 교류1과(☎720-2146)
- 종교, 언론·출판, 과학·환경 : 교류2과(☎725-3588)
- 교역, 수송, 통신 : 교류3과(☎736-7205)
- 경제협력사업 : 협력과(☎738-7776)
- 사회문화협력사업 : 교류1과, 교류2과

○「접촉」의 개념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
 -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 중개인을 통하거나 전화·우편·FAX·TELEX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
 - * 북한국적 미소유자라도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조총련계 인사 등은 북한주민으로 간주

○처리절차 흐름도



○처리기간 : 15일

○신청서류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 신원진술서(여권사진 2매)
- 접촉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대리신청, 우편접수도 가능

○승인 유효기간 : 3년이내

<자료 4>

■ 교류1·2과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관광, 종교, 언론·출판,
과학·환경분야)

- 사회문화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 사회문화협력사업자변경승인신청서
- 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신청서
- 사회문화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 사회문화협력사업보고서
- 북한방문신고서(수시방북자 신고수리용)

사회문화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단 체 명 (상 호)		② 변 경 전 승 인 번 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사업	⑦ 사 업 명			
	⑧ 승 인 일 자			
⑨ 변 경 내 용 개 요				
변 경 전		변 경 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문화협력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신 청 인 :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구비서류: 1. 협력사업자승인증 2. 당초시행중인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된 사업의 추진계획서 1부 4. 변경사유서 1부 5. 협력사업상대자 변경시에는 영 제34조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자료 5>

▣ 교류협력관련 신청서식(27종)

<각과 공통>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 방문기간연장신청서
- 북한방문결과보고서(공통양식 없음)
- 북한방문신고서(재외국민의 경우에 해당)

- ※ 재외국민의 북한방문결과보고서 : 폐지

신 원 진 술 서

(1) 성명	한글		(2) 주민 등록번호		(3) 호주 및 관계		사 진
	한자						
(4) 원 적					(5) 본 적		
(6) 주 소		(통 반)					
(7) 직장명 및 소재지		직장명: 소재지:			(8) 전 화 번 호	직장 : 가정 :	
(9) 본 관		(10) 종 교		(11) 혈액형		(12) 신 장	cm
(13) 체 중	kg	(14)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동산 :		부동산 :	
(15) 친권자 재산		동산 :		부동산 :		(16) 특 기	(17) 취 미
정 당 및 사 회 단 체 활 동 관 계	(18) 단 체 명				(19) 직 책		
	(20) 가입일자				(21) 가입동기		
	(22) 탈퇴일자				(23) 탈퇴이유		
병 역	(24) 군 별	(25) 병 과	(26) 최종계급	(27) 군 번	(28) 기간(부터~까지)	(29) 미필사유	
					. . . ~ . . .		
학 력	(30) 학 교 명	(31) 기간(부터~까지)	(32) 전공학과	(33) 졸업 학위	(34)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35) 기관 또는 업 체 명	(36) 기간 (부터~까지)	(37) 직 책 (직 급)		(38) 상훈관계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면>

-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3.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단,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함)
 4.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				
	방문지					
② 재발급 사유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에 서약한 사실을 준수할 것입니다.</p> <p>첨부서류 : 1. 증명서 재발급용 사진 2매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통 일 부 장 관 귀하					수수료	
					없 음	

11022-00911민
90.10.12승인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 보고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여권번호 :)			
	주 소 · 연 락 처	(전화 :)			
	직 업	(전화 :)			
② 피접촉인 인적사항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및지위	신청인과의 관 계
③ 방북목적					
④ 방북일시 및 장소					
⑤ 방북경위					
⑥ 방북방법					
⑦ 방 북 결 과 개 요					
※ 세부내용 별지작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제출자 :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 * 신고번호는 공관별 전문 전치부호 - 신고년도(마지막두자리)
- 공관별 신고접수·순위로 공관에서 기재(예 : 주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JA-88-125)

